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2012. 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발 간 사

1998년 2월 6일,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구조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과거 15여 년 동안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와 함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시장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부문 등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평가는 그리 우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의 도입 및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을 통해 올바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개선과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의 발간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본 백서에서는 과거 6년간 우리 원에서 매년 실시한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기초한 다양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의 발간이 정부, 학계,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기업의 발전과 시장의 건전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 장 강 병 호

〈목 차〉

I. 기업지배구조 제도	3
1. 사외이사	3
2. 감사	8
3. 이사회 내 위원회	12
4. 감사위원회	14
5. 소수주주권	17
1) 소수주주권	17
2) 주주제안권	19
3) 대표소송	21
4) 집중투표제	23
5) 위법행위유지청구	25
6. 주식매수선택권	27
7. 정관의 변경	30

8. 배당	32
1) 이익배당	32
2) 중간배당	33
3) 현물배당	33
4) 주식배당	34
5) 위법배당	35
9. 기업의 IT화	37
1) 기업의 IT화	37
2) 전자주주명부	37
3)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	37
4)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38
5) 전자투표제	38
10. 경제력집중의 억제	40
1) 의의	40
2) 지주회사 규제	42
3)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49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49
(2) 상호출자의 금지	49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51
(4)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1
(5)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52
(6) 탈법행위의 금지	53

4) 부당내부거래 규제	54
(1) 의의	54
(2) 유형	54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55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6
 11. 기회유용, 자기거래 및 집행임원	57
 II. ESG 동향	63
 1. 기업지배구조 현황	65
1) 주주권리보호 및 행사편의성	65
(1) 기업지배구조현장	65
(2)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69
(3) 집중투표제	72
(4) 서면·전자투표제	76
(5)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79
(6)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83
(7)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86
(8) 황금낙하산 규정	90
(9) 소수주주권 행사	93
2) 소유구조	97
(1)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계	97
(2) 계열회사 지분을 합계	101
(3) 5% 이상 주주 지분을 합계	104
(4) 등기임원 지분을 합계	107
(5) 사외이사 지분을 합계	110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13
(1)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비율 ..	113
(2)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지주회사 제외)	117
(3)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	120
(4)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123
(5)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126
4) 이사회	130
(1) 이사회 규모	130
(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134
(3) 이사회 개최 횟수	138
(4)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141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44
(6) 보상위원회	148
5) 사외이사	152
(1) 사외이사 선임비율	152
(2)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156
(3)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159
6) 경영투명성	163
(1)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163
(2) 자율(자진)공시 횟수	166
(3) 조회공시 횟수	170
(4) 정정공시	173
(5)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177
(6)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181
(7) 지배구조 모범기준과의 차이 공시	185
(8) 지배구조 등급 공시	189
(9)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193
7) 감사기구	197
(1) 상근감사 설치	197
(2) 감사위원회 설치	200
(3)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204
(4)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207

2. 사회책임경영 현황210

1)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210
(1) 근로자 고용안정 정책 수립 여부	210
(2) 근로자들의 적정 근무시간 유지 방안 마련 여부	210
(3) 근로자 복지혜택 수준	211
2) 노사관계	212
(1)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	212
(2) 파업, 태업, 직장폐쇄와 같은 노사분규 발생여부	212
3) 직장내 보건 및 안전	213
(1)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213
(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설치	213
(3) 산업재해 관련 전담조직 마련 여부	214
(4)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215
4) 인력개발 및 지원	216
(1) 임직원 교육훈련 방침 수립 및 퇴직자 지원제도 운영 여부	216
(2) 공정한 기준의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여부	216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 여부	217
5) 직장내 기본권	218
(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외 천명	218
(2) 장애인 고용비율 공시	219
(3)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행 여부	219
6) 공정거래	220
(1)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및 실천 프로그램 운영 여부	220
(2) 협력사에 대한 물적, 지적 재산권 존중 원칙 수립	220
7) 부패방지	221
(1)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방지 원칙 수립 및 부패방지 전담 조직 유무	221
(2) 부패방지 윤리교육 실시 여부	222
(3)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성과 관리	222

8)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촉진	223
(1) 협력사 선정시 협력사의 윤리경영 수준 고려 여부	223
(2) 협력사 윤리경영 수준 정기 관리	223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침에 대한 협력사 교육 및 안내 여부	224
(4)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불만처리 프로세스 운영 여부	224
9) 소비자에 대한 사회책임활동	226
(1)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여부	226
(2)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서비스 원칙 수립 및 인증 취득	226
(3) 임직원 대상 소비자 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227
(4)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만족도 증가 여부	227
(5) 소비자 피해 보상절차 및 보상기구 마련 여부	228
10)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229
(1) 지역사회 공헌활동 정책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여부	229
(2) 사회공헌기금 현황	230
(3)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여부	230
11)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231
(1) 지역공급자 우선 배려 및 현지인 우선 채용 정책 도입	231
(2) 지역사회 주민과의 대화채널 운영 여부	232
3. 환경경영 현황	233
1) 환경전략	233
(1)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표명	233
(2) 환경경영 실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부여	233
(3) 최고경영자에게 환경성과 및 개선결과 보고	234
(4) 환경경영 투자계획 수립여부	234
(5) 환경전략 및 방침 수립현황	234
2) 환경조직	235
(1) 환경경영 조직체계의 적정성	235

3) 환경경영	237
(1) 환경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여부	237
(2) 녹색구매 방침 및 시스템 구축 현황	238
(3) 공급업체 지원체계	239
(4) 용수	240
(5) 에너지	242
(6) 원 · 부자재	243
(7) 폐기물	245
(8)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설계활동	246
(9) 대기 · 수질 오염물질	247
(10) 유해화학물질	250
(11) 온실가스	252
(12) 환경회계 시스템 구축 및 내부경영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254
(13) 환경성과 평가체계 구축여부 및 이행의 충실성	255
(14) 환경감사 수행	255
4) 환경성과	257
(1) 용수 절감성과	258
(2) 폐기물 감량 성과	259
(3) 에너지 절감 성과	261
(4) 온실가스 감축 성과	262
(5) 주요 환경오염물질 관리실적	263
(6)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성과	264
(7)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증가율	265
(8)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증가율	266
(9) 녹색인증	268
5) 이해관계자 대응활동	269
(1) 환경정보 공개여부	269
(2) 이해관계자 연대 및 자발적 참여활동	269

III. 주주총회 의안분석	273
1.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자문기관 필요성	273
2. KOSPI200사 의안분석 결과	277
1) 개요	277
(1) 의안분석 대상	277
(2) 주주총회 일정 분포	277
2) 세부 내용	279
(1) 안건 상정 방법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279
(2) 안건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280
(3)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권고 현황	281
(4) 임원 선임 안건별 반대 권고 사유	282
(5) 회사 유형별 임원 선임 안건 찬성·반대 현황 비교	284
3. 금융회사 의안분석 결과	285
1) 개요	285
(1) 의안분석 대상	285
(2) 주주총회 일정 분포	285
2) 세부 내용	286
(1) 안건 상정 방법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286
(2) 안건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287
(3)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권고 현황	289
(4) 사외이사 선임 안건: 업종별 반대 권고율, 반대 사유	290
(5) 감사위원(감사) 선임 안건: 업종별 반대 권고율, 반대 사유	293
(6) 임원 선임 안건 반대 권고율	295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296

IV.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01

1. 설문조사 개요301

1) 조사 목적301

2) 조사 방법301

2. 설문 조사 결과302

1)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수준 평가302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개선방향304

(1) 지배구조 부문304

가. 주주권리보호304

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306

다. 경영투명성307

라. 감사기구308

(2) 환경경영 부문309

(3) 사회책임경영 부문311

가. 노사관계312

나. 인권보호312

다.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313

라. 소비자 권익보호314

마. 지역사회 공헌316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투자 견해317

3. 결론 및 제언318

부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소개323

〈표 차례〉

〈표 I.1.1〉 사외이사 제도 연혁	3
〈표 I.1.2〉 사외이사 선임비율	4
〈표 I.1.3〉 소수주주권의 요건에 관한 규정 대비	18
〈표 II.1.1〉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65
〈표 II.1.2〉 자산규모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66
〈표 II.1.3〉 그룹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67
〈표 II.1.4〉 업종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68
〈표 II.1.5〉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69
〈표 II.1.6〉 자산규모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70
〈표 II.1.7〉 그룹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70
〈표 II.1.8〉 업종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71
〈표 II.1.9〉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73
〈표 II.1.10〉 자산규모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73
〈표 II.1.11〉 그룹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74
〈표 II.1.12〉 업종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75
〈표 II.1.13〉 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76
〈표 II.1.14〉 자산규모별 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77
〈표 II.1.15〉 그룹별 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77
〈표 II.1.16〉 업종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78
〈표 II.1.17〉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79
〈표 II.1.18〉 자산규모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0
〈표 II.1.19〉 그룹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1
〈표 II.1.20〉 업종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2
〈표 II.1.21〉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3
〈표 II.1.22〉 자산규모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4
〈표 II.1.23〉 그룹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4
〈표 II.1.24〉 업종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5
〈표 II.1.25〉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현황	86
〈표 II.1.26〉 자산규모별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현황	87
〈표 II.1.27〉 그룹별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현황	88
〈표 II.1.28〉 업종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89

〈표 II.1.29〉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90
〈표 II.1.30〉 자산규모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91
〈표 II.1.31〉 그룹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91
〈표 II.1.32〉 업종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92
〈표 II.1.33〉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93
〈표 II.1.34〉 자산규모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94
〈표 II.1.35〉 그룹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95
〈표 II.1.36〉 업종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96
〈표 II.1.37〉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을 현황	97
〈표 II.1.38〉 자산규모별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을 현황	98
〈표 II.1.39〉 그룹별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을 현황	99
〈표 II.1.40〉 업종별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을 현황	100
〈표 II.1.41〉 계열회사 지분을 현황	101
〈표 II.1.42〉 자산규모별 계열회사 지분을 현황	102
〈표 II.1.43〉 그룹별 계열회사 지분을 현황	102
〈표 II.1.44〉 업종별 계열회사 지분을 현황	103
〈표 II.1.45〉 5% 이상 주주 지분을 현황	104
〈표 II.1.46〉 자산규모별 5% 이상 주주 지분을 현황	105
〈표 II.1.47〉 그룹별 5% 이상 주주 지분을 현황	105
〈표 II.1.48〉 업종별 5% 이상 주주 지분을 현황	106
〈표 II.1.49〉 등기임원 지분을 현황	107
〈표 II.1.50〉 자산규모별 등기임원 지분을 현황	108
〈표 II.1.51〉 그룹별 등기임원 지분을 현황	108
〈표 II.1.52〉 업종별 등기임원 지분을 현황	109
〈표 II.1.53〉 사외이사 지분을 현황	110
〈표 II.1.54〉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지분을 현황	111
〈표 II.1.55〉 그룹별 사외이사 지분을 현황	111
〈표 II.1.56〉 업종별 사외이사 지분을 현황	112
〈표 II.1.57〉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평균 ...	113
〈표 II.1.58〉 자산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비율 ..	114
〈표 II.1.59〉 그룹별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평균 ...	115
〈표 II.1.60〉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평균 ..	116
〈표 II.1.61〉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117
〈표 II.1.62〉 자산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	117
〈표 II.1.63〉 그룹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118

〈표 II.1.64〉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119
〈표 II.1.65〉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120
〈표 II.1.66〉	자산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121
〈표 II.1.67〉	그룹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121
〈표 II.1.68〉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액 현황	122
〈표 II.1.69〉	총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123
〈표 II.1.70〉	자산규모별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124
〈표 II.1.71〉	그룹별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124
〈표 II.1.72〉	업종별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125
〈표 II.1.73〉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126
〈표 II.1.74〉	자산규모별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127
〈표 II.1.75〉	그룹별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127
〈표 II.1.76〉	업종별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128
〈표 II.1.77〉	이사회 규모	130
〈표 II.1.78〉	자산규모별 이사회 규모	131
〈표 II.1.79〉	그룹별 이사회 규모	131
〈표 II.1.80〉	업종별 이사회 규모	133
〈표 II.1.81〉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134
〈표 II.1.82〉	자산규모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135
〈표 II.1.83〉	그룹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135
〈표 II.1.84〉	업종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137
〈표 II.1.85〉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138
〈표 II.1.86〉	자산규모별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138
〈표 II.1.87〉	그룹별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139
〈표 II.1.88〉	업종별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140
〈표 II.1.89〉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141
〈표 II.1.90〉	자산규모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142
〈표 II.1.91〉	그룹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142
〈표 II.1.92〉	업종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143
〈표 II.1.9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145
〈표 II.1.94〉	자산규모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145
〈표 II.1.95〉	그룹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146
〈표 II.1.96〉	업종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147
〈표 II.1.97〉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148
〈표 II.1.98〉	자산규모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149

〈표 II.1.99〉 그룹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150
〈표 II.1.100〉 업종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151
〈표 II.1.101〉 사외이사 선임비율	152
〈표 II.1.102〉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선임비율	153
〈표 II.1.103〉 그룹별 사외이사 선임비율	154
〈표 II.1.104〉 업종별 사외이사 선임비율	155
〈표 II.1.105〉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156
〈표 II.1.106〉 자산규모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156
〈표 II.1.107〉 그룹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157
〈표 II.1.108〉 업종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158
〈표 II.1.109〉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159
〈표 II.1.110〉 자산규모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160
〈표 II.1.111〉 그룹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161
〈표 II.1.112〉 업종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162
〈표 II.1.113〉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163
〈표 II.1.114〉 자산규모별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164
〈표 II.1.115〉 그룹별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164
〈표 II.1.116〉 업종별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165
〈표 II.1.117〉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166
〈표 II.1.118〉 자산규모별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167
〈표 II.1.119〉 그룹별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168
〈표 II.1.120〉 업종별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169
〈표 II.1.121〉 조회공시 횟수 현황	170
〈표 II.1.122〉 자산규모별 조회공시 횟수 현황	171
〈표 II.1.123〉 그룹별 조회공시 횟수 현황	171
〈표 II.1.124〉 업종별 조회공시 횟수 현황	172
〈표 II.1.125〉 정정공시 현황	173
〈표 II.1.126〉 자산규모별 정정공시 현황	174
〈표 II.1.127〉 그룹별 정정공시 현황	175
〈표 II.1.128〉 업종별 정정공시 현황	176
〈표 II.1.129〉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기업 현황	177
〈표 II.1.130〉 자산규모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기업 현황	178
〈표 II.1.131〉 그룹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기업 현황	179
〈표 II.1.132〉 업종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현황	180
〈표 II.1.133〉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181

〈표 II.1.134〉 자산규모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182
〈표 II.1.135〉 그룹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183
〈표 II.1.136〉 업종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184
〈표 II.1.137〉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185
〈표 II.1.138〉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186
〈표 II.1.139〉 그룹별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187
〈표 II.1.140〉 업종별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188
〈표 II.1.141〉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189
〈표 II.1.142〉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190
〈표 II.1.143〉 그룹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191
〈표 II.1.144〉 업종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192
〈표 II.1.145〉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193
〈표 II.1.146〉 자산규모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194
〈표 II.1.147〉 그룹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195
〈표 II.1.148〉 업종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196
〈표 II.1.149〉 상근감사 설치 현황	197
〈표 II.1.150〉 자산규모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	198
〈표 II.1.151〉 그룹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	198
〈표 II.1.152〉 업종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	199
〈표 II.1.153〉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00
〈표 II.1.154〉 자산규모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01
〈표 II.1.155〉 그룹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02
〈표 II.1.156〉 업종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03
〈표 II.1.157〉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204
〈표 II.1.158〉 자산규모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204
〈표 II.1.159〉 그룹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205
〈표 II.1.160〉 업종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206
〈표 II.1.161〉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207
〈표 II.1.162〉 자산규모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207
〈표 II.1.163〉 그룹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208
〈표 II.1.164〉 업종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209
〈표 II.2.1〉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정책 수립	210
〈표 II.2.2〉 적정 근무시간 유지 방안 마련 기업	210
〈표 II.2.3〉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수준	211
〈표 II.2.4〉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212

〈표 II.2.5〉 노사분규 발생 현황	212
〈표 II.2.6〉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213
〈표 II.2.7〉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도입	213
〈표 II.2.8〉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215
〈표 II.2.9〉 임직원 교육훈련 방침 및 퇴직자 지원제도 마련 현황	216
〈표 II.2.10〉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	216
〈표 II.2.11〉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외 공시 현황	218
〈표 II.2.12〉 장애인 고용비율 공개 기업 현황	219
〈표 II.2.13〉 인권 교육 실시 현황	219
〈표 II.2.14〉 공정거래 방침 및 실천 프로그램 수립	220
〈표 II.2.15〉 협력사 재산권 존중 원칙 도입	220
〈표 II.2.16〉 부패방지 내부원칙 수립 및 부패방지 전담조직 운영	221
〈표 II.2.17〉 부패방지 윤리교육 실시	222
〈표 II.2.18〉 정기적인 부패방지 성과 관리 기업 현황	222
〈표 II.2.19〉 협력사 선정 시 윤리경영 수준 반영	223
〈표 II.2.20〉 협력사 윤리경영 수준 정기 관리 및 관리결과 재입찰심사 반영	224
〈표 II.2.21〉 협력사 대상 사회적 책임 방침 교육 및 안내	224
〈표 II.2.22〉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226
〈표 II.2.23〉 제품서비스 제공 원칙 수립 및 제품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인증 취득	227
〈표 II.2.24〉 소비자 정보보호 교육 실시	227
〈표 II.2.25〉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228
〈표 II.2.26〉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 수준	230
〈표 II.2.27〉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230
〈표 II.2.28〉 지역 주민과의 대화채널 운영	232
〈표 II.3.1〉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표명	233
〈표 II.3.2〉 환경경영 실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부여	233
〈표 II.3.3〉 최고경영자에게 환경성과 및 개선결과 보고	234
〈표 II.3.4〉 환경경영 실천의지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234
〈표 II.3.5〉 환경전략 및 방침 수립	234
〈표 II.3.6〉 환경경영 조직	235
〈표 II.3.7〉 업종별 환경경영 조직 유무	236
〈표 II.3.8〉 환경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237
〈표 II.3.9〉 친환경공급망 관리 구축 현황	239
〈표 II.3.10〉 용수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40
〈표 II.3.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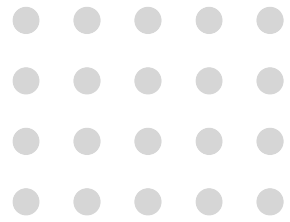
<표 II.3.12> 에너지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42
<표 II.3.13>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43
<표 II.3.14> 폐기물 배출량 관리 기업 수	245
<표 II.3.15>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설계활동	247
<표 II.3.16> 대기·수질 오염물질 관리 기업 수	247
<표 II.3.17> 화학물질 유통량 공개 기업 수	251
<표 II.3.18> 화학물질 위험관리 시스템 마련	252
<표 II.3.19>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현황	252
<표 II.3.20> 환경회계 정보관리	254
<표 II.3.21> 환경감사 형태	256
<표 II.3.22> 업종 민감도별 용수 절감율 평균·최대(최소)	258
<표 II.3.23> 업종 민감도별 폐기물 감량율 평균·최대(최소)	260
<표 II.3.24> 업종 민감도별 에너지 절감율 평균·최대(최소)	261
<표 II.3.25> 업종 민감도별 온실가스 감축율 평균·최대(최소)	263
<표 II.3.26> 주요 환경오염물질 관리 기업	263
<표 II.3.27> 업종 민감도별 화학물질 저감율 평균·최대(최소)	264
<표 II.3.28> 업종 민감도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증가율 평균·최대(최소)	266
<표 II.3.29> 업종 민감도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증가율 평균·최대(최소)	267
<표 II.3.30> 환경정보 공개기업	269
<표 II.3.31> 대외 이해관계자 대응활동 현황	269
<표 III.1.1> 2011년, 2012년 12월 결산법인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275
<표 III.1.2> CGS의 KOSPI200사 개별안전 반대율	275
<표 III.1.3> 의안분석 대상 기업	277
<표 III.1.4> KOSPI200사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부터 개최일까지의 평균기간	278
<표 III.1.5> KOSPI200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분포	278
<표 III.1.6> 실제 상정방식에 따른 반대율과 개별 안전에 대한 반대율 비교	279
<표 III.1.7> 두 가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원 선임 안전에 대한 반대율 비교	279
<표 III.1.8> 임원 선임 안전 일괄상정 유형 분류	280
<표 III.1.9> 개별 안전 반대 수 및 반대율	281
<표 III.1.10> 정관변경 안전 상정 현황	282
<표 III.1.11> 사외이사 반대사유 현황	283
<표 III.1.12> 감사위원(감사) 반대사유 현황	283
<표 III.1.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임원 후보 반대 현황	284
<표 III.1.14> 2012년 의안분석 대상 금융회사 현황	285
<표 III.1.15> 2012년 금융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분포	286

〈표 III.1.16〉 2012년 금융회사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부터 개최일까지 평균기간	286
〈표 III.1.17〉 계산 방법별 반대 권고율 비교	287
〈표 III.1.18〉 계산 방법별 임원 반대권고율 비교	287
〈표 III.1.19〉 개별 안전별 반대권고율	288
〈표 III.1.20〉 2012년 금융회사 정관변경 안전 상정 현황	289
〈표 III.1.21〉 정관변경 안전에 대한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반대 권고율 비교	290
〈표 III.1.22〉 2012년 금융업종별 사외이사 선임 안전 반대 권고율	290
〈표 III.1.23〉 금융회사 사외이사 선임 반대사유 현황	291
〈표 III.1.24〉 2012년 금융회사 감사위원 선임 안전 상정 및 반대 권고율 현황	293
〈표 III.1.25〉 2012년 금융회사 감사위원 선임 반대사유 현황	293
〈표 III.1.26〉 금융회사와 KOSPI200 비금융회사의 임원선임 안전별 반대율 (%)	295

〈그림 차례〉

〈그림 II.2.1〉 보건·안전 전담조직 운영	214
〈그림 II.2.2〉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217
〈그림 II.2.3〉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및 불만처리 프로세스 운영	225
〈그림 II.2.4〉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228
〈그림 II.2.5〉 소비자 피해 보상절차 및 보상기구 마련	228
〈그림 II.2.6〉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229
〈그림 II.2.7〉 지역 공급자 우선 배려 및 현지인 우선 채용 정책 마련	231
〈그림 II.3.1〉 녹색구매 방침 및 시스템 구축현황	238
〈그림 II.3.2〉 업종별 용수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40
〈그림 II.3.3〉 용수 정보공개 사업장 공개현황	241
〈그림 II.3.4〉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42
〈그림 II.3.5〉 에너지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243
〈그림 II.3.6〉 업종별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44
〈그림 II.3.7〉 원·부자재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244
〈그림 II.3.8〉 업종별 폐기물 배출량 관리 기업현황	245
〈그림 II.3.9〉 폐기물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246
〈그림 II.3.10〉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248
〈그림 II.3.11〉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관리 공개 기업현황	249

〈그림 II.3.12〉 수질오염물질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249
〈그림 II.3.13〉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관리 공개 기업현황	250
〈그림 II.3.14〉 업종별 화학물질 유통량 공개기업	251
〈그림 II.3.15〉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현황	253
〈그림 II.3.16〉 온실가스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254
〈그림 II.3.17〉 환경성과 평가시스템 운영현황	255
〈그림 II.3.18〉 원단위 평균 3개년 절감실적 계산식	257
〈그림 II.3.19〉 용수 3개년 평균 절감을 기업현황	259
〈그림 II.3.20〉 폐기물 3개년 평균 감량을 기업현황	260
〈그림 II.3.21〉 에너지 3개년 평균 절감을 기업현황	261
〈그림 II.3.22〉 온실가스 3개년 평균 감축을 기업현황	262
〈그림 II.3.23〉 화학물질 3개년 평균 저감을 기업현황	264
〈그림 II.3.24〉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평균 3개년 증가 기업현황	265
〈그림 II.3.25〉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평균 3개년 증가 업종현황	266
〈그림 II.3.26〉 과거 3개년 친환경 제품및서비스 구매 증가율 현황	267
〈그림 II.3.27〉 업종별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가 증가한 기업	267
〈그림 II.3.28〉 녹색인증 현황	268
〈그림 III.1.1〉 2006~2011년 국내 펀드 전체 설정액 및 순자산 총액	274
〈그림 III.1.2〉 2012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안전별 반대권고율(건수 기준) ...	288
〈그림 III.1.3〉 2012년 금융회사 사외이사 반대사유 순위	292
〈그림 III.1.4〉 2012년 비금융회사 사외이사 반대사유 순위	292
〈그림 III.1.5〉 2012년 금융회사 감사위원 반대사유 순위	294
〈그림 III.1.6〉 2012년 비금융회사 감사위원 반대사유 순위	294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I

기업지배구조 제도

1. 사외이사
2. 감사
3. 이사회 내 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소수주주권
6. 주식매수선택권
7. 정관의 변경
8. 배당
9. 기업의 IT화
10. 경제력집중의 억제
11. 기회유용, 자기거래 및 집행임원

I. 기업지배구조 제도

1. 사외이사

□ 개념 및 도입 취지

-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독립성 저해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상법 제382조 제3항 본문)
- 회사의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했거나 이에 관여해 온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됨

□ 연혁

-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에 1990년대 후반부터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상법에는 2009년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됨

<표 I.1.1> 사외이사 제도 연혁

연월	주요 내용	관련규정
98. 2.	·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이사총수의 1/4이상, 최소 1인 이상)	유가증권 상장규정
99. 9.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제정 · 금융기관과 대규모공개기업(자산 1조원 이상)은 1/2이상 (최소 3인 이상)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01. 3.	·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선임 의무화(자산 1천억 원 미만 벤처기업 제외) · 대규모기업(자산 2조원 이상)과 금융기관은 이사총수의 1/2이상 사외이사 의무화	증권거래법 [법률 제6423호, 2001.3.28, 일부개정] (제191조의16)
03. 2.	· 사외이사 수는 최소 2인 이상 · 대규모공개기업(자산 1조원 이상)은 과반수(최소 3인 이상)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03. 12.	·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	증권거래법 [법률 제7025호, 2003.12.31, 일부개정] (제191조의16)
09. 1.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 · 일반 상장회사 : 이사 총수의 1/4이상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상법(제542조의8)

□ 자격

- 상법 382조 제3항 전단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함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선임

- 사외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하며,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등기함

〈표 I.1.2〉 사외이사 선임비율

회사	비율	근거법령
상장회사	이사총수의 1/4이상	상법 제542조의8 본문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자산 2조원 이상)	상법 제542조의8 단서
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대상,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1/2이상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보험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대상,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1/2이상	보험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은행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1/2이상	은행법 제22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대상, 이사 총수의 1/2이상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여신전문 금융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대상,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1/2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8 제1항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대상,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1/2이상	자본시장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8)

-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하고, 특히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라 함)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제1항)
- 제2항이 별도로 열거하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위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일종으로서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제4항)
 -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함(제5항)
 - 주주제안권 행사 적격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 6주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함(제5항)

□ 사외이사의 책임

- 일반 이사와 동일함
- 단,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제400조에 따라 정관 규정을 전제로 면제받을 때, 면제 가능 금액이 일반 이사는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지만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반이사에 비해 확대됨(제400조 제2항)

2. 감사

□ 개념

- 이사에 대한 직무감사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
- 주식회사의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감사가 임의적 기관인 것(제568조)과 구별되며, 상설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기관인 검사인과도 구별됨
-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감사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 자격

-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감사의 지위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지위는 겸임 불가(제411조)
 - 감사지위의 독립성과 감사기능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임
 -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과 :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 선임 · 종임

-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제409조 제1항)
-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 취득함 (대법원 2005. 11. 8. 선고 2005마541 참조)
- 감사의 종임과 해임
 - 감사의 종임사유는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위임의 종료(민법 제 689, 690조)에 의하여 종임(제415조, 제382조 제2항)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판결(해임판결)에 의해 해임되기도 함(제415조, 제385조)
 -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의견진술이 가능함(제409조의2)

□ 감사 선임결의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 제한

- 감사 선임결의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으로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제409조 제2항). 이 규정은 회사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3/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에 적용함
- (상장회사 특례규정)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제542조의12 제3항). 상장회사인 경우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임

□ 권한

- 주된 권한(업무 및 회계감사권)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제412조 제1항)하는데 이는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는 것을 뜻함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부수적 권한
 - 보고요구 및 조사권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음(제412조 제2항)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402조)
 - 이사회 소집청구권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412조의4 제1항), 만약 이때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 가능함(동조 제2항)
 - 이사회출석 및 의견진술권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음(제391조의2 제1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412조의3 제1항),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동조 제2항, 제366조 제2항)

- 회사대표권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함(제394조 제1항)
- 자회사 조사권 :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제412조의5 제1항),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할 수 있으며(제2항),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제3항)
- 각종의 소권 : 회사설립무효의 소(제328조), 총회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신주 발행무효의 소(제429조),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분할 및 분할합병무효의 소(제530조의11, 제529조) 등 각종 소 제기가 가능함

□ 의무

○ 주된 의무(선관주의의무)

- 감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제415조, 제382조 제2항), 감사는 회사에 대해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짐

○ 부수적 의무

- 감사보고서 작성의무 : 매 결산기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해야 함(제447조의4)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제391조의2 제2항)
-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 진술해야 함(제413조)
- 감사록 작성의무 :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 작성(제413조의2 제1항).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제2항)

□ 감사의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제414조 제1항)
- 제415조에 따라 제400조가 준용되어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고(제1항),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제2항)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제414조 제2항)
- 감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제414조 제3항)
- 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제400조 제2항)을 준용(제415조)

□ 상근감사

- 개념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 설치의무 회사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제542조의10 제1항)
- 자격
 - 감사와 달리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일부 준용한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함
 1.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사외이사에서 해당 규정 참조)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이사회 내 위원회

□ 개념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설치 가능함(제393조의2 제1항)
- 미국의 회사법에서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그 내부에 기능이 분화된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위원회,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 등을 둠
- 상법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특히 감사위원회를 감사에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입하는 외에, 그 밖의 업무에 관해서도 하나 또는 수 개의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함(1999년 신설)
-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함

□ 설치 근거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93조의2 제1항)
- 위원회의 기능에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관의 규정은 단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형식적인 근거설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법 및 운영방법을 명기해야 함
- 위원회의 설치 의무는 아니며 자율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고, 종류 또한 자율에 맡겨짐
 - 다만, 대규모회사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일종으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542조의8 제4항)와 감사위원회(제542조의11 제1항)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구성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제393조의2 제3항)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제415조의2 제2항)
-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자격 필요(제393조의2 제3항)

- 위원의 퇴임으로 위원회의 인원이 2인 미만 또는 정관이 정한 위원회 정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퇴임한 위원은 새로운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제393조의2 제5항, 제386조 제1항)

□ 위원회의 권한

- 상법은 이사회가 수권할 수 있는 사항을 폭넓게 인정함
 -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 가능(제393조의2 제2항)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권이 가능하므로, 신주의 발행(제416조 제1항), 사채의 발행(제469조,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이사의 경업이나 자기거래의 승인과 같은 중요한 사항, 지배인선임을 포함한 업무집행의 결정(제393조 제1항)도 포괄적으로 위임 가능함
 -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권(제362조)이나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권(제393조 제2항)은 성질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

□ 소집과 결의

-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절차가 준용됨(제393조의2 제5항,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3, 제392조)
-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함

□ 위원회결의의 변경

- 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함(제393조의2 제4항)
 - 이는 위원회 결의가 부당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각 이사란 위원회의 위원인 이사가 아니라 이사 전부를 뜻함
 -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각자가 소집 가능함
-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 가능함(제393조의2 제4항)
- 이사회의 다른 결의가 있으면 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을 잃음

4. 감사위원회

□ 개념

-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의 위원회(제415조의2)
- 회의체기관인 점에서 각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와는 구별됨
- 1999. 12.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에 의해 설치함

□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특별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으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함 (제415조의2 제2항)
-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규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은 상기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제542조의10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함(제542조의11 제3항)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제한

- (상장회사 특례규정)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제542조의12 제3항). 이는 상장회사인 경우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의 규정임
-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규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이 규정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설치와 구성

○ 설치

-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제415조의2 제1항)할 수 있음. 임의사항이나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하나는 반드시 두어야 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 - 제409조 제4항)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제542조의11 제1항)

○ 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제415조의2 제2항)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그 위원 중 적어도 1인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해야 함(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 대규모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으로서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

○ 위원의 선임·해임

- 선임은 이사회 일반적 결의로 함(제415조의2 제1항, 제393조의2 제1항)
-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위원의 지위도 상실됨
-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지위가 상실됨
-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만 해임 가능함(제415조의2 제3항)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주주총회에게 부여함(제542조의12 제1항)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제542조의12 제2항)하도록 규정함. 이사 선임 시에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이사를 구분해 선임하게 하면 이 이사후보에 대해서는 상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 규정으로 해당 제한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음

□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은행법 제24조,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2)

□ 운영

- 회의체기관이므로 권한행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함
- 소집이나 결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93조의2가 정하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름
-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음(제415조의2 제4항)
- 이사회 내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가 번복하는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제393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불가함(제415조의2 제6항)

□ 권한

-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 제1항)
- 감사의 부수적 권한 역시 행사 가능(제415조의2 제7항)

□ 의무와 책임

-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주된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부수적 의무 역시 동일함(제415조의2 제7항)
- 책임도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제414조)

5. 소수주주권

1) 소수주주권

□ 의의

-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는 주주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반해 주주에게 경영간섭 허용
-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 -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제1항), 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제1항),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제1항), 업무, 재산상태검사청구권(제467조 제1항)
-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제기권(제403조)
-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이상 - 해산판결청구권(제520조)

□ 상장회사의 특례

- 요건의 완화
 - 상장회사 중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위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 (제542조의6, 령 제32조)
 - 자본시장법 제29조 일정한 금융투자업자 요건 완화
- 상장회사 주식 소유 요건의 계속성
 -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점에 요건을 갖추면 가능
 - 상장회사의 경우 행사시점에서 소급하여 6개월 간 보유 필요
 - 소수주주권만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남용사례 예방 취지임
 -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소수주주의 요건주식수를 상법보다 적게 할 수 있고, 보유기간도 6개월보다 단기로 하는 것이 가능(제542조의6 제7항)
 - 반대로 늘리거나 장기로 하는 것은 불가

○ 요건의 구비방법

- 수인의 소유주식을 합쳐 요건주식수를 충족하면 그 수인의 이름으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함

〈표 I.1.3〉 소수주주권의 요건에 관한 규정 대비

사항	일반규정	특례규정
주주제안권	100분의 3 (363조의2)	1,000분의 10 (542조의6 2항)
대표소송	100분의 1 (403조)	1만분의 1 (542조의6 6항)
이익공여관련대표소송	100분의 1 (467조의2)	1만분의 1 (542조의6 6항)
불공정인수관련대표소송	100분의 1 (424조의2)	1만분의 1 (542조의6 6항)
발기인책임추궁대표소송	100분의 1 (324조)	1만분의 1 (542조의6 6항)
청산인책임추궁대표소송	100분의 1 (542조)	1만분의 1 (542조의6 6항)
집중투표청구	100분의 3 (382조의2)	100만분의1 (542조의7 2항)
이사·감사 해임청구	100분의 3 (385조 2항, 415조)	1만분의 50 (542조의6 3항)
청산인해임청구	100분의 3 (539조 2항)	1만분의 50 (542조의6 3항)
유지청구	100분의 1 (402조)	10만분의 50 (542조의6 5항)
회계장부열람권	100분의 3 (466조)	1만분의 10 (542조의6 4항)
주주총회소집청구	100분의 3 (366조)	1,000분의 15 (542조의6 1항)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100분의 1 (367조 2항)	-
업무검사권	100분의 3 (467조)	1,000분의 (542조의6 1항)
해산판결청구	100분의 10(520조)	-

2) 주주제안권

□ 의의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목적으로 운영됨

□ 요건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 소유한 주주(제363조의2 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5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수만 기준으로 함
- 미국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1%(또는 시가 \$1,000) 이상을 1년 이상 소유한 주주에게 부여함

□ 제안의 내용

-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의제제안권
 - 일정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의제)으로 정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이사를 선임하자는 안, 주식배당을 실시하자는 안 등
- 의안제안권
 - 의제에 관해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
 - 홍길동을 이사로 선임하자는 안 등

□ 제안내용의 제한

-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증명이나 소명은 불필요함
- 남용에 해당되는 주주제안은 이사회가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제363조의2 제3항)
- 제한되는 제안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령 제12조 제1호)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제2호)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제3호)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인 경우(제4호)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제5호)

□ 주주제안행사의 절차

- 제안내용을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이사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는데,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6주 전에 알 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주가 제안을 하면 이를 6주 이후에 열리는 총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의미를 가짐
-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의 제안은 직전 연도의 정기총회일에 대응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제출하도록 함(제363조의2 제1항)

□ 의제에 대한 회사의 조치

-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등 주주제안의 제한사유(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총 목적사항으로 상정 필요

3) 대표소송

□ 의의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제403조)
 - 이사, 발기인, 업무집행관여자, 감사, 청산인 등의 책임추궁을 위해서도 제기 가능
 -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제424조의2),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 받은 자(제467조의2)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기 가능(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
- 대표소송은 판결의 효과가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므로 주주의 공익권의 일종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기 불가
-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회복을 게을리 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미국법상의 대표소송(derivative suit)을 본받은 것

□ 요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제기 가능하며, 이때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됨
 -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제542조의6 제6항)
 - 주식소유요건은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및 소제기 시점에 구비해야 함(변론당시가 아님)
 - 제소 후 100분의 1 이하로 감소해도 무방함(제403조 제5항)
- 명의대여시에는 명의차용자가 제소 가능
-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제403조 제7항, 제186조)

- 대표소송 제기 전에 먼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함(제403조 제1, 2항)
 - 감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 제기 가능(제403조 제3항)
 -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청구 없이 즉시 소 제기가 가능(제403조 제4항)

□ 이중대표소송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여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
- 미국에서는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정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참조)

4) 집중투표제

□ 의의

- 이사선임에 있어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
 - 예컨대, 이사 3인을 선임하는 경우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에게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누적투표라고도 함
 -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써,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비례대표제적 사고를 원용한 제도로, 이사들 간에 당파적 대립을 초래할 소지도 있어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경영자 구성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됨

□ 요건

- 이사선임의 수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해 채택가능(제382조의2 제1항)
 - 선임할 이사가 1인이라면 의결권 집중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임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적용 배제가 가능(제382조의2 제1항)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이 같은 방식을 취함
- 주주의 청구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해야 함(제382조의2 제1항)
 - 이사선임을 위한 주총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함(제382조의2 제2항)
 - 청구가 있는 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음
- 소집통지의 특례
 - 총회의 소집통지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해야 하며, 총회에서는 그 기재된 이사의 수를 초과하거나 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없음

□ 방법

- 1주당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됨
-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 순으로 이사가 됨(제382조의2 제4항)
- 개별 이사의 선임에 관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결의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4분의 1 미만이 출석한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선임 불가능하다고 봄

□ 상장회사의 특례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로 족하며(제542조의7 제2항),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해 정관변경을 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 까지로 제한됨(동조 제3항)
-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안은 다른 정관 변경안과 분리 표결하여야 함(제542조의7 제4항)
- 집중투표 청구는 주총 6주 전에 해야 함(제542조의7 제1항)

5) 위법행위유지청구

□ 의의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402조)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이라는 점에서 대표소송권(제403조)과 취지가 공통되나,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행사하는 사전 권리라는 점에서 사후 조치인 대표소송과 구별됨

□ 요건

-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함(제402조)
 - 회사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나 대내적·대외적 행위를 불문함
 - 불법행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도 대상이 됨
 - 이사의 고의·과실이나 권한 내외를 묻지 않음
-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
 - 이사의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함(제402조)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는데, 법률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뿐 아니라 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절차 등에 비추어 회복이 곤란하거나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도 인정됨

□ 당사자

- 청구권자
 -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제402조)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며 유지청구 당시에만 충족되면 됨
 -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감사위원회(제415조의2 제7항)

○ 청구의 상대방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는 이사

□ 절차

- 소외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소로써 할 수도 있는데, 소로써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이사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함(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회사를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침

□ 효과

○ 순응의무의 존부

- 유지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행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유지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법령·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가 되거나 그로 인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제399조)을 지지는 않음

○ 유지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유지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차후 그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이사에게 중과실이 의제됨
- 유지청구를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임

○ 유지청구에 응한 경우

- 정당한 경우에는 행위를 유지함이 당연하나, 유지청구가 부당함에도 그에 좇아 이사가 행위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유지가 오히려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1항)이 발생할 수 있음

6. 주식매수선택권

□ 의의 및 취지

-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제340조의2)
- 회사의 효율성 제고 및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함

□ 선택권의 유형과 정산

- 자기주식양도형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제340조의2 제1항 본문)
- 신주발행형
 - 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제340조의2 제1항 본문)
- 차액정산
 - 위 2가지 중 어느 유형이든 선택권의 행사에 응해 회사는 자기주식의 양도나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함
 - 즉, 선택권의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실질가액이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을 회사가 선택권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상당의 자기주식을 이전해 주는 것임(제340조의2 제1항 단서)
 -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의 이전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유지해 주기 위한 것임

□ 행사의 요건

○ 당사자

- 부여하는 자는 회사, 대상자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제340조의2 제1항 본문)임.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를 포함함(제542조의3 제1항)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자가 될 수 없음(제340조의2 제2항)
- 상장회사는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불가 (제542조의3 제1항 단서)
-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상속은 가능(제340조의4 제2항)

○ 정관의 규정 (제340조의2 제1항)

- 정관에 규정할 사항은 ①일정한 경우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선택권의 행사기간, ⑤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임

○ 부여의 한도

-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제340조의2 제3항)
-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충실을 기하는 한편, 수량을 적정히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사행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고려함
- 정관에 규정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 뿐 아니라 부여시점에서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됨
- 무액면주식의 경우에 주식의 권면액을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 부여절차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340조의2 제1항).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제542조의3 제2항. 제3항)

- 계약의 체결(제340조의3 제3항).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주총결의만으로 바로 발생하지 않음
- 행사기간
 - 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고 있어야 가능함(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 선택권의 양도제한
 - 양도불가(제340조의4 제2항 본문). 입질이나 압류도 불가능
 - 선택권은 행사 단계에서 요건충족 여부 자체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요하므로 행사 이전에는 불완전한 권리로서 자유로운 유통에 적합하지 않고, 그 양도는 회사에 관리상의 부담을 주기 때문임
 - 그 예외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행사 가능(제340조의4 제2항 단서)
 -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됨
- 선택권의 상실
 - 2년 내의 퇴임(퇴직)
 - 기타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그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선택권을 취소한 경우

7. 정관의 변경

□ 정관변경

- 정관변경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뜻하는 실질적 의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정관은 사업목적,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에게 회사의 존재양식을 제시하고, 영리실현의 기본적인 방법에 관해 예측가능성 부여함
 - 간단한 자구나 구두점의 수정·가감도 정관변경이며,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 정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은 모두 정관변경임

□ 정관변경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3조 제1항, 제434조)
 -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도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해야 함(제433조 제2항)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의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됨(제435조)
 - 개정사항 : 기존 상법 규정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라고 하여 ‘수종의 주식’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 ‘종류주식’으로 변경함
- 정관변경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 요함(제337조 제4항, 제183조)

□ 정관변경의 한계

- 주식회사의 본질상의 한계
 - 주식회사의 본질(자본충실 이념,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기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변경 불가

○ 주금액의 변경

- 정관기재사항 중 액면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다면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본금감소 절차 없이 주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정관변경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액면가의 법정최저액(100원) 미만으로 인하는 불가능함(제329조 제3항)
- 주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한 분만큼 주주에게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주식을 병합해야 함

○ 역사적 사실

- 설립 당시의 정관에 기재하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제289조 제1항 제5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제289조 제1항 제8호), 변태설립사항(제290조) 등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됨

○ 기한부, 조건부 변경

- 기한, 조건 모두를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변경된 내용 등기할 때가 아닌 주총 결의로 즉시 효력 발생(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등 참조)

8. 배당

1) 이익배당

□ 이익배당의 의의

- 이익의 분배는 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이며, 자본이윤의 향유는 출자자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임
 - 따라서 전혀 이익을 분배하지 않음은 물론, 부당하게 장기간 이익배당을 중지하는 것도 위법임
-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산출되므로 재무제표의 확정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함(정기배당)
- 정기총회에서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연도 중간에 추가로 배당함(중간배당)

□ 이익배당 관련 규정 개정

- 원칙적으로 재무제표확정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권한이지만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무제표 확정의 승인을 이사회가 결의로 할 수 있게 함
- 이에 따라 제462조 제2항은 배당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가 하는 회사에 한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도록 함
- 또한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중간배당

□ 의의

-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간에 직전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실시하는 이익분배
- 이익배당의 재원마련을 위한 회사의 부담을 평준화하고 증권시장에의 자본유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중간배당의 요건

- 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함(제462조의3 제1항)
- 정관의 규정 필요
-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시기는 정관으로 규정
- 이사회 결의를 요함. 중간배당여부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사회 재량, 추후 주총 추인 요하지 않음
- 정관이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배당자격이 있음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 직전 결산기의 정기 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함

3) 현물배당

□ 현물배당

- 현물배당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주주가 현물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62조의4)
- 아울러 중간배당의 경우 제462조의3 제1항에도 금전뿐 아니라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 현물배당을 인정할 경우 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물배당을 결정한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현물 대신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주주를 보호함
 -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현물배당 가능(제462조의4 제1항)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현물 대신 금전배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62조의4 제2항 제1호)
 - 회사도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재산 대신 금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62조의4 제2항 제2호)

4) 주식배당

□ 의의

-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
 - 먼저 배당해야 할 이익이 금전으로 확정되고,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여 배당함
 - 기존의 주식 1주당 x원이라는 배당금이 결정되고, 그 배당금을 주식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신주 발행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므로 회사가 기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함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이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 분배함

□ 주식배당의 요건

-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제462조의2 제1항 단서). 이 한도가 지켜지는 한 매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주식배당해도 무방함
-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함
- 주식배당을 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므로, 이 증가분이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이어야 함
- 주총 결의에 의하여 함(제462조의2 제1항 본문)

5) 위법배당

□ 의의

-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행해진 이익배당을 위법배당이라 함
 -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배당한 것
 - 그 외에 배당절차, 기준, 시기, 방법 등에 하자가 있거나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배당 등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금전배당의 위법성

- 상법 제462조가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을 하거나, 제462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배당 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강행법적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임
- 회사의 반환청구 가능
-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위법배당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 시키므로 회사채권자도 직접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청구 가능 (제462조 제3항, 제462조의3 제6항)
 - 다만, 채권자는 자기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
 - 배당당시 채권자뿐 아니라 그 이후의 채권자도 가능(통설)

□ 주식배당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

-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에 의해서만 주식배당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임
- 주식배당은 회사재산이 현실로 주주에게 이전된 바가 없고, 신주발행무효판결에 의해 주주의 배당신주는 소멸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이 주식배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는 인정되지 않음

□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 위법한 내용의 배당의안을 작성·집행한 이사는 회사, 주주, 채권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401조), 이사회에서 위법한 배당을 승인한 이사들, 감사를 게을리 한 감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제399조, 제414조, 제415조의2 제7항)
- 관련 임원들에게는 벌칙(제625조 제3항, 제462조의3 제5호)이 적용되고, 해임사유(제385조)가 됨
- 위법배당에 관해 외부감사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도 회사에 대한 책임져야 함

9. 기업의 IT화

1) 기업의 IT화

□ 관련 규정

-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하여 전자주주명부,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주주제안·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함(제352조의2, 제356조의2, 제363조, 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2제1항, 제368조의4 등)

2) 전자주주명부

□ 전자주주명부

-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자주주명부에는 기존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

□ 전자등록제

-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란 회사에서 주권을 실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을 등록한 후 주권 없이도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고, 그 밖에 주권을 소지한 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제356조의2)
- 근거 및 등록절차, 법적 효력 등
 -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등록부를 주주명부로 간주함
 - 회사는 회사가 성립한 날 또는 주금납입 후 지체 없이 전자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한 것으로 추정함(등록의 권리추정적 효력 인정)
 - 전자등록부를 선의·무중과실로 신뢰한 제3자가 주식의 양도·입질에 관한 전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그 권리의 적법한 취득을 인정함(제356조의2 제3항)

-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478조 제3항)

4)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 내용

- 기업경영에 발달된 IT환경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제363조의2, 제366조)
-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가능

5) 전자투표제

□ 전자투표제

-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 개별 기업의 IT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주주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의결권의 중복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규정 취지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주주총회에의 의결권행사는 주주 스스로 행사하는 방법 외에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제368조 제3항), 서면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데(제368조의2), 이러한 의결권행사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방식도 효율적

□ 시행방법

-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주총 소집통지·공고에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재해야 함(제368조의4 제2항)
 - 소집통지·공고에는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기타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기재(상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투표방법

- 전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확인을 받아야 함(제368조의4 제3항, 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회사가 통지한 인터넷주소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함
- 투표 기간은 회사가 정하되, 주총 전날까지 종료하도록 함(령 제13조 제2항 제2호)
-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함(령 제13조 제3항)
- 전자투표의 결과가 주총 결의 이전에 공개될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총에서 개표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령 제13조 제5항)

□ 전자투표의 도달시기

-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이므로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제1항)
-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주주가 회사에 의해 지정된 전자정보처리조직(컴퓨터 등)에 투표의사를 입력한 때에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기록의 보존

-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제368조의4 제5항)

10. 경제력집중의 억제

1) 의의

□ 경제력집중의 문제

-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 등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나, 원래 독점금지법은 경제력집중의 문제 중에서 개별시장에 있어서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나 기업의 행위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독점규제법 제정 당시에는 독과점,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음
-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유효경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동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남

□ 경제력집중의 억제

- 1986. 독점규제법 제1차 개정 시에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
- 1992. 계열회사의 상호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996년 제도 강화
- 1997.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이후로, IMF의 기업집단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을 2000년 3월 말까지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
- 1999. 2.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함

- 1999. 12.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하고,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대기업을 구조조정을 촉진함
- 2001. 1.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의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한도를 완화함
- 2002. 1. 대규모기업집단의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하여 형태별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
- 2004. 12.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함
- 2007. 출자총액제도를 완화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시한을 연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관련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 2009. 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2) 지주회사 규제

□ 지주회사의 의의

-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
 -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활동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태가 초래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 사업활동의 지배·관리가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님
- 독점규제법은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만 규제대상으로 함
 -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말함(령 제2조 제2항)

□ 지주회사의 유형

-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함
 -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사업지주회사는 자신의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임
-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함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고, 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라고도 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임

□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해야 함
-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2항)
-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제3항)
-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함(제4항)
- 이러한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제5항)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원칙 :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금지(제1호 본문)
 - 예외 : 지주회사 전환 또는 설립 당시에 초과하게 된 경우 2년 유예(제1호 단서)
- 자회사 주식 지분을 제한(제2호)
 - 원칙 :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미만(국내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제2호 본문)
 - 예외 (제2호 단서)
 - 가. 지주회사 전환 또는 설립 당시에 미달된 경우 2년 유예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제한(제3호)

- 원칙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제3호 본문)

- 예외 (제3호 단서)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초과된 경우 2년 유예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경우 1년 유예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경우 1년 유예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경우 1년 유예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국내) 주식 소유 제한(제4호)

- 원칙 :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제4호 본문)

- 예외 :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소유하게 된 경우 2년 유예(제4호 단서)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국내) 주식 소유 제한(제5호)

- 원칙 : 비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제5호 본문)

- 예외 :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소유하게 된 경우 2년 유예(제5호 단서)

○ 손자회사 주식 지분을 제한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 원칙 :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제1호 본문)

- 예외(제1호 단서)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미달하게 된 경우 2년 유예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미달된 경우 1년 유예
-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행위 제한 (제2호)
 - 원칙 :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제2호 본문)
 - 예외(제2호 단서)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경우 2년 유예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제한(제3호)
 - 원칙 :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제한(제3호 본문)
 - 예외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년 유예 (제3호 단서)
-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법 제8조의2 제4항)
 - 원칙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제4항 본문)

- 예외(제4항 단서)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경우 2년 이내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4. 손자회사가 비금융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제한(법 제8조의2 제5항)
 - 원칙 :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제5항 본문)
 - 예외(제5항 단서)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경우 2년 유예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지주회사의 보고의무(법 제8조의2 제6, 7항, 령 제15조의6)
 -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금융지주회사법상의 행위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제6조의3)
 - 원칙 : 금융지주회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금지(제6조의3 본문)
 - 예외 :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경우 2년 유예(단서)
-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제6조의4)
 - 원칙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제6조의4 본문)
 - 예외(제6조의4 단서)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경우 2년 유예
 2.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3.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유예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제7조)

- 원칙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를 가지는 것 불가
- 예외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함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의무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함(법 제8조의3)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 시정조치 및 처벌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공시사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기타 범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벌칙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또는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제1항),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66조 제2항)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규정, 행위제한규정 등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 과징금

-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법 제17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3)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대규모기업집단

- 독점규제법은 모든 기업집단을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만 규제함
- 종래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만 규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함
-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의 금지는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대상(법 제9조 제1항,령 제17조 제1항)
- 공정위는 매년 4월 1일까지 동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령 제21조 제1항)

☐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 함(법 제14조의2 제1항)

(2) 상호출자의 금지

☐ 의의

- 상호출자는 둘 이상의 회사 간에 서로 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

- 독점규제법은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여기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법 제9조 제1항)
 - 다만 ①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됨(법 제9조 제1항 단서)
 -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해야 함
 - 그러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9조 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됨(법 제9조 제3항)

□ 규제 이유

- 상법은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상법 제342조의2 제1항)하며,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함(제369조 제3항)
 - 이러한 상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가공 자본을 억제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독점규제법에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가공 자본을 형성하여 최대주주(동일인)의 경영권 및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임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의의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
 - 독점규제법은 1992년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그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
 - 1992년 도입 당시에는 자기자본의 200%
 - 1996년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함
 - 1998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 보증을 전면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도 일정기한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함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법 제13조 제2항)

□ 규제 이유

-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이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나아가 일부 계열 회사의 부실이 그룹전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시키는 등 IMF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채무보증은 계열회사들을 거미줄처럼 엮어 놓음으로써 계열회사의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됨

(4)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의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11조)
 - 1992년 법 개정 시 도입됨

○ 예외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 참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①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독점규제법 제11조와 비교

- 독점규제법 제11조와 금산법 제24조는 모두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다만, 전자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수단을 규정하였다면, 후자는 소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규정하였다는 차이가 있음

(5)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의의

-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비상장·비등록 회사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다만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사항은 제외함(법 제11조의3)

- 2004년 법 개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한 공시의무가 도입됨

□ 공시 내용

-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규제 이유

- 대기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는 집단 내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구조나 경영상황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임

(6) 탈법행위의 금지

□ 의의

- 누구든지 상호출자의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의 제한 등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법 제15조)
- 탈법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4) 부당내부거래 규제

(1) 의의

□ 관련 규정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

□ 규제 이유

- 경제력집중 억제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짐
 -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특히 기업집단들간에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지원하게 되면, 비계열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됨
 - 또한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계열회사의 형태로 존속케 하여,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

(2) 유형

□ 부당내부거래의 유형

-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독점규제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별표 1의2 제10호 가목)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별표 1의2 제10호 나목)

□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별표 1의2 제10호 다목)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도입 배경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80% 이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막는 한편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운영함

□ 주요 내용

-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지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독점규제법 제11조의 2)

○ 도입 배경

-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의 약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초래 등 국민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후적인 조사·시정과 함께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제도를 도입함(2000.4.1.)

□ 주요 내용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해야 함
-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 위반시 제재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11. 기회유용, 자기거래 및 집행임원

□ 회사의 기회·자산의 유용금지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 회사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하여 회사와 거래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기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상법 제397조의2)
- 대기업집단 경영자의 왜곡된 재산증식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
 - 일부 대표이사나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 이는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식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
 - 회사 기회의 유용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지만 기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나 제397조 이사의 경업금지 조항 등으로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명문규정으로 신설함
-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는 다음 두 유형임(제397조의2 제1항)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이사회 승인 요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제397조의2 제1항)
- 책임(제397조의2 제2항)
 -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 절차의 강화

○ 이사의 자기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 하여야 함(상법 제398조)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제한 취지

-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반대의 이해를 가지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할 소지가 있어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함

○ 자기거래 제한 강화

-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98조는 특히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만 규율대상으로 하였으나, 현행상법은 이사뿐 아니라 주요 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정의 특수관계자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도 규율대상으로 포섭함
- 이사회 승인 요건을 2/3 이상으로 강화함
- 이사회 승인을 얻었더라도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해 제한요건을 강화함

□ 집행임원 제도 도입

○ 집행임원의 의의

-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로 설치되어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제408조의2 제1항, 제408조의4)

○ 도입 배경

- 상장회사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 실무집행임원을 두고 실제로는 등기이사의 직무를 수행시키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제화할 필요가 제기됨
- 실무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기하며, 제3자 보호에 충실함
-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업무감독기능에 충실하도록 함

○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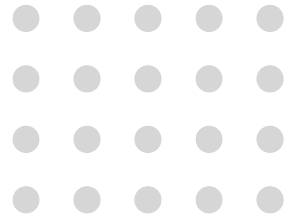
- 상법은 단순히 이사회의 권한사항의 하나로서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08조의2 제3항) 정관의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업무집행기구를 대표이사 체제에서 집행임원 체제로 교체하거나 반대로 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 관련 정관 규정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
-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함(제408조의5 제1항)
- 임기는 2년 초과 불가(제408조의3 제1항)
-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이사가 겸직도 가능

○ 권한 및 의무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 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제408조의4)
- 이사회 소집권(제408조의7)
-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08조의2 제2항) 집행임원제도 및 그 선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해야 함
-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제382조의5)와 비밀준수의무(제382조의4)를 부담함(제408조의9, 제382조의3, 4)
-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등의 제한을 받음(제408조의9)

○ 책임

-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책임 면제 관련 사항은 이사와 동일함(제408조의8)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II

ESG 동향

1. 기업지배구조 현황
2. 사회책임경영 현황
3. 환경경영 현황

II. ESG 동향

일러두기

□ ESG 평가대상기업

- 지배구조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실시하며, 연도별 평가 대상 기업 수는 다음과 같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678	685	706	690	668	710
코스닥시장	963	1017	1033	956	846	890

- 단, 2011년도와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사회, 환경평가는 지배 구조와 동일하게 각각 668사, 710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코스닥시장 상 장법인은 2011년도 133사, 2012년도 170사를 대상으로 실시됨

□ 자산규모별 분류 기준

- 자산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조원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1천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코스닥시장의 1천 억 미만 기업은 다수 벤처기업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	2조원 이상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593	580	595	578	545	567
코스닥	1천억 이상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 미만	804	825	810	693	555	541

□ 기업집단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 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20	22	18	16	17	20

□ 업종 분류

- 지배구조와 사회부문의 업종분류는 거래소 지수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함

유가증권시장(23)	코스닥시장(11)
건설업, 금융업, 기계업, 보험업, 비금속광물업, 서비스업, 섬유의복업, 운수장비업, 운수창고업, 유통업, 은행업, 음식료품업, 의료정밀, 의약품업, 전기전자업, 전기가스업, 제조업, 종이목재업, 증권업, 철강및금속업, 통신업, 화학업, 기타*	IT H/W, IT S/W & SVC, 건설, 금융, 기타서비스, 오락,문화, 운송, 유통, 제조, 통신방송서비스, 기타*

※ 수산업, 무역업, 농수산업 등 소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업종을 기타로 분류함

- 환경부문은 지배구조, 사회부문과 달리 21개 업종분류를 사용하며, 평가문항은 각 업종분류의 환경민감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가문항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민감도	상(9)	중(7)	하(4)
전체 상장법인 (공통)	건설업, 비금속광물업, 섬유의복업, 운수장비업, 전기전자업, 전기가스업, 조선업, 철강금속업, 화학업	기계업, 기타제조업, 운수창고업, 음식료품업, 의약품업, 종이목재업, 통신업	금융업, 기타서비스업, 유통업, 지주회사

1. 기업지배구조 현황

1) 주주권리보호 및 행사편의성

- ☐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등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기업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해야함. 또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경영권 방어 행위는 지양해야 함

(1) 기업지배구조현장

- ☐ 기업지배구조현장의 도입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주주중심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 <표 II.1.1>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지배구조현장을 도입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현장을 도입 및 공시하는 기업은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 및 2012년에 1사씩 감소함
 -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현장을 도입한 기업은 2012년 3사로 나타남

<표 II.1.1>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7	19	20	24	23	22
비율	2.51%	2.77%	2.83%	3.48%	3.44%	3.1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	2	3	6	2	3
비율	0.10%	0.20%	0.29%	0.63%	0.24%	0.34%

□ <표 II.1.2>는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률이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의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현장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2> 자산규모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1 (12.94%)	13 (12.38%)	11 (9.91%)	15 (13.39%)	18 (14.63%)	17 (11.89%)
2조원 미만	6 (1.01%)	6 (1.03%)	9 (1.51%)	9 (1.56%)	5 (0.92%)	5 (0.88%)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 (0.00%)	0 (0.00%)	1 (0.45%)	4 (1.52%)	1 (0.34%)	2 (0.57%)
1천억원 미만	1 (0.12%)	2 (0.24%)	2 (0.25%)	2 (0.29%)	1 (0.18%)	1 (0.18%)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3>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에 따른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비율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 그룹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1 (5.67%)	10 (4.35%)	11 (6.18%)	13 (7.14%)	10 (5.18%)	13 (5.83%)
총수없는 기업	3 (15.00%)	3 (13.64%)	3 (16.67%)	4 (25.00%)	5 (29.41%)	3 (1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4〉는 각 시장의 업종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을 타나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 금융관련업, 전기전자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기업지배구조현장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IT S/W & SVC업 기업의 지배구조현장 도입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표 II.1.4〉 업종별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5.3)	4(10.5)	3(7.7)	2(5.4)	3(9.1)	3(9.1)
금융업	1(6.7)	1(6.7)	1(6.7)	1(6.7)	2(13.3)	2(15.4)
기계업	0(0.0)	0(0.0)	0(0.0)	0(0.0)	1(2.7)	1(2.5)
보험업	1(9.1)	1(9.1)	1(9.1)	1(10.0)	1(9.1)	3(23.1)
비금속광물업	0(0.0)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1(2.9)	1(2.2)	2(2.7)	2(2.7)	2(2.7)	2(2.3)
섬유, 의복업	1(2.7)	0(0.0)	0(0.0)	1(3.1)	0(0.0)	0(0.0)
운수장비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1(2.0)	2(3.8)	0(0.0)	1(2.3)	1(2.2)	0(0.0)
은행업	0(0.0)	1(14.3)	0(0.0)	0(0.0)	1(25)	0(0.0)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0(0.0)	0(0.0)	0(0.0)	1(2.6)	0(0.0)
전기전자업	4(5.7)	4(5.9)	6(8.7)	8(12.1)	4(7.0)	3(5.0)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1(10)	1(11.1)	1(8.3)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1(4.3)	0(0.0)	0(0.0)
증권업	3(15.0)	2(10.0)	4(19)	4(18.2)	4(18.2)	3(13.6)
철강및금속업	1(2.4)	1(2.4)	1(2.3)	1(2.3)	1(2.3)	1(2.2)
통신업	1(25.0)	1(25.0)	1(16.7)	1(33.3)	1(33.3)	1(33.3)
화학업	0(0.0)	0(0.0)	0(0.0)	0(0.0)	0(0.0)	2(2.3)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0)	0(0.0)	0(0.0)	1(0.4)	0(0.0)	0(0.0)
IT S/W & SVC업	1(0.7)	1(0.7)	1(0.7)	2(1.6)	2(1.9)	2(2.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1(0.3)	1(0.3)	2(0.5)	0(0.0)	1(0.3)
통신방송서비스업	0(0.0)	0(0.0)	1(4.8)	1(4.8)	0(0.0)	0(0.0)

(2)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 ☐ 임직원 윤리규정은 임직원이 지켜야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하여 윤리경영을 정립하고 기업가치를 보호할 수 있음
- ☐ <표 II.1.5>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윤리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상장기업이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0년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인후 다소 하락함

<표 II.1.5>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78	209	251	271	255	245
비율	26.25%	30.51%	35.55%	39.28%	38.17%	34.5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68	92	108	133	90	91
비율	7.06%	9.05%	10.45%	13.91%	10.64%	10.22%

- ☐ <표 II.1.6>은 자산규모에 따른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나 도입률은 2010년 이후로 감소함
 -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수는 증가하였으나 1천억원 미만 기업은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함

〈표 II.1.6〉 자산규모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63 (74.12%)	73 (69.52%)	93 (83.78%)	95 (84.82%)	97 (78.86%)	108 (75.52%)
2조원 미만	115 (19.39%)	136 (23.45%)	158 (26.55%)	176 (30.45%)	158 (28.99%)	137 (24.1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27 (16.98%)	35 (18.23%)	46 (20.63%)	55 (20.91%)	46 (15.81%)	51 (14.61%)
1천억원 미만	41 (5.10%)	57 (6.91%)	62 (7.65%)	78 (11.26%)	44 (7.93%)	40 (7.39%)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7〉은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의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을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20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수없는 기업의 도입률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그 격차가 더욱 커짐

〈표 II.1.7〉 그룹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99 (51.03%)	112 (48.70%)	116 (65.17%)	127 (69.78%)	125 (64.77%)	122 (54.71%)
총수없는 기업	13 (65.00%)	15 (68.18%)	16 (88.89%)	14 (87.50%)	15 (88.24%)	17 (8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8>은 업종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과 통신업에 속한 기업은 모두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운송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2008년 이후 임직원 윤리규정을 도입한 사례가 없음

<표 II.1.8> 업종별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0(52.6)	19(50.0)	22(56.4)	23(62.2)	21(63.6)	14(42.4)
금융업	5(33.3)	6(40.0)	8(53.3)	8(53.3)	7(46.7)	7(53.8)
기계업	11(25.6)	10(23.8)	12(29.3)	14(35.9)	15(40.5)	14(35.0)
보험업	8(72.7)	7(63.6)	9(81.8)	8(80.0)	8(72.7)	10(76.9)
비금속광물업	4(16.7)	5(21.7)	6(27.3)	7(31.8)	6(30.0)	7(33.3)
서비스업	8(23.5)	13(28.9)	26(35.1)	29(38.7)	26(34.7)	31(35.2)
섬유, 의복업	3(8.1)	3(8.6)	5(14.7)	7(21.9)	8(26.7)	5(17.2)
운수장비업	11(24.4)	9(19.6)	14(29.8)	17(37.0)	16(36.4)	15(30.6)
운수창고업	6(31.6)	7(33.3)	10(50.0)	10(52.6)	11(57.9)	7(36.8)
유통업	14(28.0)	21(39.6)	18(40.0)	20(45.5)	19(42.2)	20(37.7)
은행업	7(100.0)	7(100.0)	6(100.0)	6(100.0)	4(100.0)	3(100.0)
음식료품업	6(16.7)	14(38.9)	13(37.1)	13(38.2)	12(34.3)	13(37.1)
의료정밀	2(33.3)	3(60.0)	3(75.0)	4(100.0)	3(75.0)	3(75.0)
의약품업	5(14.3)	8(22.2)	6(15.8)	6(15.8)	8(21.1)	6(15.4)
전기전자업	13(18.6)	16(23.5)	19(27.5)	22(33.3)	21(36.8)	19(31.7)
전기가스업	6(54.5)	5(45.5)	6(60.0)	7(70.0)	7(70.0)	7(58.3)
제조업	1(10.0)	2(22.2)	3(25.0)	2(18.2)	3(33.3)	2(18.2)
종이목재업	1(4.0)	2(8.0)	2(8.3)	4(17.4)	3(12.5)	3(12.5)
증권업	11(55.0)	12(60.0)	15(71.4)	18(81.8)	12(54.5)	12(54.5)
철강및금속업	9(22.0)	10(23.8)	12(27.9)	14(31.8)	13(30.2)	13(28.9)
통신업	4(100.0)	4(100.0)	6(100.0)	3(100.0)	3(100.0)	3(100.0)
화학업	23(25.3)	26(29.9)	30(35.7)	29(34.5)	28(33.3)	31(35.2)
기타	0(0.0)	0(0.0)	0(0.0)	0(0.0)	1(16.7)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23(8.6)	27(9.1)	37(12.4)	47(16.8)	26(9.9)	28(11.1)
IT S/W & SVC업	12(8.2)	17(11.1)	17(11.9)	22(18.0)	15(14.4)	14(14.0)
건설업	3(15.8)	3(15.8)	3(14.3)	3(15.8)	4(21.1)	3(14.3)
금융업	2(9.5)	4(18.2)	3(14.3)	4(20.0)	3(15.8)	2(12.5)
기타서비스업	3(8.1)	5(13.2)	5(10.0)	5(9.6)	7(15.2)	4(8.2)
기타	0(0.0)	0(0.0)	1(16.7)	1(20.0)	1(16.7)	0(0.0)
오락,문화업	0(0.0)	0(0.0)	0(0.0)	0(0.0)	1(14.3)	1(10.0)
운송업	1(33.3)	1(33.3)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2(3.8)	3(5.0)	4(7.3)	3(8.3)	3(5.9)
제조업	16(4.1)	26(6.5)	31(7.8)	38(10.3)	24(7.4)	32(8.9)
통신방송서비스업	8(36.4)	7(31.8)	8(38.1)	9(42.9)	6(35.3)	4(20.0)

(3) 집중투표제

- ☐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이사회 후보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의결권을 1인 또는 다수의 이사회 후보자에게 집중 또는 분산투표하여 다수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임 (상법 제382조의 2)
 - 집중투표제는 이사선임에 있어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주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선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 <표 II.1.9>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 수를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함

〈표 II.1.9〉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52	52	45	40	38	34
비율(%)	7.67%	7.59%	6.37%	5.80%	5.69%	4.79%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90	91	47	34	31	27
비율(%)	9.35%	8.95%	4.55%	3.56%	3.66%	3.03%

□ 〈표 II.1.10〉은 자산규모에 따른 집중투표제 도입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들의 집중투표제 도입률이 2009년에 크게 감소함

〈표 II.1.10〉 자산규모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9 (22.35%)	20 (19.05%)	21 (18.92%)	20 (17.86%)	18 (14.63%)	19 (13.29%)
2조원 미만	33 (5.56%)	32 (5.52%)	24 (4.03%)	20 (3.46%)	20 (3.67%)	15 (2.65%)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3 (8.18%)	16 (8.33%)	13 (5.83%)	14 (5.32%)	13 (4.47%)	10 (2.87%)
1천억원 미만	77 (9.58%)	75 (9.09%)	34 (4.20%)	20 (2.89%)	18 (3.24%)	17 (3.14%)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1>은 총수의 존재여부에 따른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률이 총수가 없는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II.1.11> 그룹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8 (4.12%)	10 (4.35%)	7 (3.93%)	7 (3.85%)	7 (3.63%)	9 (4.04%)
총수없는 기업	5 (25.00%)	6 (27.27%)	4 (22.22%)	4 (25.00%)	4 (23.53%)	4 (2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2>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업, 은행업이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 도입률이 낮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건설업,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1.12〉 업종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2.6)	1(2.6)	1(2.7)	1(3.0)	0(0.0)
금융업	3(20.0)	3(20.0)	4(26.7)	4(26.7)	4(26.7)	6(46.2)
기계업	2(4.7)	2(4.8)	1(2.4)	0(0.0)	0(0.0)	0(0.0)
보험업	0(0.0)	0(0.0)	0(0.0)	0(0.0)	0(0.0)	0(0.0)
비금속광물업	3(12.5)	3(13.0)	2(9.1)	2(9.1)	2(10.0)	1(4.8)
서비스업	5(14.7)	5(11.1)	6(8.1)	5(6.7)	6(8.0)	6(6.8)
섬유, 의복업	4(10.8)	4(11.4)	1(2.9)	1(3.1)	1(3.3)	1(3.4)
운수장비업	5(11.1)	5(10.9)	5(10.6)	5(10.9)	5(11.4)	4(8.2)
운수창고업	2(10.5)	2(9.5)	2(10.0)	2(10.5)	2(10.5)	0(0.0)
유통업	4(8.0)	4(7.5)	2(4.4)	2(4.5)	2(4.4)	1(1.9)
은행업	7(100.0)	7(100.0)	6(100.0)	5(83.3)	3(75.0)	2(66.7)
음식료품업	0(0.0)	0(0.0)	1(2.9)	1(2.9)	1(2.9)	2(5.7)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1(2.9)	1(2.8)	0(0.0)	0(0.0)	0(0.0)	0(0.0)
전기전자업	1(1.4)	1(1.5)	2(2.9)	2(3.0)	2(3.5)	2(3.3)
전기가스업	3(27.3)	3(27.3)	2(20.0)	2(20.0)	2(20.0)	3(25.0)
제조업	1(10.0)	1(11.1)	2(16.7)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2(8.0)	2(8.0)	2(8.3)	1(4.3)	0(0.0)	0(0.0)
증권업	0(0.0)	0(0.0)	0(0.0)	0(0.0)	0(0.0)	0(0.0)
철강및금속업	3(7.3)	3(7.1)	2(4.7)	2(4.5)	2(4.7)	1(2.2)
통신업	2(50.0)	2(50.0)	2(33.3)	2(66.7)	2(66.7)	2(66.7)
화학업	3(3.3)	3(3.4)	2(2.4)	2(2.4)	2(2.4)	2(2.3)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7(2.6)	7(2.4)	3(1.0)	1(0.4)	1(0.4)	0(0.0)
IT S/W & SVC업	6(4.1)	6(3.9)	4(2.8)	5(4.1)	1(1.0)	2(2.0)
건설업	3(15.8)	3(15.8)	3(14.3)	3(15.8)	3(15.8)	3(14.3)
금융업	5(23.8)	5(22.7)	4(19.0)	4(20.0)	4(21.1)	4(25.0)
기타서비스업	3(8.1)	3(7.9)	2(4.0)	2(3.8)	2(4.3)	1(2.0)
기타	1(25.0)	1(25.0)	1(16.7)	0(0.0)	2(33.3)	0(0.0)
오락, 문화업	1(11.1)	1(11.1)	1(8.3)	1(10.0)	0(0.0)	0(0.0)
운송업	1(33.3)	1(33.3)	1(25.0)	1(25.0)	1(25.0)	1(20.0)
유통업	10(20.0)	11(21.2)	6(10.0)	3(5.5)	3(8.3)	3(5.9)
제조업	53(13.7)	53(13.3)	22(5.6)	14(3.8)	14(4.3)	13(3.6)
통신방송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4) 서면 · 전자투표제

- ☐ 서면투표제(상법 제368조의3) 및 전자투표제(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여 불특정하게 분포하고 있는 주주들이 용이하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음
- ☐ <표 II.1.13>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도입률이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2008년 이후 도입 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II.1.13> 서면 ·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76	78	81	76	71	74
비율(%)	11.21%	11.39%	11.47%	11.01%	10.63%	10.42%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83	94	89	83	72	71
비율(%)	8.62%	9.24%	8.62%	8.68%	8.51%	7.98%

- ☐ <표 II.1.14>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도입비율이 높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의 도입률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서면 · 전자투표제 도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표 II.1.14〉 자산규모별 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24 (28.24%)	24 (22.86%)	29 (26.13%)	24 (21.43%)	25 (20.33%)	27 (18.88%)
2조원 미만	52 (8.77%)	54 (9.31%)	52 (8.74%)	52 (9.00%)	46 (8.44%)	47 (8.29%)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8 (5.03%)	12 (6.25%)	16 (7.17%)	21 (7.98%)	22 (7.56%)	27 (7.74%)
1천억원 미만	75 (9.33%)	82 (9.94%)	73 (9.01%)	62 (8.95%)	50 (9.01%)	44 (8.1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5〉에서 총수있는 기업의 도입률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총수 없는 기업의 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5〉 그룹별 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5 (7.73%)	18 (7.83%)	13 (7.30%)	14 (7.69%)	16 (8.29%)	17 (7.62%)
총수없는 기업	6 (30.00%)	6 (27.27%)	5 (27.78%)	3 (18.75%)	3 (17.65%)	3 (1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6>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금융업, 은행업, 통신업의 도입률이 가장 높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금융업, 운송업에 속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사도 이뤄지지 않음

<표 II.1.16> 업종별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2.6)	3(7.7)	3(8.1)	3(9.1)	3(9.1)
금융업	7(46.7)	7(46.7)	8(53.3)	8(53.3)	8(53.3)	10(76.9)
기계업	6(14.0)	5(11.9)	4(9.8)	4(10.3)	4(10.8)	4(10.0)
보험업	0(0.0)	0(0.0)	0(0.0)	0(0.0)	0(0.0)	0(0.0)
비금속광물업	2(8.3)	2(8.7)	1(4.5)	1(4.5)	1(5)	1(4.8)
서비스업	2(5.9)	2(4.4)	10(13.5)	11(14.7)	11(14.7)	11(12.5)
섬유, 의복업	2(5.4)	2(5.7)	3(8.8)	3(9.4)	2(6.7)	2(6.9)
운수장비업	3(6.7)	3(6.5)	3(6.4)	2(4.3)	2(4.5)	2(4.1)
운수창고업	3(15.8)	3(14.3)	2(10.0)	1(5.3)	2(10.5)	2(10.5)
유통업	10(20.0)	11(20.8)	7(15.6)	6(13.6)	5(11.1)	6(11.3)
은행업	6(85.7)	6(85.7)	5(83.3)	5(83.3)	3(75.0)	2(66.7)
음식료품업	4(11.1)	3(8.3)	2(5.7)	1(2.9)	1(2.9)	1(2.9)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2(5.7)	2(5.6)	2(5.3)	2(5.3)	2(5.3)	2(5.1)
전기전자업	6(8.6)	8(11.8)	8(11.6)	8(12.1)	7(12.3)	7(11.7)
전기가스업	1(9.1)	1(9.1)	1(10.0)	1(10.0)	1(10.0)	2(16.7)
제조업	0(0.0)	0(0.0)	1(8.3)	0(0.0)	0(0.0)	0(0.0)
종이목재업	2(8.0)	2(8.0)	1(4.2)	1(4.3)	1(4.2)	1(4.2)
증권업	4(20.0)	4(20.0)	5(23.8)	5(22.7)	5(22.7)	5(22.7)
철강및금속업	5(12.2)	5(11.9)	4(9.3)	4(9.1)	3(7.0)	3(6.7)
통신업	2(50.0)	2(50.0)	2(33.3)	1(33.3)	1(33.3)	1(33.3)
화학업	8(8.8)	9(10.3)	9(10.7)	9(10.7)	9(10.7)	9(10.2)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21(7.9)	28(9.5)	26(8.7)	25(9.0)	21(8.0)	16(6.3)
IT S/W & SVC업	12(8.2)	14(9.2)	12(8.4)	11(9.0)	7(6.7)	8(8.0)
건설업	1(5.3)	1(5.3)	1(4.8)	1(5.3)	1(5.3)	1(4.8)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1(2.7)	1(2.6)	2(4)	3(5.8)	3(6.5)	4(8.2)
기타	0(0.0)	0(0.0)	0(0.0)	0(0.0)	1(16.7)	1(25.0)
오락,문화업	1(11.1)	1(11.1)	1(8.3)	1(10.0)	1(14.3)	1(1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8(16.0)	8(15.4)	9(15.0)	9(16.4)	5(13.9)	6(11.8)
제조업	36(9.3)	38(9.5)	35(8.8)	30(8.1)	30(9.2)	31(8.6)
통신방송서비스업	3(13.6)	3(13.6)	3(14.3)	3(14.3)	3(17.6)	3(15.0)

(5)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합병특별결의요건 가중 규정, 발행 즉시 전환청구가 가능한 전환우선주 발행 규정, 황금낙하산 등과 같은 경영권보호 규정은 경영권 안정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표 II.1.17>은 각 시장의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은 2007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2011년까지 도입률이 크게 증가한 후 2012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7>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7	18	24	25	23	31
비율	2.51%	2.63%	3.40%	3.62%	3.44%	4.3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64	105	140	146	138	131
비율	6.65%	10.32%	13.55%	15.27%	16.31%	14.72%

□ <표 II.1.18>은 자산규모에 따른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2007년 이후 크게 변화가 없으나, 2조원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증가함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도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8> 자산규모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3 (3.53%)	4 (3.81%)	4 (3.60%)	3 (2.68%)	3 (2.44%)	4 (2.80%)
2조원 미만	14 (2.36%)	14 (2.41%)	20 (3.36%)	22 (3.81%)	20 (3.67%)	27 (4.7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5 (3.14%)	11 (5.73%)	20 (8.97%)	31 (11.79%)	38 (13.06%)	44 (12.61%)
1천억원 미만	59 (7.34%)	94 (11.39%)	120 (14.81%)	115 (16.59%)	100 (18.02%)	87 (16.08%)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9>에서 나타나듯이, 총수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률은 낮음

<표 II.1.19> 그룹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6 (3.09%)	5 (2.17%)	3 (1.69%)	3 (1.65%)	5 (2.59%)	6 (2.69%)
총수없는 기업	2 (10.00%)	2 (9.09%)	2 (11.11%)	1 (6.25%)	1 (5.88%)	1 (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20>은 업종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통업의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IT H/W업,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규정 도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20〉 업종별 임원해임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1(6.7)	1(6.7)	0(0.0)	0(0.0)	0(0.0)	0(0.0)
기계업	3(7.0)	3(7.1)	1(2.4)	1(2.6)	1(2.7)	2(5.0)
보험업	0(0.0)	0(0.0)	0(0.0)	0(0.0)	1(9.1)	1(7.7)
비금속광물업	0(0.0)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1(2.9)	0(0.0)	1(1.4)	1(1.3)	3(4.0)	5(5.7)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1(3.1)	1(3.3)	1(3.4)
운수장비업	1(2.2)	1(2.2)	1(2.1)	1(2.2)	0(0.0)	0(0.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4(8.0)	6(11.3)	7(15.6)	7(15.9)	7(15.6)	11(20.8)
은행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정밀	1(16.7)	0(0.0)	0(0.0)	0(0.0)	1(25.0)	0(0.0)
의약품업	1(2.9)	1(2.8)	1(2.6)	1(2.6)	2(5.3)	2(5.1)
전기전자업	4(5.7)	5(7.4)	10(14.5)	9(13.6)	5(8.8)	5(8.3)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0)	0(0.0)	1(8.3)
제조업	1(10.0)	1(11.1)	2(16.7)	1(9.1)	0(0.0)	2(18.2)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0(0.0)	0(0.0)	1(4.8)	1(4.5)	1(4.5)	0(0.0)
철강및금속업	0(0.0)	0(0.0)	0(0.0)	1(2.3)	1(2.3)	1(2.2)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0(0.0)	0(0.0)	0(0.0)	1(1.2)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24(9.0)	37(12.5)	43(14.4)	42(15.1)	52(19.8)	43(17.0)
IT S/W & SVC업	17(11.6)	30(19.6)	35(24.5)	33(27.0)	23(22.1)	18(18.0)
건설업	0(0.0)	0(0.0)	0(0.0)	1(5.3)	1(5.3)	2(9.5)
금융업	0(0.0)	1(4.5)	2(9.5)	2(10.0)	4(21.1)	2(12.5)
기타서비스업	1(2.7)	4(10.5)	5(10.0)	5(9.6)	5(10.9)	6(12.2)
기타	0(0.0)	0(0.0)	1(16.7)	1(20.0)	0(0.0)	1(25.0)
오락, 문화업	2(22.2)	2(22.2)	1(8.3)	1(10.0)	1(14.3)	1(10.0)
운송업	1(33.3)	1(33.3)	1(25.0)	1(25.0)	1(25.0)	1(20.0)
유통업	2(4.0)	5(9.6)	8(13.3)	9(16.4)	6(16.7)	9(17.6)
제조업	14(3.6)	22(5.5)	42(10.6)	49(13.3)	44(13.5)	46(12.7)
통신방송서비스업	3(13.6)	3(13.6)	2(9.5)	2(9.5)	1(5.9)	2(10.0)

(6)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 ☐ <표 II.1.21>의 a와 b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들의 합병특별결의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2007년 이후 규정 도입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1.21>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6	7	8	8	8	10
비율	0.88%	1.02%	1.13%	1.16%	1.20%	1.4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6	21	23	22	21	22
비율	1.66%	2.06%	2.23%	2.30%	2.48%	2.47%

- ☐ <표 II.1.22>는 자산규모에 따른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코스닥시장의 경우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200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표 II.1.22〉 자산규모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 (1.18%)	1 (0.95%)	1 (0.9%)	1 (0.89%)	1 (0.81%)	1 (0.70%)
2조원 미만	5 (0.84%)	6 (1.03%)	7 (1.18%)	7 (1.21%)	7 (1.28%)	9 (1.59%)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4 (2.52%)	6 (3.13%)	8 (3.59%)	9 (3.42%)	10 (3.44%)	11 (3.15%)
1천억원 미만	12 (1.49%)	15 (1.82%)	15 (1.85%)	13 (1.88%)	11 (1.98%)	11 (2.0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23〉에서 나타나듯이, 총수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규정 도입률은 낮게 나타남

〈표 II.1.23〉 그룹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0 (0.00%)	0 (0.00%)	0 (0.00%)	0 (0.00%)	1 (0.52%)	3 (1.35%)
총수없는 기업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24>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에서 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IT H/W업에 다수 속해 있음

<표 II.1.24> 업종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계업	0(0.0)	0(0.0)	0(0.0)	0(0.0)	0(0.0)	0(0.0)
보험업	1(9.1)	1(9.1)	1(9.1)	1(10)	1(9.1)	1(7.7)
비금속광물업	0(0.0)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1(2.9)	1(2.2)	2(2.7)	2(2.7)	3(4.0)	3(3.4)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수장비업	2(4.4)	2(4.3)	2(4.3)	2(4.3)	1(2.3)	1(2.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1(2.2)	1(2.3)	1(2.2)	2(3.8)
은행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1(2.9)	1(2.8)	1(2.6)	1(2.6)	1(2.6)	1(2.6)
전기전자업	0(0.0)	1(1.5)	0(0.0)	0(0.0)	0(0.0)	0(0.0)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0)	0(0.0)	1(8.3)
제조업	1(10.0)	1(11.1)	1(8.3)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0(0.0)	0(0.0)	0(0.0)	0(0.0)	0(0.0)	0(0.0)
철강및금속업	0(0.0)	0(0.0)	0(0.0)	0(0.0)	0(0.0)	0(0.0)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5(1.9)	5(1.7)	8(2.7)	9(3.2)	9(3.4)	10(4.0)
IT S/W & SVC업	1(0.7)	4(2.6)	5(3.5)	3(2.5)	3(2.9)	4(4.0)
건설업	1(5.3)	1(5.3)	1(4.8)	1(5.3)	1(5.3)	1(4.8)
금융업	0(0.0)	1(4.5)	1(4.8)	1(5.0)	1(5.3)	1(6.3)
기타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1(33.3)	1(33.3)	1(25.0)	1(25.0)	1(25.0)	1(20.0)
유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7(1.8)	8(2.0)	6(1.5)	6(1.6)	5(1.5)	4(1.1)
통신방송서비스업	1(4.5)	1(4.5)	1(4.8)	1(4.8)	1(5.9)	1(5.0)

(7)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 ☐ 발행 즉시 또는 익일에 보통주로 전환청구가 가능한 전환우선주 규정은 경영권방어장치로 악용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고, 많은 양의 주식발행으로 주식희석화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 ☐ <표 II.1.25>는 각 시장의 발행 즉시 전환청구가 가능한 전환우선주의 발행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2007년 이후 규정 도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II.1.25>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4	16	22	23	28	39
비율(%)	2.06%	2.34%	3.12%	3.33%	4.19%	5.49%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26	42	50	55	65	71
비율(%)	2.70%	4.13%	4.84%	5.75%	7.68%	7.98%

□ <표 II.1.26> a에서 나타나듯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규정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규정 도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에서도 도입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26> 자산규모별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7 (8.24%)	7 (6.67%)	12 (10.81%)	12 (10.71%)	14 (11.38%)	17 (11.89%)
2조원 미만	7 (1.18%)	9 (1.55%)	10 (1.68%)	11 (1.90%)	14 (2.57%)	22 (3.88%)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6 (3.77%)	8 (4.17%)	14 (6.28%)	19 (7.22%)	24 (8.25%)	28 (8.02%)
1천억원 미만	20 (2.49%)	34 (4.12%)	36 (4.44%)	36 (5.19%)	41 (7.39%)	43 (7.9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27>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의 존재여부에 따라 전환우선주 발행 규정 도입여부를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도입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총수있는 기업의 도입률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 II.1.27〉 그룹별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8 (4.12%)	9 (3.91%)	11 (6.18%)	14 (7.69%)	16 (8.29%)	20 (8.97%)
총수없는 기업	1 (5.00%)	1 (4.55%)	3 (16.67%)	3 (18.75%)	2 (11.76%)	2 (1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28〉에서 각 시장의 업종별 가중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계업과 증권업의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조업과 IT H/W업에 속한 기업의 규정 도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28〉 업종별 합병특별결의 요건 가중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5.3)	3(7.9)	3(7.7)	3(8.1)	3(9.1)	2(6.1)
금융업	1(6.7)	0(0.0)	0(0.0)	0(0.0)	0(0.0)	0(0.0)
기계업	2(4.7)	2(4.8)	3(7.3)	3(7.7)	3(8.1)	5(12.5)
보험업	0(0.0)	0(0.0)	0(0.0)	0(0.0)	1(9.1)	1(7.7)
비금속광물업	0(0.0)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0(0.0)	0(0.0)	3(4.1)	4(5.3)	5(6.7)	6(6.8)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수장비업	1(2.2)	1(2.2)	1(2.1)	1(2.2)	1(2.3)	1(2.0)
운수창고업	0(0.0)	0(0.0)	1(5.0)	1(5.3)	1(5.3)	1(5.3)
유통업	1(2.0)	2(3.8)	2(4.4)	2(4.5)	2(4.4)	3(5.7)
은행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업	1(2.8)	1(2.8)	0(0.0)	0(0.0)	0(0.0)	0(0.0)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0(0.0)	0(0.0)	0(0.0)	1(2.6)	3(7.7)
전기전자업	3(4.3)	3(4.4)	3(4.3)	3(4.5)	3(5.3)	6(10)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1(8.3)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0(0.0)	1(5.0)	3(14.3)	3(13.6)	4(18.2)	4(18.2)
철강및금속업	0(0.0)	0(0.0)	0(0.0)	0(0.0)	0(0.0)	0(0.0)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3(3.3)	3(3.4)	2(2.4)	2(2.4)	3(3.6)	6(6.8)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1(4.1)	17(5.7)	20(6.7)	22(7.9)	28(10.6)	31(12.3)
IT S/W & SVC업	3(2.1)	3(2.0)	3(2.1)	4(3.3)	4(3.8)	6(6.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1(2.7)	2(5.3)	4(8.0)	5(9.6)	5(10.9)	5(10.2)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1(2.0)	2(3.8)	2(3.3)	2(3.6)	2(5.6)	3(5.9)
제조업	9(2.3)	17(4.3)	20(5.1)	21(5.7)	25(7.7)	24(6.6)
통신방송서비스업	1(4.5)	1(4.5)	1(4.8)	1(4.8)	1(5.9)	2(10.0)

(8) 황금낙하산 규정

- ☐ 황금낙하산 규정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 임원 해임에 대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경영권방어장치로 활용됨
 - 이는 무능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하여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 ☐ <표 II.1.29>에 나타나듯이 유가증권시장의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률은 2010년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률이 2010년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1.29>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14	16	17	26	21	20
비율(%)	2.06%	2.34%	2.41%	3.77%	3.14%	2.82%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입기업 수	69	100	114	133	116	124
비율(%)	7.17%	9.83%	11.04%	13.91%	13.71%	13.93%

- ☐ <표 II.1.30>은 자산규모에 따른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중 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규정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표 II.1.30〉 자산규모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조원 미만	14 (2.36%)	16 (2.76%)	17 (2.86%)	26 (4.50%)	21 (3.85%)	20 (3.53%)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4 (2.52%)	7 (3.65%)	10 (4.48%)	25 (9.51%)	29 (9.97%)	38 (10.89%)
1천억원 미만	65 (8.08%)	93 (11.27%)	104 (12.84%)	108 (15.58%)	87 (15.68%)	86 (15.9%)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31〉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총수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이 거의 없음

〈표 II.1.31〉 그룹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0 (0.00%)	1 (0.43%)	1 (0.56%)	1 (0.55%)	0 (0.00%)	0 (0.00%)
총수없는 기업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32>는 업종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비스업, 철강및금속업에 속한 기업이 2010년에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건설업, 통신방송업의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1.32> 업종별 황금낙하산 규정 도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2.6)	0(0)	1(2.7)	1(3.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계업	3(7.0)	2(4.8)	1(2.4)	1(2.6)	0(0.0)	1(2.5)
보험업	0(0.0)	0(0.0)	0(0.0)	0(0.0)	0(0.0)	0(0.0)
비금속광물업	2(8.3)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0(0.0)	0(0.0)	0(0.0)	1(1.3)	2(2.7)	1(1.1)
섬유,의복업	1(2.7)	1(2.9)	1(2.9)	2(6.3)	1(3.3)	1(3.4)
운수장비업	0(0.0)	1(2.2)	1(2.1)	1(2.2)	1(2.3)	1(2.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2(4.0)	2(3.8)	2(4.4)	2(4.5)	2(4.4)	4(7.5)
은행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업	0(0.0)	1(2.8)	1(2.9)	1(2.9)	1(2.9)	1(2.9)
의료정밀	0(0.0)	0(0.0)	1(25.0)	2(50.0)	2(50.0)	1(25.0)
의약품업	1(2.9)	1(2.8)	2(5.3)	3(7.9)	3(7.9)	3(7.7)
전기전자업	3(4.3)	6(8.8)	6(8.7)	6(9.1)	4(7.0)	3(5.0)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1(10.0)	1(11.1)	1(8.3)	1(9.1)	0(0.0)	0(0.0)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0(0.0)	0(0.0)	0(0.0)	0(0.0)	0(0.0)	0(0.0)
철강및금속업	0(0.0)	0(0.0)	0(0.0)	3(6.8)	3(7.0)	3(6.7)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0(0.0)	0(0.0)	1(1.2)	1(1.2)	0(0.0)	0(0.0)
기타	0(0.0)	0(0.0)	0(0.0)	1(16.7)	1(16.7)	1(16.7)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24(9.0)	31(10.5)	33(11.0)	34(12.2)	35(13.3)	34(13.4)
IT S/W & SVC업	18(12.3)	29(19.0)	23(16.1)	24(19.7)	18(17.3)	14(14.0)
건설업	1(5.3)	1(5.3)	1(4.8)	1(5.3)	1(5.3)	0(0.0)
금융업	1(4.8)	2(9.1)	2(9.5)	2(10.0)	2(10.5)	2(12.5)
기타서비스업	2(5.4)	4(10.5)	4(8.0)	5(9.6)	8(17.4)	5(10.2)
기타	0(0.0)	0(0.0)	1(16.7)	1(20.0)	0(0.0)	0(0.0)
오락,문화업	2(22.2)	3(33.3)	2(16.7)	0(0.0)	0(0.0)	0(0.0)
운송업	1(33.3)	1(33.3)	1(25.0)	1(25.0)	1(25.0)	1(20.0)
유통업	2(4.0)	6(11.5)	8(13.3)	15(27.3)	8(22.2)	8(15.7)
제조업	17(4.4)	23(5.8)	38(9.6)	43(11.7)	34(10.5)	36(10.0)
통신방송서비스업	0(0.0)	0(0.0)	3(14.3)	1(4.8)	0(0.0)	0(0.0)

(9) 소수주주권 행사

- ☐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형식화 및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 <표 II.1.33>에서 나타나듯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수주주권 행사 비율은 1%대에 머물러 소수주주권의 활발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33>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0	7	4	9	10	14
비율(%)	1.47%	1.02%	0.57%	1.30%	1.50%	1.9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	8	12	11	9	4
비율(%)	0.21%	0.79%	1.16%	1.15%	1.06%	0.45%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들에 대하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례가 더 많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하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례가 더 많음

〈표 II.1.34〉 자산규모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3 (3.53%)	2 (1.90%)	1 (0.90%)	2 (1.79%)	6 (4.88%)	4 (2.80%)
2조원 미만	7 (1.18%)	5 (0.86%)	3 (0.50%)	7 (1.21%)	4 (0.73%)	10 (1.7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 (0.00%)	2 (1.04%)	4 (1.79%)	6 (2.28%)	5 (1.72%)	0 (0.00%)
1천억원 미만	2 (0.25%)	6 (0.73%)	8 (0.99%)	5 (0.72%)	4 (0.72%)	4 (0.74%)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35>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을 총수의 존재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소수주주권 행사현황을 나타냄

- 소수주주들은 총수있는 기업에 대하여 더 많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수없는 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로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음

〈표 II.1.35〉 그룹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 (0.52%)	3 (1.30%)	0 (0.00%)	3 (1.65%)	9 (4.66%)	4 (1.79%)
총수없는 기업	2 (10.00%)	1 (4.55%)	0 (0.00%)	0 (0.00%)	0 (0.00%)	0 (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36〉은 업종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기업은 화학업에 많이 속해 있음

○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제조업에 주로 속해있음

〈표 II.1.36〉 업종별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0.0)	1(2.6)	0(0)	1(2.7)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1(6.7)	0(0.0)
기계업	1(2.3)	0(0.0)	0(0.0)	0(0.0)	0(0.0)	0(0.0)
보험업	0(0.0)	0(0.0)	0(0.0)	0(0.0)	0(0.0)	0(0.0)
비금속광물업	1(4.2)	0(0.0)	0(0.0)	1(4.5)	0(0.0)	0(0.0)
서비스업	2(5.9)	0(0.0)	1(1.4)	0(0.0)	0(0.0)	1(1.1)
섬유, 의복업	1(2.7)	0(0.0)	0(0.0)	1(3.1)	0(0.0)	1(3.4)
운수장비업	0(0.0)	0(0.0)	1(2.1)	1(2.2)	1(2.3)	0(0.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0(0.0)	0(0.0)	1(2.2)	1(1.9)
은행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1(2.9)	1(2.9)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1(2.8)	0(0.0)	1(2.6)	0(0.0)	0(0.0)
전기전자업	1(1.4)	1(1.5)	0(0.0)	0(0.0)	1(1.8)	0(0.0)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0)	0(0.0)	1(8.3)
제조업	1(10)	1(11.1)	0(0.0)	0(0.0)	0(0.0)	2(18.2)
종이목재업	0(0.0)	0(0.0)	0(0.0)	1(4.3)	0(0.0)	1(4.2)
증권업	0(0.0)	2(10)	0(0.0)	1(4.5)	1(4.5)	0(0.0)
철강및금속업	1(2.4)	0(0.0)	0(0.0)	0(0.0)	0(0.0)	1(2.2)
통신업	1(25)	1(25)	0(0.0)	0(0.0)	0(0.0)	0(0.0)
화학업	1(1.1)	0(0.0)	1(1.2)	2(2.4)	4(4.8)	4(4.5)
기타	0(0.0)	0(0.0)	1(16.7)	0(0.0)	0(0.0)	1(16.7)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0.4)	1(0.3)	5(1.7)	2(0.7)	1(0.4)	0(0.0)
IT S/W & SVC업	0(0.0)	3(2.0)	4(2.8)	1(0.8)	0(0.0)	0(0.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2(10.5)	0(0.0)
기타서비스업	0(0.0)	0(0.0)	0(0.0)	1(1.9)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1(1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1(1.9)	0(0.0)	2(3.6)	0(0.0)	0(0.0)
제조업	1(0.3)	3(0.8)	3(0.8)	4(1.1)	5(1.5)	3(0.8)
통신방송서비스업	0(0.0)	0(0.0)	0(0.0)	1(4.8)	1(5.9)	0(0.0)

2) 소유구조

- ☐ 계열회사의 지분보유는 의결권과 현금흐름권 간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계열회사 간 부당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보호에 부정적임
- 등기임원, 사외이사의 지분보유는 주주와 이해를 일치시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1)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

- ☐ 개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책임경영의 유인이 커 다른 주주와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 ☐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은 문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 ☐ <표 II.1.37>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개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코스닥시장의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37>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21.34	21.37	21.84	22.35	23.08	22.47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25.75	25.14	24.96	25.19	26.75	26.81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표 II.1.38>은 자산규모에 따른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과 미만 기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I.1.38> 자산규모별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0.82	11.43	11.04	10.71	9.34	10.40
2조원 미만	22.77	23.05	23.63	24.49	25.96	25.18
2조원 이상 기업 수	77	93	90	96	102	114
2조원 미만 기업 수	569	552	543	525	486	50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23.86	24.99	25.22	25.49	25.42	26.95
1천억원 미만	26.12	25.17	24.89	25.08	27.42	26.7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4	189	213	248	278	324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784	816	800	681	551	528

□ <표 II.1.39>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의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수없는 기업의 경우 소유가 분산되어 있어 개인 최대주주 지분이 없음

○ 총수있는 기업의 지분율은 2007년부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II.1.39〉 그룹별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3.72	14.30	14.46	13.92	13.50	14.28
총수없는 기업	0.00	0.00	0.00	0.00	0.00	0.00
총수있는 기업 수	178	202	132	140	141	167
총수없는 기업 수	19	22	18	15	17	20

□ 〈표 II.1.40〉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료정밀업의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종이목재업의 지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통신방송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40〉 업종별 개인 최대주주 및 개인 특수관계인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4.05	13.94	14.15	14.39	12.13	12.38
금융업	7.86	9.11	8.02	8.60	7.03	3.18
기계업	22.04	20.14	22.11	22.31	20.10	18.55
보험업	17.23	14.54	13.52	11.22	11.21	12.88
비금속광물업	22.99	22.70	26.95	28.88	30.55	30.40
서비스업	25.64	29.09	30.95	32.87	33.76	32.25
섬유, 의복업	27.67	25.45	22.95	23.55	28.56	30.34
운수장비업	20.27	23.61	23.95	22.07	25.30	21.03
운수창고업	11.48	14.70	14.11	16.61	14.87	15.33
유통업	20.44	20.71	19.61	20.04	21.34	19.15
은행업	10.77	0.00	0.00	0.00	0.00	0.03
음식료품업	23.22	21.61	23.25	26.19	22.16	19.07
의료정밀	12.50	18.47	21.70	20.82	18.32	33.78
의약품업	20.15	22.45	24.30	22.36	26.41	23.48
전기전자업	19.29	19.55	19.47	19.24	19.40	20.97
전기가스업	18.42	23.01	17.32	15.47	15.19	15.16
제조업	25.27	20.44	24.74	24.85	28.09	24.27
종이목재업	31.12	28.25	26.03	24.01	22.79	23.88
증권업	10.11	10.81	8.19	5.99	7.73	9.20
철강및금속업	27.69	25.43	24.97	25.45	26.54	25.54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24.74	24.79	23.99	26.32	27.28	25.78
기타	31.25	23.62	27.59	23.61	23.40	27.56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23.32	23.25	23.24	23.35	23.64	23.65
IT S/W & SVC업	19.63	17.96	17.03	17.90	17.84	17.92
건설업	24.55	27.53	22.06	24.67	23.40	24.08
금융업	10.79	9.56	9.83	12.87	9.06	10.51
기타서비스업	24.29	21.74	24.49	24.87	23.06	22.92
기타업	34.16	31.95	23.73	22.15	37.25	26.83
오락, 문화업	11.14	11.52	7.74	9.36	17.25	18.98
운송업	13.73	18.82	30.31	29.94	29.66	21.70
유통업	25.62	24.89	24.71	21.61	22.23	26.79
제조업	32.23	31.59	31.27	30.83	34.86	33.44
통신방송서비스업	5.60	7.97	9.45	16.64	8.98	17.58

(2) 계열회사 지분율 합계

- ☐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를 통한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기업지배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사적이윤추구 유인이 커져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계열회사 지분율은 문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 ☐ <표 II.1.41>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계열회사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계열회사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41> 계열회사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2.90	14.52	14.89	15.95	16.81	16.57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5.57	7.76	8.53	9.00	9.49	9.45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 <표 II.1.42>는 자산규모에 따른 계열회사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계열회사 지분율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두 비교군 모두 지분율이 증가함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계열회사 지분율이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표 II.1.42〉 자산규모별 계열회사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4.06	13.12	15.37	18.28	21.11	19.05
2조원 미만	12.74	14.75	14.81	15.52	15.91	16.02
2조원 이상 기업 수	77	93	90	96	102	114
2조원 미만 기업 수	569	552	543	525	486	50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0.89	14.18	14.38	13.93	13.08	11.57
1천억원 미만	4.52	6.29	6.97	7.20	7.67	8.1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4	189	213	248	278	324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784	816	800	681	551	528

□ 〈표 II.1.43〉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의 계열회사 지분율을 분류해서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계열회사 지분율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두 비교군 모두 계열회사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 II.1.43〉 그룹별 계열회사 지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23.08	24.94	25.55	27.49	29.17	27.70
총수없는 기업	30.54	27.36	27.41	29.76	32.27	35.25
총수있는 기업 수	178	202	132	140	141	167
총수없는 기업 수	19	22	18	15	17	20

□ 〈표 II.1.44〉에서 나타나듯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과 금융업의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고 코스닥시장에서는 기타로 분류된 기업의 지분율이 2012년에 크게 증가함

〈표 II.1.44〉 업종별 계열회사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4.92	20.78	19.72	16.87	24.52	25.47
금융업	18.62	26.42	18.99	28.60	31.04	25.08
기계업	16.15	15.15	15.00	15.77	24.16	22.47
보험업	20.62	6.61	13.40	23.26	24.66	24.30
비금속광물업	17.54	20.15	18.26	15.93	16.76	13.34
서비스업	11.44	14.71	10.71	12.86	13.96	12.97
섬유, 의복업	6.94	14.64	19.04	15.91	11.94	11.32
운수장비업	14.36	12.80	15.80	15.70	13.44	15.07
운수창고업	13.67	14.69	20.52	19.03	16.55	19.25
유통업	14.98	16.59	19.35	18.68	16.85	19.96
은행업	0.00	0.00	10.20	26.71	16.09	4.13
음식료품업	9.72	10.05	15.24	20.96	24.05	22.68
의료정밀	8.64	12.76	5.01	4.60	3.06	3.41
의약품업	9.27	10.07	5.65	9.67	4.74	9.02
전기전자업	10.55	12.72	11.30	11.05	13.76	11.92
전기가스업	19.87	9.76	15.63	18.40	17.01	14.24
제조업	1.36	4.00	1.95	3.63	3.82	7.06
종이목재업	13.48	16.25	19.02	22.94	23.62	23.41
증권업	18.00	18.34	15.89	25.38	26.22	23.80
철강및금속업	10.10	17.38	14.80	15.80	17.41	19.13
통신업	25.09	26.50	31.71	0.00	0.00	0.00
화학업	13.63	13.07	16.00	14.04	13.65	13.88
기타	16.24	13.11	17.36	24.42	25.71	19.67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4.49	5.52	6.54	7.18	6.62	7.39
IT S/W & SVC업	7.78	8.88	11.57	12.52	14.85	15.05
건설업	11.47	16.28	17.38	19.53	20.98	18.85
금융업	14.03	25.32	24.12	20.51	27.02	24.52
기타서비스업	5.80	8.99	6.62	8.57	7.45	8.27
기타	3.49	18.38	24.54	14.21	17.29	42.09
오락, 문화업	3.62	10.65	21.54	26.19	17.15	16.56
운송업	1.51	19.05	12.87	12.85	12.83	10.01
유통업	7.60	7.30	5.25	7.53	8.31	8.51
제조업	4.40	6.30	6.88	7.71	7.72	7.54
통신방송서비스업	8.30	27.18	27.94	11.51	30.24	19.77

(3) 5% 이상 주주 지분율 합계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5% 이상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감시 유인이 증가하고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됨
- ☐ <표 II.1.45>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 이상 주주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5% 이상 주주 지분율은 200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표 II.1.45> 5% 이상 주주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7.77	7.88	7.84	7.61	7.55	6.52
해당기업 수	678	685	706	690	668	71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5.27	4.78	6.64	4.49	5.89	4.30
해당기업 수	963	1017	1033	956	846	890

- ☐ <표 II.1.46>은 각 시장의 자산규모별 5% 이상 주주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5% 이상 주주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조원 미만 기업의 지분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5% 이상 주주 지분율이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46〉 자산규모별 5% 이상 주주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9.41	10.46	10.31	10.42	9.30	8.11
2조원 미만	7.54	7.41	7.37	7.07	7.15	6.12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5.93	6.34	7.41	5.36	6.63	5.38
1천억원 미만	5.14	4.42	6.43	4.16	5.50	3.61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 대기기업집단 소속기업 중 총수없는 기업의 5% 이상 주주 지분율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높은 것을 〈표 II.1.47〉을 통해 알 수 있음

〈표 II.1.47〉 그룹별 5% 이상 주주 지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6.93	7.43	8.92	7.81	7.69	6.54
총수없는 기업	11.59	10.83	9.78	13.74	11.67	9.18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 〈표 II.1.48〉은 각 시장의 업종별 5% 이상 주주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은행업, 보험업, 통신업의 5% 이상 주주 지분율이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통신방송서비스업의 5% 이상 주주 지분율이 증가하고, 건설업의 지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48〉 업종별 5% 이상 주주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1.02	8.10	7.89	8.31	7.50	6.60
금융업	10.15	9.03	9.51	8.37	5.65	5.18
기계업	6.10	4.78	4.01	6.56	5.18	6.64
보험업	2.87	6.03	5.27	12.41	9.01	10.79
비금속광물업	8.20	7.86	6.94	6.74	5.34	5.50
서비스업	7.44	7.32	7.70	6.09	6.41	5.39
섬유, 의복업	9.55	10.04	7.44	8.24	11.13	5.93
운수장비업	7.24	6.90	8.09	7.83	6.68	6.47
운수창고업	18.01	16.49	12.51	11.66	14.01	6.89
유통업	7.10	7.25	8.87	5.58	7.04	5.39
은행업	11.40	12.19	8.39	7.89	11.10	13.07
음식료품업	9.03	12.03	7.93	8.49	6.78	7.91
의료정밀	5.73	2.60	1.81	0.00	1.32	3.08
의약품업	7.59	8.35	8.77	6.69	7.64	7.40
전기전자업	5.78	5.80	5.12	6.70	6.03	5.17
전기가스업	9.19	10.02	13.36	20.50	24.79	9.72
제조업	11.39	9.95	7.76	6.72	8.51	6.45
종이목재업	7.22	7.55	10.31	10.04	7.29	6.48
증권업	3.45	4.53	9.45	9.74	4.17	6.16
철강및금속업	6.70	5.82	5.45	4.54	3.99	5.31
통신업	19.70	15.33	20.41	8.46	8.26	10.47
화학업	7.31	8.96	8.70	7.62	9.95	7.56
기타	1.81	3.15	11.70	6.80	5.57	7.64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4.88	4.60	6.44	4.45	5.75	4.47
IT S/W & SVC업	4.41	4.74	6.39	2.79	5.32	4.06
건설업	11.48	7.52	8.74	8.27	4.93	4.37
금융업	5.29	8.43	8.68	7.27	7.66	8.78
기타서비스업	5.14	6.04	8.96	6.74	10.18	6.10
기타	4.79	3.68	2.33	1.28	10.95	1.46
오락, 문화업	7.81	6.60	7.98	6.31	12.65	5.16
운송업	13.88	5.60	2.80	2.46	0.00	0.00
유통업	4.78	4.51	5.49	5.06	6.60	5.25
제조업	5.14	4.28	6.49	4.15	5.28	3.35
통신방송서비스업	9.64	7.79	10.40	8.48	7.92	14.43

(4) 등기임원 지분율 합계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등기임원의 지분이 많을수록 등기임원의 이익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른 주주 이익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을 할 유인을 제공함
- ☐ <표 II.1.49>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시장의 등기임원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두 시장 모두 지분율에 큰 변화가 없음

<표 II.1.49>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0.88	1.01	1.03	0.94	0.95	0.97
해당기업 수	678	685	706	690	668	71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2.62	2.82	2.19	2.47	2.61	2.54
해당기업 수	963	1017	1033	956	846	890

- ☐ <표 II.1.50>은 자산규모별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등기임원 지분율이 2조원 이상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도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의 등기임원 지분율이 높으나 1천억원 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지분율이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표 II.1.50〉 자산규모별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0.08	0.18	0.15	0.38	0.34	0.23
2조원 미만	1.02	1.11	1.22	1.09	1.05	1.24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41	2.58	1.41	1.77	2.07	2.14
1천억원 미만	2.89	2.90	2.44	2.77	2.92	2.9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51〉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집단에 속한 총수없는 기업의 등기임원 지분율은 2012년에 크게 감소함

〈표 II.1.51〉 그룹별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0.51	0.68	0.43	0.63	0.57	0.51
총수없는 기업	0.04	0.33	0.87	0.72	0.86	0.0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52〉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계업과 제조업, 코스닥시장에서는 IT H/W업, IT S/W & SVC업에 속한 기업의 등기임원 지분율이 꾸준히 높게 나타남

〈표 II.1.52〉 업종별 등기임원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57	0.52	0.62	0.56	0.77	0.44
금융업	0.03	0.13	0.10	0.10	0.18	0.13
기계업	0.66	0.60	1.16	0.52	1.49	1.75
보험업	0.45	0.37	0.17	0.36	0.65	0.55
비금속광물업	0.41	1.62	0.92	0.04	0.33	0.06
서비스업	1.57	1.19	0.99	1.30	0.82	1.07
섬유, 의복업	0.65	0.59	1.29	1.11	0.72	0.90
운수장비업	1.01	1.13	0.79	1.03	0.68	0.22
운수창고업	0.39	1.11	0.71	1.90	1.26	0.77
유통업	1.10	1.37	1.08	0.62	0.75	1.34
은행업	0.14	0.11	0.88	0.12	0.00	0.03
음식료품업	1.39	1.05	1.60	0.49	1.52	0.56
의료정밀	0.10	0.25	0.30	0.15	0.27	0.44
의약품업	2.10	1.57	1.25	1.23	0.91	1.26
전기전자업	1.25	1.75	1.28	1.56	1.31	1.31
전기가스업	1.84	1.40	2.58	4.22	1.37	1.23
제조업	2.68	1.28	1.43	0.78	2.14	1.55
종이목재업	0.35	0.07	0.36	0.67	0.66	0.86
증권업	0.50	0.30	0.20	0.06	0.15	0.12
철강및금속업	0.37	0.65	1.11	0.35	0.99	1.29
통신업	0.00	0.01	0.00	0.00	0.01	0.01
화학업	0.79	0.90	1.78	1.65	1.17	2.07
기타	0.02	1.02	0.02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3.21	2.93	2.80	3.25	3.04	3.04
IT S/W & SVC업	3.63	3.25	2.73	3.14	3.40	3.93
건설업	1.61	1.70	1.76	1.37	1.68	0.79
금융업	2.09	5.72	0.33	2.08	2.68	0.60
기타서비스업	1.68	2.71	1.27	2.19	2.07	2.10
기타	0.00	0.15	0.58	0.71	4.47	0.57
오락, 문화업	1.58	1.13	0.21	0.13	1.97	2.73
운송업	0.81	1.93	0.50	1.08	1.09	1.22
유통업	2.04	2.91	3.91	2.77	3.18	2.59
제조업	2.28	2.66	1.78	1.95	2.19	2.33
통신방송서비스업	1.02	1.14	0.28	1.91	1.22	2.21

(5) 사외이사 지분을 합계

- ☐ 사외이사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사외이사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여 기업경영을 감시할 유인이 증가하고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
- ☐ <표 II.1.53>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지분율은 2007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0년까지 사외이사 지분율이 증가함

<표 II.1.53>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0.02	0.02	0.02	0.02	0.01	0.01
해당기업 수	678	685	706	690	668	71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0.01	0.02	0.03	0.04	0.04	0.02
해당기업 수	963	1017	1033	956	846	890

- ☐ <표 II.1.54>에서 나타나듯이, 유가증권시장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지분율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2009년을 제외하고 모두 낮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지분율이 2009년 이후로 높게 나타남

〈표 II.1.54〉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0.01	0.01	0.03	0.01	0.00	0.01
2조원 미만	0.02	0.02	0.02	0.02	0.02	0.01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01	0.01	0.04	0.05	0.04	0.02
1천억원 미만	0.02	0.02	0.03	0.05	0.03	0.01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55〉는 총수존재여부에 따른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총수있는 기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외이사 지분율이 0%로 나타남

〈표 II.1.55〉 그룹별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0.00	0.00	0.00	0.00	0.00	0.00
총수없는 기업	0.00	0.00	0.01	0.00	0.01	0.01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56〉은 각 시장의 업종별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금융업에서 사외이사 지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섬유·의복업, 전기전자업의 사외이사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56〉 업종별 사외이사 지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1	0.01	0.01	0.03	0.01	0.07
기계업	0.04	0.02	0.01	0.00	0.00	0.01
보험업	0.00	0.00	0.01	0.00	0.00	0.00
비금속광물업	0.00	0.03	0.01	0.01	0.01	0.01
서비스업	0.04	0.00	0.03	0.01	0.02	0.02
섬유, 의복업	0.05	0.05	0.05	0.05	0.06	0.06
운수장비업	0.01	0.03	0.01	0.01	0.01	0.01
운수창고업	0.05	0.04	0.15	0.14	0.04	0.00
유통업	0.02	0.02	0.00	0.00	0.00	0.00
은행업	0.05	0.06	0.37	0.04	0.00	0.01
음식료품업	0.03	0.03	0.03	0.00	0.00	0.00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0.00	0.02	0.01	0.02	0.02
전기전자업	0.00	0.02	0.02	0.02	0.02	0.00
전기가스업	0.11	0.11	0.13	0.11	0.14	0.13
제조업	0.00	0.00	0.01	0.05	0.02	0.00
종이목재업	0.01	0.00	0.00	0.00	0.01	0.02
증권업	0.00	0.00	0.01	0.01	0.01	0.01
철강및금속업	0.02	0.01	0.01	0.01	0.01	0.00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0.02	0.02	0.03	0.02	0.02	0.02
기타	0.02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1	0.02	0.05	0.04	0.04	0.01
IT S/W & SVC업	0.04	0.01	0.05	0.00	0.06	0.06
건설업	0.05	0.05	0.00	0.00	0.00	0.00
금융업	0.01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0.00	0.01	0.01	0.09	0.03	0.01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2	0.02	0.02	0.02	0.03	0.01
제조업	0.01	0.02	0.02	0.07	0.04	0.02
통신방송서비스업	0.02	0.02	0.01	0.02	0.02	0.00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 최대주주를 비롯하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기업투명성을 저하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비율

-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질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클수록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곧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에 의거해 정해지는 자로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 <표 II.1.57>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비율 평균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거래금액 비율이 2010년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감소하였고 코스닥시장은 2012년에 거래금액 비율이 대폭 감소함

<표 II.1.57>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평균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0.71	0.79	0.73	0.86	0.45	0.23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16	1.94	0.98	1.13	1.20	0.17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표 II.1.58> a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 거래금액 비율이 2조원 미만 기업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거래금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58> 자산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비율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0.11	0.54	1.53	0.73	0.08	0.01
2조원 미만	20.40	0.83	0.58	0.88	0.54	0.29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98	1.74	0.80	0.78	0.34	0.09
1천억원 미만	1.19	1.99	1.05	1.37	1.65	0.2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59>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총수의 존재여부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수있는 기업의 거래금액 비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II.1.59〉 그룹별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평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0.25	0.57	0.72	0.51	0.21	0.02
총수없는 기업	0.00	0.00	0.00	0.00	0.00	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60〉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거래금액 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통신업에 속한 기업의 거래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금융업에 속한 기업의 거래금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60>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개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과의 거래금액 평균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47	1.04	0.18	1.42	2.08	0.00
금융업	0.00	0.00	0.00	5.27	0.09	0.00
기계업	0.87	0.49	0.55	0.45	0.27	0.05
보험업	0.07	0.02	0.69	0.00	1.57	0.06
비금속광물업	0.04	0.53	0.00	0.07	0.25	0.00
서비스업	0.64	2.26	0.68	0.41	0.44	0.05
섬유, 의복업	0.54	0.42	1.54	1.68	0.49	0.02
운수장비업	1.22	0.21	1.05	0.50	0.54	0.01
운수창고업	0.00	0.23	0.00	0.00	0.21	0.00
유통업	0.19	1.04	0.00	0.06	0.29	0.66
은행업	1.12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업	1.77	3.73	1.86	0.32	0.29	0.08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10	0.00
의약품업	0.86	0.21	0.09	0.00	0.35	0.69
전기전자업	0.88	1.68	0.63	0.13	0.35	1.32
전기가스업	0.00	0.00	0.00	0.03	0.01	0.00
제조업	0.00	0.00	2.69	8.85	0.00	0.25
종이목재업	0.06	0.00	0.30	0.05	0.00	0.01
증권업	0.00	0.02	3.52	2.81	0.00	0.00
철강및금속업	0.21	0.15	0.39	2.27	1.31	0.10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1.04	0.26	1.00	0.58	0.11	0.04
기타	2.39	0.00	0.00	0.00	0.57	0.47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17	2.38	0.58	0.79	1.22	0.08
IT S/W & SVC업	2.22	2.48	0.43	2.45	0.58	0.03
건설업	0.07	0.09	0.77	0.10	0.29	0.26
금융업	0.00	0.00	0.00	0.04	0.06	0.00
기타서비스업	2.27	0.70	0.96	0.37	5.52	0.23
기타	0.11	2.87	0.00	0.00	0.07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1.27	1.32	0.00	0.00
운송업	0.00	0.38	0.00	0.00	0.64	0.00
유통업	1.31	1.14	2.06	4.28	0.69	0.32
제조업	0.80	1.73	1.48	0.87	1.05	0.28
통신방송서비스업	1.04	4.66	0.00	2.24	0.22	0.00

(2)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지주회사 제외)

□ <표 II.1.61>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거래금액 평균이 2010년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감소하였고 코스닥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출자총액 평균이 대폭 감소함

<표 II.1.61>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21.53	25.48	27.85	27.10	26.09	27.89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7.93	22.70	26.72	33.35	15.13	15.71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표 II.1.62> a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을 제외하고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이 자기자본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미만 기업군 모두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62> 자산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29.39	36.25	30.88	34.54	40.09	23.71
2조원 미만	20.40	23.53	27.27	25.64	22.93	28.94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9.11	21.79	24.15	32.63	16.88	15.98
1천억원 미만	17.70	22.92	27.45	33.62	14.21	15.54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63>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총수있는 기업의 출자총액 비율은 2011년에 가장 높음

○ 총수없는 기업의 출자총액 비율은 2012년에 크게 증가함

<표 II.1.63> 그룹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31.75	33.03	28.74	36.34	38.09	25.00
총수없는 기업	7.91	7.60	14.82	11.12	10.82	19.33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64>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운수장비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이 출자총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은 오락문화업, 운송업, 통신방송서비스업의 출자총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64〉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31.95	23.31	27.71	27.61	31.50	47.71
금융업	15.74	13.47	22.99	18.56	27.23	7.75
기계업	21.50	30.02	41.85	27.32	18.05	18.17
보험업	17.89	40.55	7.16	52.78	7.38	32.06
비금속광물업	23.03	23.52	29.85	33.20	25.74	30.07
서비스업	20.70	18.50	24.34	25.82	41.77	16.72
섬유, 의복업	14.40	19.20	39.99	28.88	13.40	9.06
운수장비업	29.40	26.41	30.86	37.88	31.56	138.82
운수창고업	24.99	22.77	42.86	38.31	35.52	32.06
유통업	21.82	40.17	24.00	27.40	31.78	26.49
은행업	3.64	19.96	4.29	3.09	94.05	7.72
음식료품업	25.65	28.28	30.31	30.29	30.27	26.59
의료정밀	69.09	22.88	39.87	12.34	12.66	12.50
의약품업	6.94	6.85	9.52	8.82	7.26	14.64
전기전자업	25.07	42.13	37.73	36.54	27.89	17.26
전기가스업	14.32	13.71	16.26	27.57	15.89	6.58
제조업	13.96	18.34	19.11	17.56	26.62	3.47
종이목재업	13.48	19.57	34.52	28.38	18.82	16.58
증권업	12.69	14.71	9.38	10.65	7.48	8.25
철강및금속업	12.72	18.21	20.79	19.97	18.79	17.61
통신업	13.27	28.12	24.23	19.43	8.65	12.60
화학업	26.29	26.30	28.40	25.87	26.90	18.03
기타	22.03	24.54	37.70	43.74	38.35	22.45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3.60	20.32	22.89	33.91	9.99	12.16
IT S/W & SVC업	18.37	25.18	32.93	35.41	19.49	20.60
건설업	12.58	11.41	19.58	41.12	13.70	16.95
금융업	11.85	7.69	20.74	31.08	8.30	19.73
기타서비스업	22.14	15.07	21.08	24.60	17.75	18.38
기타	3.63	0.78	6.87	37.62	25.11	24.47
오락, 문화업	29.80	42.55	62.65	68.52	50.45	32.32
운송업	24.21	26.15	34.16	64.86	44.15	40.16
유통업	28.16	35.70	48.16	37.98	25.01	21.77
제조업	18.10	22.94	23.82	30.73	15.35	14.15
통신방송서비스업	40.87	36.61	43.78	40.25	20.35	21.71

(3)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대부분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열사가 차입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자기자본대비) 이상으로 보증금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 기업의 현금유동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표 II.1.65>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이 2009년 17.82%로 크게 증가한 후 소폭 감소함
 - 코스닥시장에서는 2009년까지 증가한 후 계속해서 감소함

<표 II.1.65>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1.64	11.57	17.82	15.14	12.99	14.74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7.57	10.10	11.13	9.77	9.44	8.10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 <표 II.1.66>은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인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이 2010년에 가장 높았으며, 1천억원 미만 기업은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함

〈표 II.1.66〉 자산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6.09	8.32	13.96	15.68	11.09	3.59
2조원 미만	12.43	12.17	18.55	15.03	13.43	17.55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3.66	15.41	14.05	16.23	14.20	11.06
1천억원 미만	6.36	8.85	10.32	7.32	6.99	6.19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67〉에서 나타나듯이 총수있는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67〉 그룹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액 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8.68	14.31	13.72	15.65	17.81	5.00
총수없는 기업	3.84	2.57	3.95	1.22	2.66	0.9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68〉은 각 시장의 업종별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액 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은 운수장비업, 유통업, 비금속광물업이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코스닥시장에서는 기타, 건설업, 운송업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68〉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액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0.10	11.53	8.55	12.83	13.93	18.27
금융업	0.00	2.52	2.28	3.45	0.01	2.86
기계업	8.62	5.53	23.08	8.12	6.30	55.68
보험업	0.00	0.00	0.00	1.33	0.26	5.44
비금속광물업	11.58	15.81	29.85	21.08	10.35	33.22
서비스업	10.21	7.07	21.52	11.61	19.07	11.20
섬유, 의복업	11.42	9.86	11.42	9.86	8.49	8.08
운수장비업	28.59	26.95	33.78	37.39	32.09	10.58
운수창고업	18.46	19.28	35.41	24.94	16.39	14.81
유통업	17.53	20.74	23.41	35.88	29.15	14.37
은행업	0.12	0.17	0.01	2.35	0.00	2.56
음식료품업	10.12	20.63	15.43	24.40	12.68	31.10
의료정밀	8.85	6.89	0.72	0.00	0.00	5.57
의약품업	4.18	2.04	1.35	6.65	4.31	4.45
전기전자업	21.31	12.20	20.00	11.21	10.04	19.30
전기가스업	1.55	1.30	2.92	3.00	4.82	2.69
제조업	3.60	2.63	13.41	8.17	5.28	4.38
종이목재업	16.05	10.89	36.85	3.65	4.69	10.69
증권업	0.00	0.00	0.00	0.00	0.00	0.00
철강및금속업	5.40	7.86	11.05	11.94	14.16	6.53
통신업	0.10	0.08	0.00	0.00	0.00	0.39
화학업	7.51	11.17	19.06	16.40	11.25	9.25
기타	26.29	28.96	29.56	37.10	13.84	25.55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5.64	8.49	7.56	6.33	9.25	6.87
IT S/W & SVC업	6.58	15.30	9.28	14.37	9.86	7.64
건설업	5.42	16.64	22.25	33.25	22.29	17.88
금융업	0.17	4.84	0.05	3.08	3.29	15.68
기타서비스업	11.62	8.34	4.62	6.35	3.21	7.59
기타	9.35	9.70	81.33	20.00	21.31	26.06
오락, 문화업	1.36	3.35	1.51	5.40	28.18	7.53
운송업	29.77	25.37	10.51	3.06	21.91	25.64
유통업	12.29	9.78	24.04	14.40	11.62	7.56
제조업	7.96	9.24	10.89	10.01	9.05	8.09
통신방송서비스업	20.95	14.78	42.98	6.75	6.98	4.70

(4)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 <표 II.1.69>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0년 11.4%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상태이고, 코스닥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 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2011년 5.25%로 비율이 감소함

<표 II.1.69> 총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0.13	10.97	10.73	11.40	11.09	9.15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7.44	8.15	9.14	9.90	5.25	6.89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표 II.1.70>의 자산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대체로 총 매출액에서 계열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이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계열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0〉 자산규모별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2.58	14.71	11.45	13.37	12.74	11.86
2조원 미만	9.78	10.29	10.59	11.01	10.72	8.4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0.88	10.86	11.67	12.46	7.94	8.27
1천억원 미만	6.76	7.52	8.44	8.92	3.86	5.99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71〉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총수 존재 여부에 따른 총 매출액 대비 계열사 매출액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계열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1〉 그룹별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6.66	16.19	15.70	17.45	16.69	13.70
총수없는 기업	24.48	17.32	25.91	28.36	24.77	27.57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72>는 업종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은 전기전자업, 운수창고업, 운수장비업 등이 대체로 높았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기타, 운송업, 오락문화업 등이 비교적 비율이 높았으며, 금융업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2> 업종별 총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6.85	10.32	8.83	8.22	9.55	8.48
금융업	0.88	3.62	1.85	1.57	3.86	1.78
기계업	9.53	7.84	7.74	11.44	10.92	8.28
보험업	0.49	0.96	5.07	0.42	0.42	0.37
비금속광물업	8.68	6.08	3.46	3.92	3.99	5.43
서비스업	14.96	15.23	8.45	8.97	15.12	11.15
섬유,의복업	4.32	4.62	5.22	5.65	3.79	3.68
운수장비업	12.66	12.94	15.97	17.22	15.60	13.71
운수창고업	11.98	14.25	17.08	17.12	14.38	14.91
유통업	13.40	11.87	11.39	14.58	12.01	5.87
은행업	0.84	0.23	0.12	0.12	0.08	0.20
음식료품업	6.03	7.91	10.14	10.44	7.32	14.27
의료정밀	3.29	10.01	5.45	2.18	1.38	1.72
의약품업	4.40	7.22	4.18	5.25	3.34	3.67
전기전자업	21.37	19.49	23.19	26.98	21.46	12.71
전기가스업	2.81	0.80	3.76	0.41	4.57	3.53
제조업	12.35	4.05	3.41	3.19	5.40	1.90
종이목재업	8.50	14.93	14.08	11.58	15.29	13.38
증권업	0.58	2.06	0.44	0.46	3.52	0.48
철강및금속업	10.50	11.79	10.35	9.51	8.07	8.66
통신업	7.34	7.49	12.14	2.62	2.25	2.10
화학업	11.65	14.09	13.76	14.12	13.48	11.51
기타	8.02	13.69	17.35	21.01	23.69	28.45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8.77	9.85	10.64	12.08	4.29	4.83
IT S/W & SVC업	7.70	7.40	9.00	9.48	6.25	6.22
건설업	3.69	6.23	11.50	10.82	11.58	11.04
금융업	0.95	2.79	1.86	4.02	1.91	5.42
기타서비스업	11.60	8.93	6.87	7.73	3.14	8.26
기타	14.92	32.68	21.11	10.80	16.84	28.79
오락,문화업	9.14	5.72	12.52	16.38	9.07	5.33
운송업	3.23	4.67	18.24	23.08	7.65	20.89
유통업	4.71	8.38	11.12	9.82	7.57	8.59
제조업	7.01	7.47	7.93	8.98	5.27	7.34
통신방송서비스업	5.28	4.68	9.36	3.78	4.96	10.03

(5)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 <표 II.1.73>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총 매입액 대비 계열 회사에 대한 매입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매입액 비율이 2010년 11.52%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상태이고, 코스닥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2011년 4.47%로 비율이 2.65%p 감소함

<표 II.1.73>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0.58	10.33	11.37	11.52	10.98	10.81
해당기업 수	646	645	633	621	588	621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5.45	6.05	6.20	7.12	4.47	5.53
해당기업 수	942	1005	1013	931	829	852

□ <표 II.1.74>은 자산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총 매입액에서 계열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이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4> 자산규모별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1.56	12.29	12.44	12.43	12.27	11.78
2조원 미만	10.44	9.98	11.16	11.35	10.69	10.57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7.53	8.03	8.57	9.08	6.94	8.30
1천억원 미만	5.04	5.59	5.55	6.37	3.17	3.7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75>에서 총수있는 기업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총수없는 기업의 경우 2009년, 2010년 각각 16.01%, 18.88%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이후 다시 감소함

<표 II.1.75> 그룹별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1.80	12.26	14.14	13.21	13.17	14.42
총수없는 기업	10.93	9.78	16.01	18.88	11.68	12.97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76>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은 통신업, 전기전자업, 운수장비업 등이 대체로 높았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락문화업, 통신방송서비스업, 기타 등이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율이 높았으며, 건설업, 금융업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6> 업종별 총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비중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32	2.08	2.63	2.99	3.68	2.88
금융업	5.41	3.53	2.42	2.25	2.00	2.16
기계업	10.92	9.70	9.37	12.06	9.85	10.55
보험업	0.71	0.97	1.48	1.67	1.44	0.96
비금속광물업	8.54	5.76	9.31	7.45	8.54	7.86
서비스업	9.38	6.96	10.74	12.39	9.24	16.11
섬유,의복업	9.11	7.02	10.78	8.72	9.49	6.74
운수장비업	15.48	15.10	18.26	16.71	15.06	18.27
운수창고업	4.37	7.20	6.36	7.19	6.37	8.59
유통업	12.02	11.00	10.21	10.79	14.20	11.74
은행업	0.43	0.34	0.30	0.43	0.21	0.08
음식료품업	10.89	14.41	14.42	13.99	12.50	17.46
의료정밀	5.47	16.30	6.69	4.07	4.36	10.49
의약품업	6.37	8.49	9.35	9.87	7.88	8.18
전기전자업	17.52	16.18	20.65	20.17	21.05	11.78
전기가스업	2.07	1.39	1.44	8.49	8.05	1.39
제조업	16.63	12.61	13.65	9.73	11.20	6.34
종이목재업	8.91	9.12	12.71	9.43	11.62	11.55
증권업	1.18	2.76	1.68	2.21	5.57	1.09
철강및금속업	11.60	12.15	11.86	10.56	9.68	10.47
통신업	18.06	18.66	22.36	27.14	17.08	19.75
화학업	14.61	15.22	13.13	15.35	13.37	11.74
기타	15.89	13.10	16.82	16.02	18.16	4.97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6.05	5.85	6.07	7.31	3.26	3.95
IT S/W & SVC업	4.57	5.69	6.55	8.02	5.16	4.51
건설업	0.87	1.62	4.25	1.66	1.68	2.48
금융업	1.20	0.38	0.33	1.63	1.65	3.66
기타서비스업	7.15	4.93	3.44	5.07	2.71	6.25
기타	5.85	7.91	4.31	7.46	4.39	21.71
오락,문화업	8.50	10.17	14.03	12.90	12.03	6.01
운송업	3.10	1.16	4.00	4.34	5.70	2.52
유통업	7.43	9.90	7.31	7.54	7.93	4.30
제조업	5.16	6.16	6.61	7.09	4.90	6.74
통신방송서비스업	9.22	10.22	5.90	11.44	10.96	12.20

4) 이사회

- ☐ 이사회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1) 이사회 규모

- ☐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절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함
-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표 II.1.77>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사회 규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이사회 규모는 전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두 시장 모두 200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표 II.1.77> 이사회 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6.14	6.21	6.17	6.16	5.90	5.84
코스닥시장	4.90	4.91	4.98	4.85	4.79	4.67

- ☐ <표 II.1.78>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이사회 규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이사회 구성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이사회 규모가 1천억원 미만 기업보다 큼

〈표 II.1.78〉 자산규모별 이사회 규모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8.95	8.78	8.70	8.71	8.15	7.90
2조원 미만	5.74	5.75	5.70	5.66	5.39	5.32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5.48	5.36	5.31	5.08	5.05	4.92
1천억원 미만	4.79	4.80	4.89	4.76	4.66	4.51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79〉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이사회 규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이사회 규모가 총수있는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폭이 커 격차가 줄어들

〈표 II.1.79〉 그룹별 이사회 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6.78	6.67	6.85	6.95	6.75	6.46
총수없는 기업	7.40	7.82	7.44	7.63	7.41	6.6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80>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이사회 규모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금융업, 은행업, 전기가스업의 이사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섬유, 의복업, 종이목재업은 이사회 규모가 작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운송업, 통신방송서비스업의 이사회 규모가 크며, IT H/W업, 제조업의 이사회 규모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사회를 지니고 있음

〈표 II.1.80〉 업종별 이사회 규모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7.29	6.92	6.82	7.16	6.67	6.67
금융업	7.40	8.20	8.47	8.73	8.13	7.92
기계업	5.53	5.83	6.07	6.00	5.70	5.88
보험업	6.91	6.73	7.09	6.00	6.73	6.77
비금속광물업	6.08	6.09	6.32	5.91	5.75	5.81
서비스업	6.68	6.40	6.00	6.25	5.87	5.72
섬유, 의복업	5.22	5.29	5.30	5.09	5.03	5.21
운수장비업	5.51	5.89	6.19	6.04	5.50	5.63
운수창고업	5.58	5.95	6.05	5.89	5.95	5.89
유통업	6.12	6.08	6.18	6.14	5.80	5.81
은행업	8.57	8.86	7.83	8.00	8.00	7.67
음식료품업	6.47	6.94	6.37	5.76	6.11	6.03
의료정밀	6.00	6.60	6.75	6.50	6.50	6.50
의약품업	6.17	6.11	6.24	6.16	5.63	5.59
전기전자업	5.89	5.69	5.32	5.80	5.32	5.33
전기가스업	8.55	8.64	8.40	8.80	8.30	7.75
제조업	5.90	6.78	6.33	6.91	5.67	5.36
종이목재업	5.28	5.28	5.38	5.39	5.00	5.08
증권업	5.65	5.70	6.14	6.23	6.09	5.95
철강및금속업	6.49	6.19	6.33	6.20	6.05	5.93
통신업	9.75	9.50	8.00	8.33	8.67	8.33
화학업	5.98	6.15	6.02	5.87	5.88	5.69
기타	5.67	5.50	6.50	5.50	5.33	5.33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4.61	4.74	4.86	4.71	4.62	4.58
IT S/W & SVC업	5.14	5.35	5.27	5.01	4.99	4.77
건설업	5.42	5.32	5.29	5.11	4.79	4.76
금융업	4.76	5.18	4.95	5.00	5.32	4.88
기타서비스업	5.38	5.79	5.34	5.23	5.35	4.82
기타	5.25	4.25	4.67	5.40	5.83	7.00
오락, 문화업	4.67	6.22	5.33	4.70	5.00	5.40
운송업	8.33	8.67	7.00	6.00	6.50	6.20
유통업	4.84	4.92	5.12	5.07	5.00	4.61
제조업	4.89	4.63	4.82	4.72	4.63	4.54
통신방송서비스업	5.73	6.00	5.90	5.57	6.06	5.95

(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 ☐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사외이사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실적인 제약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택으로 독립적인 선임사외이사의 임명을 고려할 수 있음
- ☐ <표 II.1.81>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스닥시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 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표 II.1.81>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7	30	44	43	62	64
비율(%)	3.54%	3.50%	5.67%	4.49%	9.43%	8.59%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4	8	7	5	7	4
비율(%)	0.42%	0.79%	0.68%	0.52%	0.83%	0.45%

- ☐ <표 II.1.82>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 수는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 보다 많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수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비해 많으나 그 차이는 미미함

〈표 II.1.82〉 자산규모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4 (16.47%)	19 (18.1%)	23 (20.72%)	26 (23.21%)	39 (31.71%)	41 (28.67%)
2조원 미만	13 (2.19%)	11 (1.9%)	21 (3.53%)	17 (2.94%)	23 (4.22%)	23 (4.0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 (0.63%)	3 (1.56%)	4 (1.79%)	2 (0.76%)	3 (1.03%)	2 (0.57%)
1천억원 미만	3 (0.37%)	5 (0.61%)	3 (0.37%)	3 (0.43%)	4 (0.72%)	2 (0.37%)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8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 수는 총수없는 기업보다 총수있는 기업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83〉 그룹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3 (6.7%)	13 (5.65%)	9 (5.06%)	16 (8.79%)	27 (13.99%)	32 (14.35%)
총수없는 기업	2 (10%)	2 (9.09%)	0 (0.00%)	5 (31.25%)	6 (35.29%)	4 (2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84>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계업, 서비스업, 종이목재업에 속하는 기업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음. 의료정밀, 기타에 속하는 기업들 중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IT S/W & SVC업,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 오락문화업, 운송업, 유통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분리가 이루어진 곳이 한 곳도 없음

〈표 II.1.84〉 업종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2.6)	2(5.1)	1(2.7)	2(6.1)	2(6.1)
금융업	0(0.0)	2(13.3)	3(20)	3(20)	8(53.3)	8(61.5)
기계업	1(2.3)	2(4.8)	8(19.5)	3(7.7)	6(16.2)	6(15.0)
보험업	4(36.4)	4(36.4)	4(36.4)	2(20)	3(27.3)	3(23.1)
비금속광물업	3(12.5)	0(0.0)	0(0.0)	1(4.5)	1(5.0)	1(4.8)
서비스업	3(8.8)	2(4.4)	5(6.8)	5(6.7)	5(6.7)	5(5.7)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0(0.0)	1(3.3)	1(3.4)
운수장비업	2(4.4)	2(4.3)	2(4.3)	3(6.5)	4(9.1)	4(8.2)
운수창고업	1(5.3)	1(4.8)	1(5.0)	1(5.3)	2(10.5)	2(10.5)
유통업	1(2.0)	0(0.0)	1(2.2)	2(4.5)	3(6.7)	3(5.7)
은행업	2(28.6)	2(28.6)	1(16.7)	1(16.7)	1(25.0)	1(33.3)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1(2.9)	1(2.9)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1(2.8)	1(2.6)	0(0.0)	0(0.0)	0(0.0)
전기전자업	3(4.3)	2(2.9)	0(0)	2(3.0)	2(3.5)	2(3.3)
전기가스업	1(9.1)	3(27.3)	3(30.0)	1(10.0)	2(20.0)	2(16.7)
제조업	0(0.0)	0(0.0)	0(0.0)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1(4.2)	1(4.2)
증권업	3(15.0)	3(15.0)	5(23.8)	8(36.4)	10(45.5)	10(45.5)
철강및금속업	2(4.9)	2(4.8)	3(7.0)	3(6.8)	3(7.0)	3(6.7)
통신업	1(25.0)	1(25.0)	2(33.3)	2(66.7)	2(66.7)	2(66.7)
화학업	2(2.2)	2(2.3)	3(3.6)	4(4.8)	4(4.8)	4(4.5)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0)	0(0.0)	0(0.0)	1(0.4)	1(0.4)	1(0.4)
IT S/W & SVC업	1(0.7)	3(2.0)	2(1.4)	1(0.8)	2(1.9)	2(2.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1(4.8)	1(4.5)	3(14.3)	1(5.0)	2(10.5)	2(12.5)
기타서비스업	2(5.4)	2(5.3)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2(0.5)	2(0.5)	2(0.5)	2(0.6)	2(0.6)
통신방송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3) 이사회 개최 횟수

□ <표 II.1.85>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이사회 개최 횟수를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이사회 개최 횟수가 코스닥시장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85>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14.89	14.97	14.91	14.80	13.76	13.64
코스닥시장	13.47	14.65	14.97	14.40	12.83	12.03

□ <표 II.1.86>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이사회 개최 횟수를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과 2조원 미만 기업의 이사회 개최 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이사회 개최 횟수가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86> 자산규모별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5.27	14.32	14.75	15.53	12.87	13.30
2조원 미만	14.84	15.08	14.94	14.66	13.96	13.72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5.09	14.58	15.53	15.55	14.84	14.00
1천억원 미만	13.15	14.67	14.82	13.96	11.78	10.76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87>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이사회 평균 개최 횟수를 나타내고 있음

- 총수있는 기업이 총수없는 기업보다 이사회 개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87> 그룹별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3.91	15.25	14.10	14.75	13.28	13.16
총수없는 기업	13.05	12.68	10.89	8.69	10.00	9.7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88>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이사회 평균 개최 횟수를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건설업, 기타에 속한 기업들의 이사회 개최 횟수가 많았으며 은행업의 이사회 개최 횟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건설업, 오락문화업에 속한 기업들의 이사회 개최 횟수가 많았으며 통신방송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의 이사회 개최 횟수가 가장 적음

〈표 II.1.88〉 업종별 이사회 개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7.95	29.11	29.03	31.38	26.27	23.24
금융업	21.87	20.33	17.53	16.53	13.73	12.69
기계업	13.14	13.64	14.27	13.87	13.24	12.78
보험업	16.09	11.55	13.45	11.20	10.64	10.00
비금속광물업	12.88	14.57	14.09	13.55	12.50	12.86
서비스업	10.44	11.89	12.35	12.23	11.11	11.64
섬유,의복업	13.16	15.71	14.73	13.06	14.00	13.90
운수장비업	15.11	13.83	16.34	13.83	14.05	13.65
운수창고업	12.47	11.48	11.65	14.95	11.58	10.79
유통업	14.94	15.04	14.64	15.64	14.07	14.51
은행업	8.43	9.57	9.67	9.50	8.75	11.00
음식료품업	20.72	19.78	19.60	20.24	18.60	20.97
의료정밀	12.83	13.60	8.25	13.25	18.25	11.00
의약품업	12.57	11.86	11.58	11.03	10.05	10.56
전기전자업	13.16	13.91	13.42	12.52	11.60	10.72
전기가스업	11.27	13.55	14.00	15.20	12.70	13.25
제조업	12.50	11.89	12.75	11.82	12.44	13.64
종이목재업	12.44	12.40	14.08	14.43	13.46	13.17
증권업	22.35	19.35	19.29	18.77	17.05	16.23
철강및금속업	13.02	14.76	13.79	13.32	13.95	14.20
통신업	10.50	9.50	10.50	11.67	9.67	11.67
화학업	13.29	12.75	12.62	12.80	11.79	12.08
기타	19.17	18.00	19.67	24.17	29.67	30.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3.52	15.03	14.59	14.55	12.67	12.35
IT S/W & SVC업	15.34	15.03	17.80	14.89	12.80	10.61
건설업	13.00	15.03	16.67	15.47	16.21	17.86
금융업	14.05	15.03	15.33	14.55	14.16	15.44
기타서비스업	14.49	15.03	16.40	15.62	13.76	13.02
기타	15.00	15.03	15.67	12.20	12.00	11.50
오락,문화업	19.78	15.03	18.08	17.60	12.14	12.70
운송업	26.00	15.03	11.25	10.25	12.25	15.20
유통업	15.66	15.03	16.20	16.36	15.97	13.18
제조업	12.34	15.03	13.99	13.75	12.41	11.60
통신방송서비스업	8.86	15.03	9.48	11.48	9.88	7.75

(4)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 ☐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들을 배치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표 II.1.89>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이사회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평균 개수는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보다 많으며,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전문위원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89>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0.58	0.65	0.71	0.77	0.81	0.84
코스닥시장	0.05	0.07	0.06	0.06	0.07	0.08

- ☐ <표 II.1.90>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평균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사회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평균 개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많음
 - 코스닥시장에서, 이사회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평균 개수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이 1천억원 미만 기업보다 많음

〈표 II.1.90〉 자산규모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3.00	2.74	3.00	3.01	3.06	2.95
2조원 미만	0.24	0.27	0.29	0.33	0.30	0.31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18	0.21	0.19	0.16	0.16	0.17
1천억원 미만	0.02	0.04	0.03	0.02	0.02	0.02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91〉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평균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이 총수있는 기업보다 이사회 내에 설치한 전문위원회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91〉 그룹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06	1.07	1.37	1.43	1.59	1.62
총수없는 기업	1.75	1.73	2.11	1.94	2.00	1.6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92>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평균 개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은행업, 통신업이 많은 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금속광물업, 섬유·의복업, 종이목재업의 전문위원회 설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선 금융업, 운송업, 통신방송서비스업의 전문위원회 설치가 많고, IT H/W업, 제조업은 적은 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92> 업종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개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45	0.45	0.51	0.68	0.79	0.70
금융업	2.80	0.45	3.47	3.60	3.53	4.08
기계업	0.40	0.45	0.49	0.44	0.57	0.60
보험업	1.91	0.45	2.09	2.30	2.82	3.69
비금속광물업	0.17	0.45	0.23	0.18	0.30	0.24
서비스업	0.32	0.45	0.59	0.61	0.65	0.76
섬유·의복업	0.05	0.45	0.06	0.00	0.03	0.17
운수장비업	0.58	0.45	0.62	0.65	0.66	0.65
운수창고업	0.37	0.45	0.70	0.89	0.89	0.84
유통업	0.66	0.45	0.69	0.73	0.78	0.70
은행업	4.29	0.45	4.33	4.33	4.00	4.67
음식료품업	0.31	0.45	0.31	0.41	0.43	0.40
의료정밀	1.17	0.45	1.00	1.00	1.00	0.75
의약품업	0.20	0.45	0.29	0.37	0.39	0.41
전기전자업	0.43	0.45	0.59	0.53	0.70	0.75
전기가스업	0.73	0.45	1.40	1.40	1.20	1.33
제조업	0.50	0.45	0.50	0.64	0.67	0.45
종이목재업	0.12	0.45	0.17	0.35	0.38	0.29
증권업	1.55	0.45	1.95	2.68	2.73	3.18
철강및금속업	0.44	0.45	0.58	0.55	0.58	0.64
통신업	4.00	0.45	3.17	4.33	4.67	4.33
화학업	0.51	0.45	0.67	0.68	0.63	0.63
기타	0.67	0.45	0.83	0.83	0.83	0.33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4	0.06	0.04	0.03	0.03	0.05
IT S/W & SVC업	0.06	0.11	0.10	0.10	0.14	0.14
건설업	0.00	0.05	0.10	0.11	0.11	0.05
금융업	0.24	0.23	0.19	0.30	0.37	0.44
기타서비스업	0.05	0.08	0.10	0.10	0.09	0.10
기타	0.00	0.00	0.00	0.00	0.17	0.25
오락,문화업	0.00	0.11	0.17	0.20	0.14	0.10
운송업	0.67	0.67	0.25	0.25	0.25	0.20
유통업	0.08	0.06	0.07	0.05	0.06	0.06
제조업	0.02	0.02	0.03	0.03	0.04	0.06
통신방송서비스업	0.41	0.55	0.38	0.24	0.35	0.40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상법 제542조의 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경영진과 독립성이며,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함
- ☐ <표 II.1.9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1.9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05	122	130	129	136	147
비율(%)	15.49%	17.81%	18.41%	18.70%	20.36%	20.7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7	8	4	4	4	5
비율(%)	2.38%	1.27%	5.83%	3.95%	1.51%	1.37%

□ 〈표 II.1.94〉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선 1천억 원 이상 기업의 설치가 미만 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94〉 자산규모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79 (92.94%)	93 (88.57%)	104 (93.69%)	97 (86.61%)	111 (90.24%)	125 (87.41%)
2조원 미만	26 (4.38%)	29 (5%)	26 (4.37%)	32 (5.54%)	25 (4.59%)	22 (3.88%)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7 (4.4%)	5 (2.6%)	3 (1.35%)	4 (1.52%)	4 (1.37%)	5 (1.43%)
1천억원 미만	0 (0.00%)	3 (0.36%)	1 (0.12%)	0 (0.00%)	0 (0.00%)	0 (0.00%)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95>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보다 총수있는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많았으며, 총수있는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1.95> 그룹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69 (35.57%)	77 (33.48%)	76 (42.7%)	78 (42.86%)	89 (46.11%)	108 (48.43%)
총수없는 기업	9 (45%)	11 (50%)	9 (50.00%)	7 (43.75%)	8 (47.06%)	7 (3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96>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금융업, 유통업, 화학업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가 많으나, 증권업, 의약품업, 섬유 의복업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거의 없음

〈표 II.1.96〉 업종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7(18.4)	7(18.4)	8(20.5)	10(27)	11(33.3)	10(30.3)
금융업	9(60.0)	11(73.3)	12(80.0)	12(80.0)	12(80.0)	11(84.6)
기계업	4(9.3)	5(11.9)	5(12.2)	5(12.8)	6(16.2)	6(15.0)
보험업	6(54.5)	6(54.5)	6(54.5)	6(60.0)	8(72.7)	12(92.3)
비금속광물업	2(8.3)	2(8.7)	3(13.6)	2(9.1)	3(15.0)	2(9.5)
서비스업	3(8.8)	6(13.3)	11(14.9)	11(14.7)	12(16.0)	13(14.8)
섬유,의복업	0(0.0)	0(0.0)	0(0.0)	0(0.0)	0(0.0)	1(3.4)
운수장비업	10(22.2)	10(21.7)	10(21.3)	10(21.7)	9(20.5)	10(20.4)
운수창고업	3(15.8)	4(19.0)	5(25.0)	7(36.8)	6(31.6)	4(21.1)
유통업	10(20.0)	12(22.6)	10(22.2)	10(22.7)	12(26.7)	13(24.5)
은행업	6(85.7)	6(85.7)	5(83.3)	4(66.7)	2(50.0)	2(66.7)
음식료품업	3(8.3)	4(11.1)	2(5.7)	2(5.9)	3(8.6)	4(11.4)
의료정밀	2(33.3)	2(40.0)	1(25.0)	1(25.0)	1(25.0)	1(25.0)
의약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업	8(11.4)	7(10.3)	9(13.0)	7(10.6)	10(17.5)	12(20.0)
전기가스업	0(0.0)	2(18.2)	2(20.0)	2(20.0)	1(10.0)	2(16.7)
제조업	1(10.0)	1(11.1)	1(8.3)	1(9.1)	1(11.1)	0(0.0)
종이목재업	0(0.0)	1(4.0)	1(4.2)	2(8.7)	2(8.3)	1(4.2)
증권업	0(0.0)	0(0.0)	0(0.0)	0(0.0)	0(0.0)	0(0.0)
철강및금속업	6(14.6)	6(14.3)	7(16.3)	6(13.6)	7(16.3)	8(17.8)
통신업	4(100.0)	4(100.0)	5(83.3)	3(100.0)	3(100.0)	3(100.0)
화학업	13(14.3)	17(19.5)	17(20.2)	16(19.0)	15(17.9)	17(19.3)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0)	1(0.3)	0(0.0)	0(0.0)	0(0.0)	0(0.0)
IT S/W & SVC업	1(0.7)	1(0.7)	1(0.7)	1(0.8)	1(1.0)	1(1.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2(9.5)	2(9.1)	1(4.8)	2(10.0)	2(10.5)	2(12.5)
기타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1(33.3)	1(33.3)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1(0.3)
통신방송서비스업	3(13.6)	3(13.6)	2(9.5)	1(4.8)	1(5.9)	1(5.0)

(6) 보상위원회

- ☐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진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결정함
 - 보상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피평가자인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며, 따라서 전원 사외이사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표 II.1.97>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보상위원회 설치가 코스닥시장에 비해 많으며, 유가증권시장의 보상위원회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1.97>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32	34	37	41	43	56
비율(%)	4.72%	4.96%	5.24%	5.94%	6.44%	7.89%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4	6	5	4	6	6
비율(%)	0.42%	0.59%	0.48%	0.42%	0.71%	0.67%

- ☐ <표 II.1.98>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보상위원회 설치가 2조원 미만 기업보다 많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보상위원회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98〉 자산규모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21 (24.71%)	24 (22.86%)	28 (25.23%)	29 (25.89%)	33 (26.83%)	43 (30.07%)
2조원 미만	11 (1.85%)	10 (1.72%)	9 (1.51%)	12 (2.08%)	10 (1.83%)	13 (2.29%)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2 (1.26%)	3 (1.56%)	4 (1.79%)	3 (1.14%)	4 (1.37%)	4 (1.15%)
1천억원 미만	2 (0.25%)	3 (0.36%)	1 (0.12%)	1 (0.14%)	2 (0.36%)	2 (0.37%)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99〉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총수 존재 여부에 따른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총수있는 기업의 보상위원회 설치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보상위원회 설치율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99〉 그룹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7 (3.61%)	9 (3.91%)	12 (6.74%)	13 (7.14%)	20 (10.36%)	27 (12.11%)
총수없는 기업	6 (30.00%)	7 (31.82%)	9 (50.00%)	6 (37.50%)	7 (41.18%)	8 (4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00〉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융업, 은행업을 제외하고 보상위원회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IT S/W & SVC업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위원회 설치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엔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표 II.1.100〉 업종별 보상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2.6)	1(2.6)	1(2.7)	1(3.0)	1(3.0)
금융업	3(20.0)	3(20.0)	4(26.7)	5(33.3)	6(40.0)	8(61.5)
기계업	1(2.3)	1(2.4)	2(4.9)	1(2.6)	4(10.8)	2(5.0)
보험업	0(0.0)	0(0.0)	0(0.0)	0(0.0)	1(9.1)	8(61.5)
비금속광물업	0(0.0)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2(5.9)	2(4.4)	2(2.7)	4(5.3)	2(2.7)	7(8.0)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수장비업	1(2.2)	1(2.2)	2(4.3)	1(2.2)	1(2.3)	1(2.0)
운수창고업	0(0.0)	1(4.8)	1(5.0)	2(10.5)	1(5.3)	1(5.3)
유통업	2(4.0)	2(3.8)	2(4.4)	1(2.3)	1(2.2)	3(5.7)
은행업	6(85.7)	6(85.7)	5(83.3)	5(83.3)	3(75.0)	3(100.0)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정밀	1(16.7)	1(20.0)	1(25.0)	1(25.0)	1(25.0)	1(25.0)
의약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업	3(4.3)	3(4.4)	3(4.3)	4(6.1)	4(7.0)	4(6.7)
전기가스업	0(0.0)	1(9.1)	1(10.0)	1(10.0)	1(10.0)	0(0.0)
제조업	1(10.0)	1(11.1)	1(8.3)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3(15.0)	3(15.0)	4(19.0)	6(27.3)	8(36.4)	10(45.5)
철강및금속업	1(2.4)	1(2.4)	1(2.3)	1(2.3)	1(2.3)	1(2.2)
통신업	3(75.0)	3(75.0)	3(50.0)	2(66.7)	2(66.7)	2(66.7)
화학업	3(3.3)	3(3.4)	3(3.6)	4(4.8)	4(4.8)	3(3.4)
기타	1(16.7)	1(16.7)	1(16.7)	1(16.7)	1(16.7)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0)	0(0.0)	0(0.0)	0(0.0)	0(0.0)	0(0.0)
IT S/W & SVC업	2(1.4)	3(2.0)	3(2.1)	3(2.5)	4(3.8)	5(5.0)
건설업	0(0.0)	0(0.0)	1(4.8)	1(5.3)	1(5.3)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1(2.0)	1(1.9)	0(0.0)	0(0.0)	0(0.0)	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1(0.3)	1(0.3)
통신방송서비스업	1(4.5)	2(9.1)	1(4.8)	0(0.0)	0(0.0)	0(0.0)

5) 사외이사

- ☐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지원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1) 사외이사 선임비율

- ☐ 사외이사제도는 지배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됨
- ☐ 상법(제524조의 8)에서는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단,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 <표 II.1.101>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평균 선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두 시장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코스닥시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01> 사외이사 선임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36.87%	36.84%	38.14%	38.61%	39.13%	40.01%
코스닥시장	21.30%	23.97%	25.42%	27.09%	26.55%	27.20%

- ☐ <표 II.1.102>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사외이사 평균 선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1천억원 미만기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표 II.1.102〉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선임비율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84.63%	79.86%	82.02%	81.65%	80.40%	78.32%
2조원 미만	30.02%	29.05%	29.94%	30.27%	29.82%	30.35%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62.21%	70.34%	76.16%	80.67%	80.36%	81.16%
1천억원 미만	18.74%	21.62%	23.22%	24.63%	23.15%	23.1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0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선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총수있는 기업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03〉 그룹별 사외이사 선임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41.60%	41.42%	44.95%	45.89%	46.28%	48.02%
총수없는 기업	52.03%	47.09%	50.00%	52.46%	53.17%	48.87%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04〉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사외이사 평균 선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금융업, 은행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금속광물업, 섬유·의복업, 종이목재업의 선임비율은 낮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금융업, 운송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IT H/W업은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II.1.104〉 업종별 사외이사 선임비율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35.74	36.12	36.09	36.98	38.64	38.64
금융업	55.86	58.54	66.14	63.36	63.93	66.02
기계업	35.71	34.69	34.14	35.47	34.60	34.89
보험업	48.68	52.70	48.72	55.00	52.70	62.50
비금속광물업	30.82	30.00	30.94	31.54	32.17	32.79
서비스업	32.16	34.03	36.04	35.82	38.18	38.37
섬유, 의복업	30.57	30.27	30.86	31.90	33.77	33.11
운수장비업	38.71	37.64	37.11	37.05	37.19	39.13
운수창고업	33.96	34.40	40.50	43.75	43.36	43.75
유통업	37.91	36.65	39.57	41.85	40.61	40.91
은행업	63.33	64.52	65.96	62.50	71.88	65.22
음식료품업	34.76	32.40	34.08	35.20	35.51	35.55
의료정밀	50.00	39.39	33.33	34.62	30.77	30.77
의약품업	31.02	31.82	33.76	32.48	34.11	36.24
전기전자업	34.22	35.92	38.96	36.55	36.63	37.81
전기가스업	38.30	38.95	39.29	40.91	40.96	44.09
제조업	37.29	37.70	36.84	39.47	43.14	44.07
종이목재업	29.55	31.06	31.78	31.45	34.17	35.25
증권업	50.44	47.37	48.06	49.64	50.75	60.31
철강및금속업	36.09	35.00	34.93	35.16	35.00	36.33
통신업	64.10	63.16	56.25	64.00	65.38	64.00
화학업	36.40	36.45	38.74	39.76	38.26	38.12
기타	29.41	30.30	30.77	36.36	37.50	37.50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6.14	20.03	21.60	23.65	23.60	24.78
IT S/W & SVC업	19.87	24.05	24.97	26.35	27.17	27.25
건설업	33.98	30.69	30.63	29.90	28.57	30.00
금융업	34.00	35.96	34.62	36.00	37.62	38.46
기타서비스업	28.64	29.09	27.72	29.41	30.49	29.66
기타	28.57	29.41	32.14	22.22	31.43	32.14
오락, 문화업	33.33	30.36	34.38	36.17	31.43	31.48
운송업	40.00	38.46	39.29	41.67	38.46	41.94
유통업	26.86	30.08	29.64	29.03	29.44	29.79
제조업	20.92	23.13	25.76	27.77	25.73	26.37
통신방송서비스업	34.13	34.85	30.65	34.19	36.89	35.29

(2)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 <표 II.1.105>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코스닥시장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1.105>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70.44%	70.51%	69.88%	76.40%	79.28%	79.38%
코스닥시장	58.11%	55.89%	56.99%	60.43%	74.39%	53.43%

□ <표 II.1.106>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자산규모 2조원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율이 1천억원 미만 기업보다 높음

<표 II.1.106> 자산규모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87.53%	87.38%	89.33%	91.48%	92.29%	91.35%
2조원 미만	67.94%	67.42%	66.23%	73.46%	76.31%	76.3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65.10%	63.66%	68.49%	64.17%	68.34%	64.85%
1천억원 미만	56.00%	53.38%	52.93%	58.40%	54.58%	46.06%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07>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수없는 기업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이 총수있는 기업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남

<표 II.1.107> 그룹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78.16%	74.83%	83.42%	88.16%	88.09%	88.08%
총수없는 기업	85.61%	89.09%	89.72%	89.42%	92.22%	96.9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08>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통신업, 은행업, 금융업, 보험업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이 높은 반면, 제조업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저조함
- 코스닥시장의 경우 건설업, 금융업, 통신방송서비스업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이 높으며 오락문화업, 운송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낮게 나타남

〈표 II.1.108〉 업종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62.91	61.99	67.81	72.11	74.81	72.56
금융업	83.31	85.36	88.18	92.16	93.11	90.41
기계업	66.91	65.06	56.71	81.20	82.87	80.83
보험업	90.13	86.22	83.80	82.85	95.17	92.43
비금속광물업	70.73	67.58	73.25	76.05	74.46	77.99
서비스업	72.74	71.86	72.02	74.47	78.96	81.44
섬유, 의복업	68.63	67.74	64.03	70.33	79.83	80.23
운수장비업	61.84	64.09	68.43	76.70	79.45	78.32
운수창고업	70.22	69.46	73.87	80.75	81.76	80.65
유통업	69.16	66.61	55.29	72.73	76.53	71.37
은행업	89.50	83.63	93.34	93.52	91.45	99.08
음식료품업	75.72	71.55	73.57	76.70	75.35	71.62
의료정밀	72.17	63.62	65.15	64.54	65.68	84.96
의약품업	70.80	79.03	76.12	77.50	76.74	81.03
전기전자업	70.49	70.85	68.04	73.90	76.28	76.84
전기가스업	68.23	77.42	85.27	94.81	94.61	93.41
제조업	63.33	54.82	53.19	62.72	66.79	62.34
종이목재업	62.79	64.25	59.97	63.90	68.17	75.00
증권업	75.81	79.32	83.03	88.13	91.46	91.82
철강및금속업	70.63	73.92	75.34	76.80	77.85	78.71
통신업	86.62	90.80	93.80	95.80	96.17	98.30
화학업	73.75	74.80	71.65	77.80	81.58	81.57
기타	52.94	41.00	55.24	62.95	77.26	85.78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56.60	53.04	53.28	56.73	55.76	44.31
IT S/W & SVC업	52.43	57.51	52.12	60.56	179.75	48.23
건설업	69.92	67.46	71.44	74.25	75.29	67.15
금융업	70.54	62.00	71.47	73.42	69.68	84.54
기타서비스업	68.93	59.83	65.56	72.18	67.86	58.49
기타	28.84	47.33	51.44	55.10	62.92	61.74
오락, 문화업	67.64	43.37	49.67	48.41	46.47	46.95
운송업	38.78	48.34	54.59	54.07	44.05	54.00
유통업	51.72	49.82	51.09	53.11	46.57	57.73
제조업	58.21	56.38	57.91	60.29	62.04	56.30
통신방송서비스업	73.10	65.70	78.72	74.78	75.46	81.90

(3)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 <표 II.1.109>는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적이 1번 이상 있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의 현황을 나타냄

-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기업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기업 수가 감소추세에 있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2007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24사(2.84%)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최고치를 기록함

<표 II.1.109>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9	28	29	21	17	18
비율(%)	4.28%	4.09%	4.11%	3.04%	2.54%	2.54%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1	8	10	6	24	3
비율(%)	1.14%	0.79%	0.97%	0.63%	2.84%	0.34%

□ <표 II.1.110>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을 나타냄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가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표 II.1.110〉 자산규모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20 (23.53%)	18 (17.14%)	20 (18.02%)	4 (3.57%)	10 (8.13%)	2 (1.4%)
2조원 미만	9 (1.52%)	10 (1.72%)	9 (1.51%)	2 (0.35%)	7 (1.28%)	16 (2.82%)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5 (3.14%)	3 (1.56%)	4 (1.79%)	4 (1.52%)	5 (1.72%)	0 (0.00%)
1천억원 미만	6 (0.75%)	5 (0.61%)	6 (0.74%)	2 (0.29%)	19 (3.42%)	3 (0.5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11〉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을 나타냄

- 총수없는 기업의 경우 2007년 5사(2.58%)에서 이사회 안전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2사(0.9%)만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있는 기업의 경우 2007년 3사(15%)에서 이사회 안전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9, 2010, 2012년에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음

〈표 II.1.111〉 그룹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5 (2.58%)	6 (2.61%)	4 (2.25%)	8 (4.4%)	3 (1.55%)	2 (0.9%)
총수없는 기업	3 (15%)	2 (9.09%)	0 (0%)	0 (0%)	4 (23.53%)	0 (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12〉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을 나타냄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비금속광물업, 철강및금속업, 화학업에서의 사외이사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가 많았으며, 음식료품업, 의료정밀, 의약품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
- 코스닥시장 경우 IT H/W업과 제조업에 사외이사 반대 또는 수정의견제시가 있었던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락문화업, 기타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1사도 없었음

〈표 II.1.112〉 업종별 사외이사의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0.0)	1(2.6)	2(5.1)	0(0.0)	0(0.0)	1(3.0)
금융업	1(6.7)	1(6.7)	4(26.7)	1(6.7)	3(20)	1(7.7)
기계업	1(2.3)	1(2.4)	0(0.0)	1(2.6)	1(2.7)	2(5.0)
보험업	3(27.3)	0(0.0)	0(0.0)	3(30)	0(0.0)	0(0.0)
비금속광물업	1(4.2)	0(0.0)	0(0.0)	1(4.5)	0(0.0)	0(0.0)
서비스업	2(5.9)	3(6.7)	4(5.4)	2(2.7)	2(2.7)	3(3.4)
섬유, 의복업	1(2.7)	0(0.0)	0(0.0)	1(3.1)	1(3.3)	1(3.4)
운수장비업	2(4.4)	1(2.2)	0(0.0)	2(4.3)	0(0.0)	0(0.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1(5.3)
유통업	0(0.0)	2(3.8)	2(4.4)	0(0)	2(4.4)	0(0.0)
은행업	3(42.9)	2(28.6)	1(16.7)	3(50.0)	0(0.0)	0(0.0)
음식료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정밀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업	1(1.4)	1(1.5)	2(2.9)	1(1.5)	2(3.5)	0(0.0)
전기가스업	2(18.2)	1(9.1)	1(10.0)	2(20.0)	1(10)	0(0.0)
제조업	1(10.0)	2(22.2)	0(0.0)	1(9.1)	1(11.1)	0(0.0)
종이목재업	0(0.0)	1(4.0)	0(0.0)	0(0.0)	0(0.0)	0(0.0)
증권업	5(25.0)	3(15.0)	3(14.3)	5(22.7)	0(0.0)	0(0.0)
철강및금속업	1(2.4)	2(4.8)	2(4.7)	1(2.3)	3(7.0)	2(4.4)
통신업	3(75.0)	3(75.0)	3(50.0)	3(100.0)	1(33.3)	0(0.0)
화학업	2(2.2)	4(4.6)	4(4.8)	2(2.4)	0(0.0)	4(4.5)
기타	0(0.0)	0(0.0)	1(16.7)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2(0.8)	2(0.7)	2(0.7)	2(0.7)	6(2.3)	0(0.0)
IT S/W & SVC업	2(1.4)	2(1.3)	2(1.4)	2(1.6)	4(3.8)	0(0.0)
건설업	0(0.0)	1(5.3)	0(0.0)	0(0.0)	0(0.0)	0(0.0)
금융업	2(9.5)	0(0.0)	0(0.0)	2(10)	2(10.5)	0(0.0)
기타서비스업	0(0.0)	0(0.0)	1(2.0)	0(0.0)	1(2.2)	0(0.0)
기타	0(0.0)	0(0.0)	0(0.0)	0(0.0)	1(16.7)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1(1.9)	0(0.0)	0(0.0)	1(2.8)	1(2.0)
제조업	3(0.8)	1(0.3)	4(1.0)	3(0.8)	9(2.8)	2(0.6)
통신방송서비스업	2(9.1)	1(4.5)	1(4.8)	2(9.5)	0(0.0)	0(0.0)

6) 경영투명성

- 기업은 주요한 경영사항의 변화, 실적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며 공정하게 공시하여 주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함

(1)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 기업설명회(IR) 개최는 주주 및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를 위해 기업의 각종 정보를 알려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급변하는 증시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표 II.1.11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의 연평균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기업은 평균 1회 이상의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II.1.113>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0.99	1.18	1.14	1.04	1.19	1.17
코스닥시장	0.32	0.38	0.31	0.31	0.39	0.43

- <표 II.1.114>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1천억원 이상 기업이 1천억원 미만 기업보다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횟수가 많음

〈표 II.1.114〉 자산규모별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5.19	5.71	2.58	1.33	4.55	4.41
2조원 미만	0.39	0.36	0.87	0.98	0.43	0.3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73	0.80	0.45	0.34	0.78	0.71
1천억원 미만	0.24	0.28	0.28	0.30	0.18	0.2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15〉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룹별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횟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총수 없는 기업의 공시 횟수가 많으나 그 차이는 미미함

〈표 II.1.115〉 그룹별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79	2.08	1.75	1.03	2.26	2.26
총수없는 기업	2.75	4.09	1.50	0.81	2.71	3.2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16>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금융업, 보험업, 은행업, 통신업이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에 적극적인 반면, 종이목재업, 비금속광물업은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타서비스업, 오락문화업, 통신방송서비스업, 운송업 분야가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1.116> 업종별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55	1.00	1.22	1.39	1.73
금융업	2.67	3.53	3.60	2.27	4.80	7.08
기계업	0.95	0.71	1.61	0.90	0.57	0.65
보험업	2.91	4.73	2.64	0.20	5.82	7.00
비금속광물업	0.04	0.00	0.36	0.41	0.10	0.05
서비스업	1.68	2.00	1.52	1.71	1.37	1.61
섬유,의복업	0.24	0.31	1.24	0.97	0.53	0.31
운수장비업	0.98	1.35	0.74	1.98	1.27	1.59
운수창고업	0.32	0.33	1.05	1.21	1.11	0.42
유통업	0.60	0.62	1.44	1.55	0.91	0.92
은행업	8.14	9.29	4.00	2.50	9.50	7.00
음식료품업	0.58	0.58	1.23	1.00	1.26	0.83
의료정밀	0.50	0.20	0.00	1.25	0.25	0.50
의약품업	0.63	0.58	1.51	0.38	0.37	0.31
전기전자업	1.04	1.12	0.64	0.85	0.98	0.60
전기가스업	1.27	2.18	0.80	0.70	1.00	1.25
제조업	1.10	0.89	1.58	0.55	0.44	0.36
종이목재업	0.00	0.16	0.46	0.22	0.17	0.04
증권업	0.65	1.10	0.24	1.23	1.77	1.14
철강및금속업	0.56	0.67	0.93	0.89	0.70	0.67
통신업	10.75	12.00	0.33	0.00	5.00	5.67
화학업	0.91	1.10	0.93	0.50	1.18	1.01
기타	0.00	0.00	0.00	0.33	0.00	0.0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42	0.36	0.25	0.31	0.39	0.46
IT S/W & SVC업	0.41	0.58	0.46	0.35	0.36	0.59
건설업	0.00	0.11	0.14	0.21	0.05	0.10
금융업	0.38	0.55	0.19	0.20	0.05	0.00
기타서비스업	0.73	1.05	0.66	0.17	0.98	0.73
기타	0.00	0.25	0.17	0.00	1.00	0.00
오락,문화업	0.44	0.44	0.08	0.90	0.43	0.80
운송업	1.00	1.33	0.75	0.00	0.00	0.00
유통업	0.18	0.21	0.22	0.13	0.17	0.12
제조업	0.17	0.23	0.30	0.35	0.36	0.41
통신방송서비스업	0.82	1.14	0.29	0.33	0.35	0.30

(2) 자율(자진)공시 횟수

- ☐ 자율공시란, 주요 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일부는 세칙에서 정함)에 관하여 상장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장기업의 공시능력 제고에 그 의의를 두고 있음
- ☐ <표 II.1.117>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자율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율공시 횟수가 2010년 자율공시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2010년 이후 코스닥시장의 자율공시 횟수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II.1.117>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1.70	1.79	1.52	2.20	1.51	1.65
코스닥시장	1.45	1.33	1.21	2.75	3.30	2.82

□ <표 II.1.118>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시장의 자산규모별 자율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자율공시 횟수가 많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1천억원 이상 기업과 1천억원 미만 기업간 자율공시 횟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18> 자산규모별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3.12	2.63	2.74	3.73	2.83	1.34
2조원 미만	1.50	1.63	1.30	1.91	1.22	2.84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22	1.09	1.32	3.03	4.09	0.38
1천억원 미만	1.49	1.39	1.18	2.64	2.89	1.4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19>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자율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총수없는 기업의 자율공시 횟수가 총수있는 기업보다 많으나, 두 집단 모두 자율공시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19〉 그룹별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65	1.66	2.06	2.60	1.66	2.01
총수없는 기업	2.35	1.77	2.44	3.94	6.88	2.55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20〉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자율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건설업,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통신업의 자율공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 시장의 경우, 건설업, IT H/W업, 기타서비스업의 자율공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1.120〉 업종별 자율(자진)공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3.95	5.74	4.95	7.89	5.39	5.58
금융업	1.87	1.93	1.87	2.73	2.53	2.54
기계업	2.26	3.17	2.98	3.69	2.46	2.65
보험업	1.36	1.36	2.09	1.20	0.82	1.23
비금속광물업	0.58	0.70	0.59	0.77	0.70	1.00
서비스업	1.47	1.20	1.22	1.97	1.24	1.49
섬유, 의복업	1.92	2.11	0.91	0.94	0.73	0.45
운수장비업	1.18	0.98	1.60	1.76	1.86	1.55
운수창고업	1.32	1.24	1.05	0.79	0.89	1.16
유통업	2.40	1.85	1.24	1.30	1.07	0.91
은행업	1.00	2.29	0.50	1.00	1.25	2.33
음식료품업	0.94	1.31	1.11	1.00	0.40	1.11
의료정밀	3.67	4.00	3.00	2.75	3.25	3.25
의약품업	1.09	0.86	0.79	1.49	1.39	2.49
전기전자업	2.53	2.34	1.35	2.71	1.23	1.65
전기가스업	5.18	4.45	2.20	4.10	2.60	2.25
제조업	1.90	0.89	1.58	2.18	1.11	1.09
종이목재업	0.64	1.32	1.00	0.78	0.58	0.63
증권업	1.10	0.75	1.10	4.68	1.41	1.68
철강및금속업	0.66	1.00	1.05	2.18	2.37	1.22
통신업	3.00	4.00	1.67	3.00	3.67	3.33
화학업	1.00	0.90	1.17	1.24	0.82	1.16
기타	1.33	0.33	1.00	0.67	0.17	0.83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78	1.69	1.42	3.12	3.50	3.43
IT S/W & SVC업	1.56	1.16	0.92	2.62	2.74	2.06
건설업	2.47	3.89	3.14	4.63	6.74	5.24
금융업	1.19	0.00	0.10	0.25	2.00	0.63
기타서비스업	3.38	3.00	2.88	4.65	4.65	4.45
기타	0.25	1.00	0.17	0.80	1.83	1.75
오락, 문화업	1.56	1.56	0.67	2.60	0.86	0.90
운송업	3.00	0.33	0.50	0.75	0.75	0.20
유통업	0.82	0.65	0.54	2.09	2.47	1.39
제조업	1.09	1.05	1.07	2.48	3.34	2.79
통신방송서비스업	0.50	0.82	0.86	1.81	0.94	0.40

(3) 조회공시 횟수

- 조회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품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표 II.1.121>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의 조회공시 횟수 평균을 나타내고 있음
- 2007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에 비해 조회공시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21> 조회공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0.43	0.57	0.70	0.60	0.39	0.57
코스닥시장	0.52	0.56	0.46	0.38	0.33	0.32

- <표 II.1.122>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에 따른 조회공시 현황을 분류해서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조회공시 횟수가 많음
- 코스닥시장 또한 201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천억원 미만 기업이 1천억원 미만 기업보다 조회공시 횟수가 많음

〈표 II.1.122〉 자산규모별 조회공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1.29	1.10	1.12	1.09	0.91	0.32
2조원 미만	0.30	0.48	0.63	0.50	0.27	1.36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0.26	0.28	0.24	0.32	0.20	0.40
1천억원 미만	0.57	0.62	0.52	0.40	0.40	0.24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23〉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총수 존재 여부에 따른 조회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수없는 기업의 조회공시 횟수가 총수있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23〉 그룹별 조회공시 횟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0.65	0.62	0.78	0.76	0.52	0.83
총수없는 기업	1.25	0.82	0.94	1.13	0.94	1.7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24>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종별 조회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건설업, 유통업, 전기전자업에 속한 기업에서 조회공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 시장의 경우, 오락문화업, 제조업의 조회공시가 많이 나타났고, 운송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조회공시가 적음

<표 II.1.124> 업종별 조회공시 횟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0.24	0.74	1.31	1.16	0.70	1.00
금융업	0.60	0.13	0.27	0.67	0.67	1.62
기계업	0.51	0.67	1.24	0.49	0.30	0.48
보험업	0.18	0.55	1.27	0.50	0.00	0.38
비금속광물업	0.17	1.00	0.82	0.32	0.20	0.43
서비스업	0.15	0.31	0.38	0.61	0.21	0.42
섬유,의복업	0.38	0.26	0.36	0.53	0.40	0.41
운수장비업	0.44	0.48	0.79	0.37	0.55	0.82
운수창고업	0.47	0.52	0.70	0.53	0.32	0.26
유통업	0.90	0.85	0.60	0.84	0.96	1.02
은행업	0.29	0.86	0.00	0.00	0.75	0.33
음식료품업	0.42	0.58	0.63	0.38	0.20	0.54
의료정밀	0.00	0.00	0.00	0.25	0.75	0.25
의약품업	0.17	0.08	0.32	0.32	0.18	0.26
전기전자업	0.77	0.85	1.36	1.24	0.42	0.48
전기가스업	0.09	0.18	0.50	0.40	0.10	0.17
제조업	0.70	0.56	0.50	0.27	0.56	0.27
종이목재업	0.16	0.20	0.38	0.35	0.08	0.25
증권업	0.75	0.60	1.14	0.55	0.36	1.00
철강및금속업	0.41	0.81	0.65	0.43	0.47	0.36
통신업	1.25	1.25	0.50	2.00	1.00	1.67
화학업	0.27	0.53	0.39	0.48	0.29	0.61
기타	0.00	1.00	0.67	0.00	0.33	0.33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38	0.56	0.49	0.46	0.32	0.26
IT S/W & SVC업	0.57	0.63	0.58	0.41	0.32	0.31
건설업	0.16	0.42	0.43	0.16	0.21	0.57
금융업	0.38	0.18	0.19	0.35	0.53	0.19
기타서비스업	0.51	0.26	0.62	0.35	0.48	0.63
기타	1.50	1.00	0.67	0.40	0.50	0.25
오락,문화업	2.22	0.67	0.75	0.30	0.14	0.2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20
유통업	0.60	0.52	0.64	0.58	0.28	0.65
제조업	0.59	0.60	0.36	0.31	0.32	0.27
통신방송서비스업	0.23	0.27	0.05	0.19	0.35	0.25

(4) 정정공시

- ☐ 기업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혹은 정보제공 지연은 주주들에게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시가 중요함
- ☐ <표 II.1.125>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의 정정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코스닥시장의 정정공시가 2011년부터 대폭 감소해 2012년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1.125> 정정공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4.97	5.24	5.26	4.74	2.86	4.16
코스닥시장	8.31	8.96	8.48	7.07	3.34	4.43

- ☐ <표 II.1.126>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규모별 정정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2조원 이상 기업이 2조원 미만 기업보다 정정공시 횟수가 많음

- 코스닥시장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천억원 미만 기업의 정정공시 횟수가 1천억원 이상 기업보다 많으나 2011년~2012년에는 그 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II.1.126〉 자산규모별 정정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7.32	7.93	7.76	8.18	5.94	3.05
2조원 미만	4.63	4.75	4.80	4.07	2.17	8.55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6.26	5.46	4.88	5.29	3.16	4.11
1천억원 미만	8.71	9.77	9.47	7.75	3.43	4.93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27〉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정정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있는 기업의 정정공시 횟수가 총수없는 기업에 비해 많으나 2011년부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II.1.127〉 그룹별 정정공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5.35	5.89	5.17	5.38	3.83	5.22
총수없는 기업	5.80	4.77	4.61	4.25	2.71	3.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28〉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시장의 업종별 정정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건설업, 금융업, 증권업의 정정공시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IT S/W & SVC업, 오락문화업, 유통업의 정정공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28〉 업종별 정정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7.95	8.32	6.05	5.84	0.91	5.03
금융업	7.67	10.20	6.80	7.07	1.00	7.54
기계업	6.35	5.33	6.88	5.28	0.81	3.70
보험업	3.55	4.64	4.82	5.30	1.09	3.77
비금속광물업	3.38	2.74	3.82	3.09	0.45	2.62
서비스업	4.29	5.87	5.82	5.03	0.91	2.82
섬유, 의복업	4.43	5.46	3.18	4.03	0.80	3.52
운수장비업	4.33	3.63	3.09	3.35	0.73	2.96
운수창고업	5.68	4.33	3.70	3.95	0.63	2.95
유통업	4.74	6.15	6.67	4.66	0.91	4.85
은행업	1.71	2.86	4.33	4.83	1.50	9.33
음식료품업	4.47	4.64	3.71	2.06	0.49	3.26
의료정밀	6.33	3.40	3.25	7.75	0.00	4.00
의약품업	2.97	3.31	2.92	2.51	0.39	4.10
전기전자업	5.80	5.99	6.80	6.47	0.82	3.73
전기가스업	2.91	1.82	3.50	3.20	0.90	3.17
제조업	5.50	3.89	3.25	5.36	0.89	4.45
종이목재업	3.16	3.44	3.92	4.43	0.75	2.58
증권업	11.85	12.40	18.10	19.00	1.45	26.50
철강및금속업	2.85	4.74	3.93	3.61	0.91	2.51
통신업	4.25	4.00	5.17	6.00	1.00	3.33
화학업	4.79	4.47	4.43	2.79	0.93	2.53
기타	2.67	3.33	5.33	1.33	0.50	1.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8.50	9.68	8.80	7.42	0.08	4.51
IT S/W & SVC업	10.89	11.47	10.84	7.15	0.14	3.46
건설업	5.79	5.95	4.52	5.79	0.16	10.33
금융업	6.81	7.82	8.38	6.20	0.26	3.00
기타서비스업	8.78	9.47	6.54	7.33	0.13	6.98
기타	7.75	3.25	10.17	2.60	0.60	2.25
오락, 문화업	24.22	13.89	11.58	9.90	0.00	5.20
운송업	3.33	7.67	4.50	3.50	0.75	6.00
유통업	8.44	11.04	10.53	8.38	0.08	4.22
제조업	7.02	7.55	7.65	6.75	0.10	4.01
통신방송서비스업	8.36	4.55	4.86	6.00	0.00	4.85

(5)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 ☐ 기업이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 <표 II.1.129>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예측(전망) 정보를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실적예측(전망) 정보를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2010년에 급격히 감소함
 -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1년까지 감소한 후 2012년에 소폭 증가함

<표 II.1.129>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기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57	170	177	108	110	100
비율(%)	23.16	24.82	25.07	15.65	16.47	14.08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06	171	107	87	77	104
비율(%)	21.39	16.81	10.36	9.10	9.10	11.69

- ☐ <표 II.1.130>은 각 시장의 자산규모에 따른 실적예측(전망) 정보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예측 정보 공시가 2009년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하락하였으며, 1천억원 미만 기업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표 II.1.130〉 자산규모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기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49 (57.65%)	57 (54.29%)	58 (52.25%)	38 (33.93%)	47 (38.21%)	54 (37.76%)
2조원 미만	108 (18.21%)	113 (19.48%)	119 (20%)	70 (12.11%)	63 (11.56%)	46 (8.11%)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58 (36.48%)	50 (26.04%)	34 (15.25%)	38 (14.45%)	35 (12.03%)	48 (13.75%)
1천억원 미만	148 (18.41%)	121 (14.67%)	73 (9.01%)	49 (7.07%)	42 (7.57%)	56 (10.3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31〉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의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대체적으로 총수없는 기업들의 실적예측정보 공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31〉 그룹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기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75 (38.66%)	91 (39.57%)	76 (42.7%)	43 (23.63%)	47 (24.35%)	53 (23.77%)
총수없는 기업	9 (45.00%)	8 (36.36%)	7 (38.89%)	5 (31.25%)	7 (41.18%)	6 (3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32〉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보험업, 제조업, 증권업, 철강및금속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실적예측(전망)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유통업, IT H/W업, 증권업,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실적예측(전망)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32〉 업종별 실적예측(전망)정보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7(18.4)	13(34.2)	12(30.8)	7(18.9)	9(27.3)	5(15.2)
금융업	2(13.3)	3(20.0)	1(6.7)	0(0.0)	2(13.3)	1(7.7)
기계업	10(23.3)	6(14.3)	14(34.1)	5(12.8)	9(24.3)	5(12.5)
보험업	0(0.0)	4(36.4)	2(18.2)	2(20.0)	6(54.5)	3(23.1)
비금속광물업	4(16.7)	5(21.7)	7(31.8)	4(18.2)	0(0.0)	4(19.0)
서비스업	9(26.5)	11(24.4)	17(23)	8(10.7)	16(21.3)	10(11.4)
섬유, 의복업	8(21.6)	8(22.9)	6(17.6)	5(15.6)	5(16.7)	4(13.8)
운수장비업	11(24.4)	11(23.9)	10(21.3)	10(21.7)	11(25.0)	3(6.1)
운수창고업	2(10.5)	4(19.0)	6(30.0)	4(21.1)	5(26.3)	3(15.8)
유통업	10(20.0)	13(24.5)	15(33.3)	7(15.9)	3(6.7)	6(11.3)
은행업	2(28.6)	3(42.9)	0(0.0)	0(0.0)	2(50.0)	0(0.0)
음식료품업	8(22.2)	11(30.6)	9(25.7)	3(8.8)	2(5.7)	5(14.3)
의료정밀	2(33.3)	0(0.0)	0(0.0)	0(0.0)	1(25.0)	0(0.0)
의약품업	10(28.6)	4(11.1)	9(23.7)	10(26.3)	9(23.7)	4(10.3)
전기전자업	15(21.4)	15(22.1)	21(30.4)	8(12.1)	5(8.8)	10(16.7)
전기가스업	4(36.4)	5(45.5)	1(10.0)	0(0.0)	2(20.0)	2(16.7)
제조업	1(10.0)	3(33.3)	4(33.3)	1(9.1)	0(0.0)	2(18.2)
종이목재업	4(16.0)	8(32.0)	3(12.5)	2(8.7)	3(12.5)	2(8.3)
증권업	6(30.0)	5(25.0)	5(23.8)	1(4.5)	0(0.0)	4(18.2)
철강및금속업	8(19.5)	14(33.3)	11(25.6)	14(31.8)	6(14.0)	10(22.2)
통신업	1(25.0)	2(50.0)	0(0.0)	0(0.0)	2(66.7)	0(0.0)
화학업	33(36.3)	21(24.1)	24(28.6)	15(17.9)	12(14.3)	14(15.9)
기타	0(0.0)	1(16.7)	0(0.0)	2(33.3)	0(0.0)	0(0.0)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77(28.9)	44(14.9)	38(12.7)	30(10.8)	29(11.0)	33(13.0)
IT S/W & SVC업	41(28.1)	27(17.6)	14(9.8)	18(14.8)	13(12.5)	8(8.0)
건설업	1(5.3)	4(21.1)	1(4.8)	0(0.0)	1(5.3)	2(9.5)
금융업	2(9.5)	2(9.1)	1(4.8)	0(0.0)	0(0.0)	1(6.3)
기타서비스업	7(18.9)	5(13.2)	8(16.0)	6(11.5)	8(17.4)	2(4.1)
기타	1(25.0)	0(0.0)	0(0.0)	0(0.0)	1(16.7)	1(25.0)
오락, 문화업	2(22.2)	0(0.0)	1(8.3)	0(0.0)	0(0.0)	1(10.0)
운송업	1(33.3)	0(0.0)	1(25.0)	0(0.0)	0(0.0)	0(0.0)
유통업	8(16.0)	7(13.5)	5(8.3)	2(3.6)	2(5.6)	12(23.5)
제조업	61(15.8)	75(18.8)	38(9.6)	28(7.6)	22(6.8)	41(11.4)
통신방송서비스업	5(22.7)	7(31.8)	0(0.0)	3(14.3)	1(5.9)	1(5.0)

(6)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 ☐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과 같은 기업의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공시하는 것은 경영정보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업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 <표 II.1.133>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을 영문 공시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율에 큰 변화가 없음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2012년 영문 공시 기업 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33>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68	60	75	93	67	69
비율(%)	10.03	8.76	10.62	13.48	10.03	9.72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7	32	21	27	25	8
비율(%)	2.80	3.15	2.03	2.82	2.96	0.90

- ☐ <표 II.1.134>는 시장별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을 영문 공시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비율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공시율이 2008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천억원 미만 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

〈표 II.1.134〉 자산규모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40 (47.06%)	45 (42.86%)	50 (45.05%)	58 (51.79%)	51 (41.46%)	57 (39.86%)
2조원 미만	28 (4.72%)	15 (2.59%)	25 (4.20%)	35 (6.06%)	16 (2.94%)	12 (2.12%)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7 (10.69%)	22 (11.46%)	11 (4.93%)	15 (5.70%)	13 (4.47%)	4 (1.15%)
1천억원 미만	10 (1.24%)	10 (1.21%)	10 (1.23%)	12 (1.73%)	12 (2.16%)	4 (0.74%)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35〉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의 영문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율이 총수있는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35〉 그룹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38 (19.59%)	40 (17.39%)	35 (19.66%)	48 (26.37%)	42 (21.76%)	44 (19.73%)
총수없는 기업	9 (45.00%)	7 (31.82%)	6 (33.33%)	6 (37.50%)	6 (35.29%)	5 (2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36〉은 각 시장의 업종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통신업의 공시 비율이 100%에 달하며, 금융업, 보험업, 은행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공시 비율을 보임
- 코스닥시장의 경우 오락문화업, 통신방송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문공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I.1.136〉 업종별 감사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 영문 공시 기업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2.6)	1(2.6)	5(12.8)	5(13.5)	1(3.0)	1(3.0)
금융업	4(26.7)	4(26.7)	5(33.3)	6(40.0)	4(26.7)	9(69.2)
기계업	1(2.3)	1(2.4)	2(4.9)	3(7.7)	2(5.4)	3(7.5)
보험업	3(27.3)	3(27.3)	3(27.3)	3(30.0)	7(63.6)	6(46.2)
비금속광물업	4(16.7)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5(14.7)	6(13.3)	10(13.5)	10(13.3)	8(10.7)	9(10.2)
섬유, 의복업	0(0.0)	0(0.0)	2(5.9)	2(6.3)	0(0.0)	0(0.0)
운수장비업	5(11.1)	4(8.7)	7(14.9)	10(21.7)	8(18.2)	9(18.4)
운수창고업	2(10.5)	2(9.5)	6(30.0)	8(42.1)	4(21.1)	2(10.5)
유통업	6(12.0)	5(9.4)	5(11.1)	7(15.9)	3(6.7)	3(5.7)
은행업	4(57.1)	4(57.1)	2(33.3)	4(66.7)	2(50.0)	1(33.3)
음식료품업	4(11.1)	2(5.6)	2(5.7)	3(8.8)	2(5.7)	3(8.6)
의료정밀	1(16.7)	1(2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2(5.6)	2(5.3)	2(5.3)	2(5.3)	0(0.0)
전기전자업	6(8.6)	5(7.4)	5(7.2)	6(9.1)	5(8.8)	5(8.3)
전기가스업	0(0.0)	1(9.1)	1(10.0)	4(40.0)	1(10.0)	1(8.3)
제조업	1(10.0)	1(11.1)	1(8.3)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5(25.0)	4(20.0)	5(23.8)	6(27.3)	3(13.6)	5(22.7)
철강및금속업	2(4.9)	2(4.8)	1(2.3)	1(2.3)	2(4.7)	2(4.4)
통신업	4(100.0)	4(100.0)	3(50.0)	2(66.7)	2(66.7)	3(100)
화학업	9(9.9)	8(9.2)	7(8.3)	9(10.7)	8(9.5)	6(6.8)
기타	1(16.7)	0(0.0)	1(16.7)	1(16.7)	2(33.3)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8(3.0)	9(3.0)	8(2.7)	8(2.9)	9(3.4)	2(0.8)
IT S/W & SVC업	7(4.8)	9(5.9)	4(2.8)	7(5.7)	7(6.7)	2(2.0)
건설업	0(0.0)	1(5.3)	2(9.5)	2(10.5)	1(5.3)	0(0.0)
금융업	0(0.0)	0(0.0)	1(4.8)	1(5.0)	0(0.0)	0(0.0)
기타서비스업	1(2.7)	1(2.6)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1(20.0)	1(16.7)	0(0.0)
오락, 문화업	1(11.1)	1(11.1)	0(0.0)	0(0.0)	0(0.0)	1(1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1(2.0)	0(0.0)	1(1.7)	1(1.8)	0(0.0)	0(0.0)
제조업	6(1.6)	7(1.8)	2(0.5)	4(1.1)	5(1.5)	2(0.6)
통신방송서비스업	3(13.6)	4(18.2)	3(14.3)	3(14.3)	2(11.8)	1(5.0)

(7)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업이 기업지배구조현장 도입,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등과 같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표 II.1.137>은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를 공시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II.1.137>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30	29	39	33	28	31
비율(%)	4.42	4.23	5.52	4.78	4.19	4.3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5	2	8	7	5	5
비율(%)	0.52	0.20	0.77	0.73	0.59	0.56

- ☐ <표 II.1.138>은 자산규모에 따른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공시율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 비해 공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저조한 공시율을 보임

〈표 II.1.138〉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21 (24.71%)	21 (20.00%)	26 (23.42%)	23 (20.54%)	23 (18.70%)	27 (18.88%)
2조원 미만	9 (1.52%)	8 (1.38%)	13 (2.18%)	10 (1.73%)	5 (0.92%)	4 (0.71%)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2 (1.26%)	1 (0.52%)	3 (1.35%)	4 (1.52%)	2 (0.69%)	2 (0.57%)
1천억원 미만	3 (0.37%)	1 (0.12%)	5 (0.62%)	3 (0.43%)	3 (0.54%)	3 (0.55%)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39〉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에 따른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들보다 총수있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39〉 그룹별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17 (8.76%)	17 (7.39%)	16 (8.99%)	17 (9.34%)	15 (7.77%)	20 (8.97%)
총수없는 기업	5 (25.00%)	6 (27.27%)	5 (27.78%)	4 (25.00%)	5 (29.41%)	4 (20.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40〉은 각 시장 업종별로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를 공시하는 기업의 현황을 나타냄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융업, 은행업, 통신업이 비교적 높은 공시율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통신방송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모범규준과의 차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40〉 업종별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5.3)	3(7.9)	2(5.1)	2(5.4)	2(6.1)	2(6.1)
금융업	2(13.3)	2(13.3)	5(33.3)	5(33.3)	5(33.3)	5(38.5)
기계업	1(2.3)	1(2.4)	2(4.9)	1(2.6)	1(2.7)	1(2.5)
보험업	0(0.0)	0(0.0)	0(0.0)	0(0.0)	0(0.0)	1(7.7)
비금속광물업	0(0.0)	0(0.0)	0(0.0)	0(0.0)	0(0.0)	0(0.0)
서비스업	1(2.9)	2(4.4)	5(6.8)	3(4.0)	3(4)	4(4.5)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1(3.1)	2(6.7)	1(3.4)
운수장비업	0(0.0)	0(0.0)	1(2.1)	0(0.0)	0(0.0)	0(0.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5(10.0)	4(7.5)	3(6.7)	4(9.1)	4(8.9)	3(5.7)
은행업	2(28.6)	2(28.6)	3(50.0)	1(16.7)	1(25.0)	1(33.3)
음식료품업	1(2.8)	1(2.8)	0(0.0)	0(0.0)	0(0.0)	1(2.9)
의료정밀	1(16.7)	0(0.0)	1(25.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업	4(5.7)	3(4.4)	5(7.2)	3(4.5)	2(3.5)	2(3.3)
전기가스업	0(0.0)	1(9.1)	0(0.0)	0(0.0)	0(0.0)	0(0.0)
제조업	1(10.0)	1(11.1)	2(16.7)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0(0.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2(10.0)	2(10.0)	2(9.5)	3(13.6)	1(4.5)	2(9.1)
철강및금속업	1(2.4)	1(2.4)	1(2.3)	1(2.3)	1(2.3)	1(2.2)
통신업	3(75.0)	3(75.0)	3(50.0)	2(66.7)	2(66.7)	1(33.3)
화학업	4(4.4)	3(3.4)	4(4.8)	6(7.1)	3(3.6)	5(5.7)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1(0.4)	0(0.0)	1(0.3)	1(0.4)	0(0.0)	1(0.4)
IT S/W&SVC업	0(0.0)	0(0.0)	1(0.7)	3(2.5)	2(1.9)	2(2.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1(4.8)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1(2.7)	1(2.6)	1(2.0)	2(3.8)	1(2.2)	1(2.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2(0.5)	0(0.0)	3(0.8)	0(0.0)	1(0.3)	0(0.0)
통신방송서비스업	1(4.5)	1(4.5)	1(4.8)	1(4.8)	1(5.9)	1(5.0)

(8) 지배구조 등급 공시

- ☐ 기업이 신용평가등급 외 지배구조 관련 전문기관에서 부여받은 지배구조 평가 등급이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신뢰성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 <표 II.1.141>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이 지배구조 등급을 공시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냄
- 지배구조 등급을 공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많이 나타남

<표 II.1.141>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51	30	46	36	30	36
비율(%)	7.52	4.38	6.52	5.22	4.49	5.0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7	4	4	5	4	3
비율(%)	0.73	0.39	0.39	0.52	0.47	0.34

- ☐ <표 II.1.142>는 자산규모에 따른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지배구조 등급 공시율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조원 미만 기업에 비해 공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배구조 등급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5사를 넘지 않음

〈표 II.1.142〉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28 (32.94%)	24 (22.86%)	36 (32.43%)	10 (8.93%)	24 (19.51%)	29 (20.28%)
2조원 미만	23 (3.88%)	6 (1.03%)	10 (1.68%)	41 (7.09%)	6 (1.1%)	7 (1.23%)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2 (1.26%)	2 (1.04%)	0 (0%)	4 (1.52%)	2 (0.69%)	2 (0.57%)
1천억원 미만	5 (0.62%)	2 (0.24%)	4 (0.49%)	3 (0.43%)	2 (0.36%)	1 (0.18%)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43〉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에 따른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등급 공시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크게 감소하여 총수있는 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

〈표 II.1.143〉 그룹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30 (15.46%)	18 (7.83%)	22 (12.36%)	12 (6.59%)	17 (8.81%)	24 (10.76%)
총수없는 기업	6 (30.00%)	7 (31.82%)	6 (33.33%)	3 (18.75%)	4 (23.53%)	3 (1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44〉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통신업을 비롯한 은행업, 금융업, 보험업에서 지배구조 등급 공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업종과 무관하게 등급 공시율이 낮게 나타남

〈표 II.1.144〉 업종별 지배구조 등급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5(13.2)	3(7.9)	5(12.8)	6(16.2)	4(12.1)	3(9.1)
금융업	3(20.0)	2(13.3)	3(20.0)	1(6.7)	3(20.0)	4(30.8)
기계업	3(7.0)	2(4.8)	2(4.9)	2(5.1)	2(5.4)	2(5.0)
보험업	1(9.1)	1(9.1)	5(45.5)	1(10.0)	1(9.1)	2(15.4)
비금속광물업	2(8.3)	0(0.0)	0(0.0)	3(13.6)	0(0.0)	0(0.0)
서비스업	2(5.9)	2(4.4)	5(6.8)	8(10.7)	3(4.0)	3(3.4)
섬유, 의복업	0(0.0)	0(0.0)	0(0.0)	2(6.3)	0(0.0)	0(0.0)
운수장비업	2(4.4)	1(2.2)	4(8.5)	1(2.2)	0(0.0)	0(0.0)
운수창고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9(18.0)	5(9.4)	4(8.9)	4(9.1)	4(8.9)	5(9.4)
은행업	2(28.6)	2(28.6)	2(33.3)	0(0.0)	2(50.0)	1(33.3)
음식료품업	3(8.3)	1(2.8)	0(0.0)	1(2.9)	0(0.0)	1(2.9)
의료정밀	1(16.7)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0(0.0)	0(0.0)	0(0.0)	3(7.9)	0(0.0)	0(0.0)
전기전자업	4(5.7)	2(2.9)	2(2.9)	3(4.5)	2(3.5)	2(3.3)
전기가스업	1(9.1)	0(0.0)	0(0.0)	0(0.0)	2(20.0)	1(8.3)
제조업	1(10.0)	1(11.1)	2(16.7)	1(9.1)	1(11.1)	1(9.1)
종이목재업	1(4.0)	0(0.0)	0(0.0)	0(0.0)	0(0.0)	0(0.0)
증권업	2(10.0)	1(5.0)	3(14.3)	3(13.6)	1(4.5)	2(9.1)
철강및금속업	0(0.0)	1(2.4)	1(2.3)	6(13.6)	0(0.0)	1(2.2)
통신업	3(75.0)	3(75.0)	4(66.7)	0(0.0)	2(66.7)	3(100.0)
화학업	6(6.6)	3(3.4)	4(4.8)	6(7.1)	3(3.6)	5(5.7)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0)	1(0.3)	1(0.3)	2(0.7)	0(0.0)	0(0.0)
IT S/W & SVC업	1(0.7)	0(0.0)	1(0.7)	2(1.6)	2(1.9)	2(2.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1(2.7)	1(2.6)	1(2.0)	0(0.0)	2(4.3)	1(2.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1(2.0)	0(0.0)	1(1.7)	1(1.8)	0(0.0)	0(0.0)
제조업	2(0.5)	0(0.0)	0(0.0)	2(0.5)	0(0.0)	0(0.0)
통신방송서비스업	2(9.1)	2(9.1)	0(0.0)	0(0.0)	0(0.0)	0(0.0)

(9)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 ☐ 기업은 홈페이지의 투자정보(IR)나 기업소개 면에 각 이사별 성명, 선임일, 임기,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과 같은 주요 이사회 구성 현황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표 II.1.145>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이사회 현황 공시율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II.1.145>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67	159	164	130	114	90
비율(%)	24.63	23.21	23.23	18.84	17.07	12.68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5	8	9	14	8	7
비율(%)	0.52	0.79	0.87	1.46	0.95	0.79

- ☐ <표 II.1.146>은 자산규모에 따른 이사회 구성현황의 홈페이지 공시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공시율이 계속하여 하락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공시율이 미만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146〉 자산규모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45 (52.94%)	53 (50.48%)	57 (51.35%)	47 (41.96%)	49 (39.84%)	48 (33.57%)
2조원 미만	122 (20.57%)	106 (18.28%)	107 (17.98%)	83 (14.36%)	65 (11.93%)	42 (7.41%)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2 (1.26%)	4 (2.08%)	5 (2.24%)	10 (3.8%)	4 (1.37%)	5 (1.43%)
1천억원 미만	3 (0.37%)	4 (0.48%)	4 (0.49%)	4 (0.58%)	4 (0.72%)	2 (0.37%)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47〉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에 따른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없는 기업들의 공시율이 총수있는 기업들보다 높으며, 총수있는 기업들은 2009년부터, 총수없는 기업들은 2008년부터 공시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

〈표 II.1.147〉 그룹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66 (34.02%)	65 (28.26%)	55 (30.90%)	50 (27.47%)	46 (23.83%)	49 (21.97%)
총수없는 기업	7 (35.00%)	10 (45.45%)	7 (38.89%)	6 (37.50%)	5 (29.41%)	5 (2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48〉은 각 시장의 업종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금융업, 통신업, 건설업 순으로 높은 공시율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공시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음

〈표 II.1.148〉 업종별 이사회 구성현황 홈페이지 공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6(42.1)	17(44.7)	19(48.7)	13(35.1)	9(27.3)	10(30.3)
금융업	3(20.0)	4(26.7)	5(33.3)	4(26.7)	6(40.0)	5(38.5)
기계업	5(11.6)	7(16.7)	6(14.6)	9(23.1)	6(16.2)	4(10.0)
보험업	3(27.3)	3(27.3)	2(18.2)	1(10.0)	3(27.3)	3(23.1)
비금속광물업	7(29.2)	6(26.1)	4(18.2)	3(13.6)	4(20.0)	3(14.3)
서비스업	8(23.5)	9(20.0)	16(21.6)	11(14.7)	10(13.3)	6(6.8)
섬유, 의복업	3(8.1)	2(5.7)	1(2.9)	2(6.3.0)	1(3.3)	2(6.9)
운수장비업	12(26.7)	14(30.4)	16(34.0)	17(37.0)	11(25.0)	10(20.4)
운수창고업	3(15.8)	1(4.8)	4(20.0)	3(15.8)	4(21.1)	1(5.3)
유통업	17(34)	16(30.2)	11(24.4)	9(20.5)	9(20.0)	8(15.1)
은행업	3(42.9)	3(42.9)	3(50.0)	2(33.3)	1(25.0)	0(0.0)
음식료품업	10(27.8)	10(27.8)	5(14.3)	1(2.9)	4(11.4)	4(11.4)
의료정밀	1(16.7)	1(20.0)	0(0.0)	0(0.0)	0(0.0)	0(0.0)
의약품업	8(22.9)	8(22.2)	8(21.1)	4(10.5)	7(18.4)	3(7.7)
전기전자업	13(18.6)	15(22.1)	19(27.5)	13(19.7)	10(17.5)	6(10.0)
전기가스업	7(63.6)	6(54.5)	6(60.0)	5(50.0)	5(50.0)	3(25.0)
제조업	5(50.0)	4(44.4)	5(41.7)	3(27.3)	3(33.3)	2(18.2)
종이목재업	1(4.0)	0(0.0)	0(0.0)	1(4.3)	0(0.0)	1(4.2)
증권업	4(20.0)	4(20.0)	7(33.3)	4(18.2)	5(22.7)	5(22.7)
철강및금속업	8(19.5)	6(14.3)	6(14)	6(13.6)	5(11.6)	3(6.7)
통신업	4(100.0)	4(100.0)	3(50.0)	2(66.7)	2(66.7)	1(33.3)
화학업	24(26.4)	18(20.7)	17(20.2)	17(20.2)	9(10.7)	10(11.4)
기타	2(33.3)	1(16.7)	1(16.7)	0(0.0)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0(0.0)	1(0.3)	1(0.3)	3(1.1)	0(0.0)	0(0.0)
IT S/W & SVC업	2(1.4)	1(0.7)	1(0.7)	2(1.6)	3(2.9)	2(2.0)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금융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서비스업	1(2.7)	3(7.9)	3(6.0)	3(5.8)	3(6.5)	3(6.1)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오락, 문화업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0(0.0)	0(0.0)	0(0.0)	1(1.8)	0(0.0)	0(0.0)
제조업	1(0.3)	2(0.5)	3(0.8)	4(1.1)	1(0.3)	2(0.6)
통신방송서비스업	1(4.5)	1(4.5)	1(4.8)	1(4.8)	1(5.9)	0(0)

7) 감사기구

-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기구를 구축하는 것은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임

(1) 상근감사 설치

- ☐ <표 II.1.149>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근감사 설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유가증권시장은 상근감사 설치 기업 수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설치 기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149> 상근감사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390	397	393	387	373	395
비율(%)	57.52	57.96	55.67	56.09	55.84	55.63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44	260	271	288	281	321
비율(%)	25.34	25.57	26.23	30.13	33.22	36.07

- ☐ <표 II.1.150>에서 나타나듯이 상근감사를 설치한 유가증권시장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임
 - 코스닥시장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의 상근감사 설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설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II.1.150〉 자산규모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	-	-	-	-	-
2조원 미만	388 (65.43%)	384 (66.21%)	389 (65.38%)	383 (66.26%)	367 (67.34%)	385 (67.9%)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07 (67.30%)	135 (70.31%)	150 (67.26%)	178 (67.68%)	198 (68.04%)	248 (71.06%)
1천억원 미만	137 (17.04%)	125 (15.15%)	121 (14.94%)	110 (15.87%)	83 (14.95%)	73 (13.49%)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51〉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소속 총수있는 기업의 상근감사 설치가 2012년에 크게 증가함

〈표 II.1.151〉 그룹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83 (42.78%)	105 (45.65%)	70 (39.33%)	64 (35.16%)	66 (34.2%)	119 (53.36%)
총수없는 기업	5 (25.00%)	7 (31.82%)	5 (27.78%)	5 (31.25%)	6 (35.29%)	9 (4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52>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업종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섬유·의복업이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고, 통신업에 속한 기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근감사를 한번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건설업에 속한 기업의 설치율이 크게 증가했고, IT S/W & SVC업에 속한 기업의 상근감사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52> 업종별 상근감사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29(76.3)	31(81.6)	30(76.9)	27(73.0)	23(69.7)	22(66.7)
금융업	1(6.7)	1(6.7)	1(6.7)	1(6.7)	0(0.0)	0(0.0)
기계업	23(53.5)	23(54.8)	26(63.4)	26(66.7)	25(67.6)	27(67.5)
보험업	5(45.5)	5(45.5)	5(45.5)	4(40.0)	2(18.2)	1(7.7)
비금속광물업	13(54.2)	16(69.6)	15(68.2)	14(63.6)	14(70.0)	14(66.7)
서비스업	23(67.6)	27(60)	41(55.4)	43(57.3)	44(58.7)	50(56.8)
섬유·의복업	27(73.0)	27(77.1)	25(73.5)	24(75.0)	23(76.7)	23(79.3)
운수장비업	25(55.6)	26(56.5)	25(53.2)	27(58.7)	26(59.1)	30(61.2)
운수창고업	13(68.4)	15(71.4)	12(60.0)	10(52.6)	11(57.9)	9(47.4)
유통업	24(48.0)	26(49.1)	22(48.9)	19(43.2)	18(40.0)	24(45.3)
은행업	1(14.3)	1(14.3)	1(16.7)	1(16.7)	1(25.0)	1(33.3)
음식료품업	27(75.0)	25(69.4)	24(68.6)	22(64.7)	23(65.7)	22(62.9)
의료정밀	3(50.0)	3(60.0)	3(75.0)	3(75.0)	2(50.0)	2(50.0)
의약품업	21(60.0)	19(52.8)	18(47.4)	19(50.0)	17(44.7)	21(53.8)
전기전자업	32(45.7)	28(41.2)	30(43.5)	31(47.0)	30(52.6)	29(48.3)
전기가스업	5(45.5)	5(45.5)	4(40.0)	4(40.0)	4(40.0)	4(33.3)
제조업	7(70.0)	8(88.9)	7(58.3)	6(54.5)	6(66.7)	6(54.5)
종이목재업	20(80.0)	21(84.0)	19(79.2)	16(69.6)	17(70.8)	17(70.8)
증권업	12(60.0)	12(60.0)	8(38.1)	9(40.9)	10(45.5)	5(22.7)
철강및금속업	24(58.5)	27(64.3)	30(69.8)	31(70.5)	29(67.4)	31(68.9)
통신업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업	50(54.9)	46(52.9)	43(51.2)	46(54.8)	44(52.4)	53(60.2)
기타	5(83.3)	5(83.3)	4(66.7)	4(66.7)	4(66.7)	4(66.7)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64(24.1)	70(23.6)	72(24.1)	81(29.0)	89(33.8)	102(40.3)
IT S/W & SVC업	22(15.1)	25(16.3)	23(16.1)	19(15.6)	20(19.2)	18(18.0)
건설업	9(47.4)	12(63.2)	12(57.1)	12(63.2)	13(68.4)	15(71.4)
금융업	7(33.3)	10(45.5)	9(42.9)	7(35.0)	8(42.1)	7(43.8)
기타서비스업	10(27.0)	11(28.9)	12(24)	13(25.0)	15(32.6)	18(36.7)
기타	1(25.0)	2(50.0)	2(33.3)	3(60.0)	2(33.3)	1(25.0)
오락,문화업	2(22.2)	3(33.3)	3(25.0)	2(20.0)	2(28.6)	4(40.0)
운송업	2(66.7)	2(66.7)	3(75.0)	3(75.0)	3(75.0)	2(40.0)
유통업	14(28.0)	12(23.1)	13(21.7)	16(29.1)	12(33.3)	14(27.5)
제조업	108(28.0)	110(27.6)	118(29.8)	125(33.9)	112(34.5)	135(37.4)
통신방송서비스업	5(22.7)	3(13.6)	4(19.0)	7(33.3)	5(29.4)	5(25.0)

(2) 감사위원회 설치

- ☐ 감사위원회는 경영자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회사의 회계와 공시가 적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감독하는 기구임
- ☐ <표 II.1.153>에서 나타나듯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II.1.153>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45	156	192	205	208	236
비율(%)	21.39	22.77	27.20	29.71	31.14	33.24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22	34	41	42	45	54
비율(%)	2.28	3.34	3.97	4.39	5.32	6.07

□ <표 II.1.154>는 자산규모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수를 나타내고 있음

- 직전년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설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천억원 미만 기업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54> 자산규모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83 (97.65%)	92 (87.62%)	107 (96.40%)	108 (96.43%)	117 (95.12%)	133 (93.01%)
2조원 미만	62 (10.46%)	64 (11.03%)	85 (14.29%)	97 (16.78%)	91 (16.70%)	103 (18.17%)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18 (11.32%)	27 (14.06%)	31 (13.9%)	32 (12.17%)	36 (12.37%)	47 (13.47%)
1천억원 미만	4 (0.50%)	7 (0.85%)	10 (1.23%)	10 (1.44%)	9 (1.62%)	7 (1.29%)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55>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총수 존재 여부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총수있는 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 없는 기업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II.1.155〉 그룹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87 (44.85%)	100 (43.48%)	97 (54.49%)	105 (57.69%)	118 (61.14%)	142 (63.68%)
총수없는 기업	11 (55%)	11 (50%)	10 (55.56%)	9 (56.25%)	10 (58.82%)	9 (4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56〉은 각 시장 업종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금융업, 통신업, 보험업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서는 통신방송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설치율이 높음

〈표 II.1.156〉 업종별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6(15.8)	6(15.8)	8(20.5)	10(27.0)	9(27.3)	10(30.3)
금융업	14(93.3)	14(93.3)	14(93.3)	14(93.3)	15(100.0)	13(100.0)
기계업	3(7.0)	4(9.5)	4(9.8)	6(15.4)	5(13.5)	7(17.5)
보험업	6(54.5)	6(54.5)	6(54.5)	6(60)	9(81.8)	12(92.3)
비금속광물업	2(8.3)	2(8.7)	2(9.1)	2(9.1)	3(15.0)	3(14.3)
서비스업	4(11.8)	8(17.8)	19(25.7)	20(26.7)	22(29.3)	27(30.7)
섬유, 의복업	1(2.7)	1(2.9)	1(2.9)	1(3.1)	1(3.3)	1(3.4)
운수장비업	11(24.4)	11(23.9)	14(29.8)	14(30.4)	12(27.3)	15(30.6)
운수창고업	3(15.8)	4(19.0)	6(30.0)	7(36.8)	7(36.8)	8(42.1)
유통업	15(30.0)	15(28.3)	17(37.8)	17(38.6)	18(40.0)	20(37.7)
은행업	6(85.7)	6(85.7)	5(83.3)	5(83.3)	3(75.0)	2(66.7)
음식료품업	5(13.9)	6(16.7)	6(17.1)	9(26.5)	9(25.7)	9(25.7)
의료정밀	2(33.3)	2(40.0)	1(25.0)	1(25.0)	1(25.0)	1(25.0)
의약품업	7(20.0)	9(25.0)	11(28.9)	14(36.8)	16(42.1)	16(41.0)
전기전자업	10(14.3)	10(14.7)	13(18.8)	13(19.7)	13(22.8)	15(25.0)
전기가스업	6(54.5)	6(54.5)	6(60.0)	6(60.0)	6(60.0)	8(66.7)
제조업	1(10.0)	1(11.1)	2(16.7)	3(27.3)	2(22.2)	2(18.2)
종이목재업	2(8.0)	2(8.0)	2(8.3)	4(17.4)	6(25.0)	6(25.0)
증권업	8(40.0)	8(40.0)	13(61.9)	13(59.1)	12(54.5)	17(77.3)
철강및금속업	8(19.5)	8(19.0)	10(23.3)	11(25.0)	11(25.6)	13(28.9)
통신업	4(100.0)	4(100.0)	6(100.0)	3(100.0)	3(100.0)	3(100.0)
화학업	20(22.0)	22(25.3)	24(28.6)	24(28.6)	23(27.4)	26(29.5)
기타	1(16.7)	1(16.7)	2(33.3)	2(33.3)	2(33.3)	2(33.3)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5(1.9)	6(2.0)	7(2.3)	7(2.5)	7(2.7)	9(3.6)
IT S/W & SVC업	5(3.4)	9(5.9)	8(5.6)	7(5.7)	8(7.7)	8(8.0)
건설업	0(0.0)	0(0.0)	1(4.8)	1(5.3)	1(5.3)	1(4.8)
금융업	3(14.3)	3(13.6)	2(9.5)	3(15.0)	3(15.8)	3(18.8)
기타서비스업	2(5.4)	4(10.5)	4(8.0)	5(9.6)	4(8.7)	5(10.2)
기타	0(0.0)	0(0.0)	0(0.0)	0(0.0)	1(16.7)	1(25.0)
오락, 문화업	0(0.0)	1(11.1)	2(16.7)	2(20.0)	1(14.3)	1(10.0)
운송업	1(33.3)	1(33.3)	1(25.0)	1(25.0)	1(25.0)	1(20.0)
유통업	1(2.0)	1(1.9)	2(3.3)	2(3.6)	2(5.6)	3(5.9)
제조업	1(0.3)	4(1.0)	9(2.3)	10(2.7)	12(3.7)	15(4.2)
통신방송서비스업	4(18.2)	5(22.7)	5(23.8)	4(19.0)	5(29.4)	7(35.0)

(3)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 ☐ <표 II.1.157>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을 시장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2009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57>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가증권시장	90.85	90.86	90.24	89.00	90.30	90.93
코스닥시장	85.32	85.05	93.02	85.21	82.45	85.96

- ☐ <표 II.1.158>는 각 시장 자산규모에 따른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임비율을 보임

- 코스닥시장에서도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58> 자산규모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92.35	91.31	91.06	91.56	90.97	91.23
2조원 미만	88.85	90.21	89.19	86.17	89.41	90.53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93.63	94.23	95.97	93.82	89.12	88.83
1천억원 미만	50.00	55.21	77.78	55.56	74.08	66.67

- ☐ <표 II.1.159>에서 나타나듯이 총수있는 기업과 총수없는 기업은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

〈표 II.1.159〉 그룹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96.14	95.37	96.74	95.76	94.86	94.60
총수없는 기업	94.70	94.70	95.00	94.44	95.00	94.44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60〉는 각 시장 업종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의 섬유·의복업, 통신업이 지속적으로 100%를 유지함

○ 코스닥시장의 운송업이 지속적으로 100%를 유지했으며, 어업 등 1차산업으로 분류된 기타의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1.160〉 업종별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 현황

a. 유가증권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00.00	100.00	95.83	96.67	96.30	96.67
금융업	88.69	86.31	84.53	84.53	81.44	85.90
기계업	88.89	100.00	100.00	94.45	93.33	95.24
보험업	66.67	66.67	72.23	73.61	67.59	70.83
비금속광물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8.89
서비스업	100.00	100.00	96.49	96.67	95.83	96.60
섬유, 의복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운수장비업	100.00	100.00	97.62	97.62	97.44	95.56
운수창고업	93.33	100.00	94.45	95.24	100.00	100.00
유통업	92.00	93.33	95.83	94.90	95.19	96.67
은행업	75.84	77.78	65.34	80.00	77.78	83.33
음식료품업	100.00	100.00	94.45	92.59	90.74	96.30
의료정밀	100.00	100.00	75.00	66.67	66.67	66.67
의약품업	77.38	82.41	88.64	72.03	82.78	88.02
전기전자업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기가스업	77.78	77.78	77.78	83.34	88.89	83.33
제조업	100.00	100.00	100.00	66.67	100.00	100.00
종이목재업	83.34	87.50	83.34	91.67	96.67	100.00
증권업	80.21	78.13	66.67	69.23	67.95	66.67
철강및금속업	91.67	87.50	90.00	87.88	87.88	89.74
통신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화학업	96.67	96.97	93.40	92.01	95.83	93.91
기타	66.67	66.67	83.34	83.34	100.00	100.00

b. 코스닥시장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66.67	72.22	86.67	60.00	76.19	81.48
IT S/W & SVC업	100.00	90.00	100.00	100.00	95.83	91.67
건설업	-	-	100.00	100.00	100.00	100.00
금융업	83.33	83.33	87.50	80.56	80.56	80.56
기타서비스업	100.00	88.89	100.00	93.33	100.00	100.00
기타	-	-	-	-	66.67	66.67
오락, 문화업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운송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유통업	100.00	100.00	83.34	83.34	83.33	77.78
제조업	66.67	75.00	85.19	73.34	80.56	84.44
통신방송서비스업	85.42	88.33	100.00	100.00	86.67	80.95

(4)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 ☐ 외부감사인이 피감회사로부터 감사용역 비용에 상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비감사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
- ☐ <표 II.1.161>는 각 시장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시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1.161>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98	140	137	203	195	162
비율(%)	29.20	20.44	19.41	29.42	29.19	22.82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업 수	168	157	103	152	199	73
비율(%)	17.45	15.44	9.97	15.90	23.52	8.20

- ☐ <표 II.1.162>는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기업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비감사용역 실시율이 미만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에 크게 감소함

<표 II.1.162> 자산규모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조원 이상	43 (50.59%)	46 (43.81%)	50 (45.05%)	56 (50.00%)	56 (45.53%)	34 (23.78%)
2조원 미만	154 (25.97%)	92 (15.86%)	86 (14.45%)	146 (25.26%)	141 (25.87%)	128 (22.57%)
2조원 이상 기업 수	85	105	111	112	123	143
2조원 미만 기업 수	593	580	595	578	545	567

b. 코스닥시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42 (26.42%)	28 (14.58%)	32 (14.35%)	64 (24.33%)	75 (25.77%)	28 (8.02%)
1천억원 미만	126 (15.67%)	129 (15.64%)	71 (8.77%)	88 (12.7%)	124 (22.34%)	45 (8.32%)
1천억원 이상 기업 수	159	192	223	263	291	349
1천억원 미만 기업 수	804	825	810	693	555	541

□ <표 II.1.163>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총수 존재여부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현황임

- 총수있는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다소 감소하였고, 총수없는 기업 비율 역시 2011년까지 증가하다 2012년 감소함

<표 II.1.163> 그룹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있는 기업	81 (41.75%)	63 (27.39%)	63 (35.39%)	67 (36.81%)	73 (37.82%)	48 (21.52%)
총수없는 기업	6 (30.00%)	5 (22.73%)	6 (33.33%)	7 (43.75%)	7 (41.18%)	3 (15.00%)
총수있는 기업 수	194	230	178	182	193	223
총수없는 기업 수	20	22	18	16	17	20

□ <표 II.1.164>에서 나타나듯이, 외부감사인에 비감사용역을 수탁한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주로 화학업, 서비스업에 속해 있음

- 코스닥시장에서는 운송업에 속한 기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 번도 비감사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64〉 업종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실시 현황

a. 유가증권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업	19(50.0)	11(28.9)	6(15.4)	8(21.6)	8(24.2)	12(36.4)
금융업	5(33.3)	5(33.3)	4(26.7)	5(33.3)	5(33.3)	4(30.8)
기계업	12(27.9)	7(16.7)	8(19.5)	14(35.9)	13(35.1)	9(22.5)
보험업	5(45.5)	4(36.4)	0(0.0)	2(20.0)	1(9.1)	6(46.2)
비금속광물업	4(16.7)	5(21.7)	3(13.6)	3(13.6)	8(40.0)	4(19.0)
서비스업	7(20.6)	9(20.0)	22(29.7)	25(33.3)	26(34.7)	19(21.6)
섬유, 의복업	9(24.3)	3(8.6)	2(5.9)	8(25.0)	5(16.7)	5(17.2)
운수장비업	14(31.1)	10(21.7)	12(25.5)	19(41.3)	13(29.5)	10(20.4)
운수창고업	6(31.6)	5(23.8)	4(20.0)	4(21.1)	1(5.3)	4(21.1)
유통업	11(22.0)	8(15.1)	7(15.6)	18(40.9)	21(46.7)	12(22.6)
은행업	3(42.9)	3(42.9)	2(33.3)	2(33.3)	2(50.0)	2(66.7)
음식료품업	10(27.8)	8(22.2)	5(14.3)	8(23.5)	6(17.1)	7(20.0)
의료정밀	2(33.3)	0(0.0)	1(25.0)	1(25.0)	2(50.0)	2(50.0)
의약품업	5(14.3)	3(8.3)	4(10.5)	9(23.7)	10(26.3)	6(15.4)
전기전자업	26(37.1)	12(17.6)	14(20.3)	18(27.3)	25(43.9)	13(21.7)
전기가스업	2(18.2)	4(36.4)	3(30.0)	3(30.0)	4(40.0)	3(25.0)
제조업	0(0.0)	3(33.3)	2(16.7)	1(9.1)	2(22.2)	1(9.1)
종이목재업	8(32.0)	4(16.0)	2(8.3)	5(21.7)	5(20.8)	1(4.2)
증권업	10(50.0)	8(40.0)	6(28.6)	7(31.8)	8(36.4)	8(36.4)
철강및금속업	13(31.7)	3(7.1)	6(14.0)	12(27.3)	10(23.3)	10(22.2)
통신업	2(50.0)	2(50.0)	5(83.3)	3(100.0)	2(66.7)	1(33.3)
화학업	24(26.4)	20(23.0)	18(21.4)	26(31.0)	20(23.8)	23(26.1)
기타	0(0.0)	1(16.7)	0(0.0)	1(16.7)	0(0.0)	0(0.0)

b. 코스닥시장

(괄호는 해당업종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H/W업	46(17.3)	54(18.2)	37(12.4)	55(19.7)	66(25.1)	21(8.3)
IT S/W & SVC업	30(20.5)	31(20.3)	18(12.6)	26(21.3)	34(32.7)	16(16.0)
건설업	4(21.1)	3(15.8)	2(9.5)	3(15.8)	3(15.8)	5(23.8)
금융업	5(23.8)	1(4.5)	2(9.5)	3(15.0)	3(15.8)	1(6.3)
기타서비스업	5(13.5)	3(7.9)	8(16.0)	9(17.3)	7(15.2)	3(6.1)
기타	2(50.0)	0(0.0)	1(16.7)	2(40.0)	1(16.7)	0(0.0)
오락, 문화업	3(33.3)	0(0.0)	1(8.3)	0(0.0)	1(14.3)	1(10.0)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유통업	10(20.0)	6(11.5)	4(6.7)	7(12.7)	8(22.2)	4(7.8)
제조업	58(15.0)	52(13.0)	26(6.6)	44(11.9)	69(21.2)	20(5.5)
통신방송서비스업	5(22.7)	7(31.8)	4(19.0)	3(14.3)	7(41.2)	2(10.0)

2. 사회책임경영 현황

1)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 ☐ 기업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적정수준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해고 관행 뿐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 상해, 질병, 임신, 육아, 노령, 실직, 장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1) 근로자 고용안정 정책 수립 여부

- ☐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고용안정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625사(88.00%)로 전년(475사, 71.11%)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1〉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정책 수립

	2011년	2012년
종합적인 고용안정 정책 수립	27(4.04%)	37(5.21%)
채용, 고용유지, 해고 중 일부 정책만 수립	448(67.07%)	588(82.82%)

(2) 근로자들의 적정 근무시간 유지 방안 마련 여부

- ☐ 올해 적정 근무시간 유지를 위해 근로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0사로, 2011년의 21사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기업에 불과한 실정임
- 일부 기업들의 경우 특정 요일을 정하여 ‘가족의 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적정 근로시간 유지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합한 제도이며 적정 근로시간 유지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II.2.2〉 적정 근무시간 유지 방안 마련 기업

	2011년	2012년
초과근무 방지 프로그램 운영	13(1.95%)	23(3.24%)
법정 근무시간 유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8(1.20%)	17(2.39%)

(3) 근로자 복지혜택 수준

- 유가증권시장 전체 평가대상기업의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수준은 0.79%로 전년대비(0.78%)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가 가장 높은 기업은 KTcs로 매출액의 약 10%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금액 규모로는 삼성전자가 1,047,79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표 II.2.3〉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수준

	2011년	2012년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0.78%	0.79%

2) 노사관계

- ☐ 노사관계에 있어 잦은 갈등은 기업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 건전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1)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

-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는 8.6년으로 2011년(8.7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평가대상 기업 중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가 가장 긴 기업은 S&T모터스로 28년이었음

〈표 II.2.4〉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2011년	2012년
평균 근속년수	8.7년	8.6년

(2) 파업, 태업, 직장폐쇄와 같은 노사분규 발생여부

- ☐ 2011년도에 파업, 태업 등의 직장 내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은 전체 710사 중 20개사(2.81%)로 10개(1.49%)사였던 전년 대비 노사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5〉 노사분규 발생 현황

	2011년	2012년
노사분규 발생 기업	10	20

3) 직장내 보건 및 안전

- ☐ 기업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힘쓰며, 근무 환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1)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 ☐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기업 중 217사이며 2011년(144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6〉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2011년	2012년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144(21.6%)	217(30.6%)

(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설치

- ☐ 2012년 평가에서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84사(11.83%)로 전년(50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외에 자율적으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4사에 불과하여 근로자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상장법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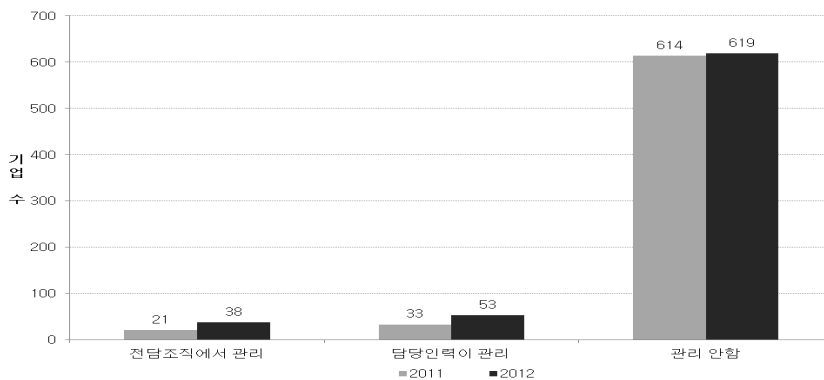
〈표 II.2.7〉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도입

	2011년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 외의 별도 협의기구 운영	5(0.75%)	14(1.97%)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45(6.74%)	70(9.86%)

(3) 산업재해 관련 전담조직 마련 여부

-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8사로 전체 평가대상 유가증권 상장법인 중 5.35%에 불과한 수준임
- 안전보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53사로 전년(33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임
-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전기전자업이 7사로 가장 많았고 담당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화학업이 11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1> 보건·안전 전담조직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근로자의 보건·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기업 중 105사(14.79%)로 2011년 대비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1사(7.18%)이며, 관련부서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사(7.61%)임

〈표 II.2.8〉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2011년	2012년
전직원 대상 교육	29(4.34%)	51(7.18%)
관련부서 직원만 교육	37(5.54%)	54(7.61%)

4) 인력개발 및 지원

- ☐ 기업은 내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력 개발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건강한 양질의 삶을 보장해야 함
- ☐ 근로자 인력개발 및 지원에 관한 2012년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1) 임직원 교육훈련 방침 수립 및 퇴직자 지원제도 운영 여부

- ☐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403사로 2011년(331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 관련 역량 강화 뿐 아니라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창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39사로 전년(28사)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업의 노력이 좀 더 요구됨

〈표 II.2.9〉 임직원 교육훈련 방침 및 퇴직자 지원제도 마련 현황

	2011년	2012년
임직원 교육훈련 방침 수립	331(48.67%)	403(56.76%)
퇴직자 지원제도 운영	28(4.19%)	39(5.49%)

(2) 공정한 기준의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여부

- ☐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임직원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342사(48.17%) 나타남
- 이 중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216사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피드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126사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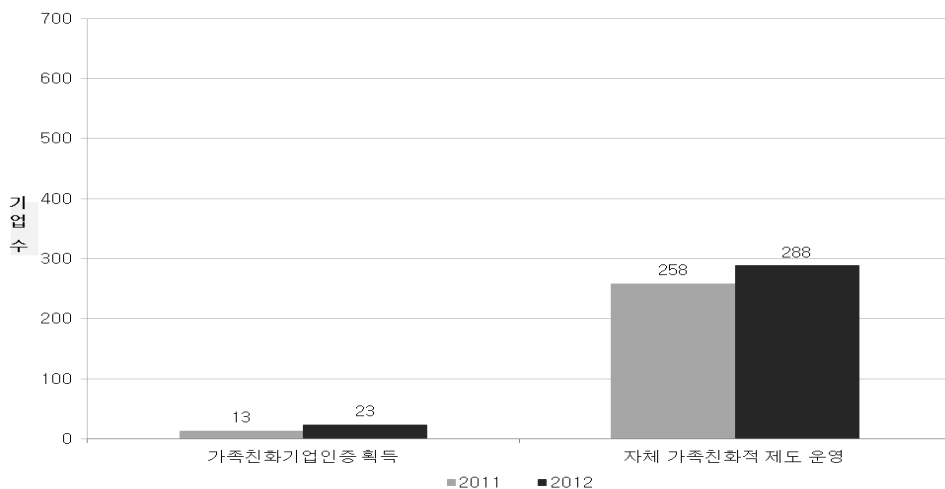
〈표 II.2.10〉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

	2011년	2012년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	248(37.13%)	342(48.17%)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 여부

- 가족친화적 제도란 탄력근무제,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부양가족 지원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012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11사(43.80%)로 전년 대비 소폭(3.23%p) 증가함
 -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23사로, 전년 대비 10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2〉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5) 직장내 기본권

- 기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정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근절, 아동노동 금지, 직장 내 차별금지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

(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외 천명

- 강제노동 근절 및 아동노동 금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있는 전체 평가대상 상장법인은 각각 84사와 94사로 2011년 평가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평가대상 기업 중 12~13% 밖에 안되는 수준임
- 이처럼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척결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는 국내 노동법상 이러한 노동행태가 금지되어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표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법 제도하에서 금지되어 있더라도 이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기업의 인권보호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인권보호 수준이 낮다는 외국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2.11〉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외 공시 현황

	2011년	2012년
강제노동 금지	65(9.55%)	84(11.83%)
아동노동 금지	73(10.73%)	94(13.23%)

(2) 장애인 고용비율 공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강하며,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음
- 장애인 고용비율을 대외 공개하는 기업은 83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법적 고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61사(8.59%)로 나타남

〈표 II.2.12〉 장애인 고용비율 공개 기업 현황

	2011년	2012년
장애인 고용비율 공개	36(5.29%)	83(11.69%)

(3)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행 여부

- 기업들은 업무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업은 인권 차별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소송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1년, 2012년 전체 평가대상 중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72사(10.78%), 102사(14.37%)이며 이 중 성희롱 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61사(9.13%), 81사(11.41%)로 인권 교육 수준이 미진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II.2.13〉 인권 교육 실시 현황

	2011년	2012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실시	11(1.65%)	21(2.96%)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	61(9.13%)	81(11.41%)

6) 공정거래

- ☐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의무가 있음

(1)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및 실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 2012년 유가증권시장 전체 평가대상 중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324사(45.64%)로 작년(38.62%)에 비해 7.02%p증가하였으며, 공정거래 방침에 따라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82사(25.64%)로 작년(21.7%)에 비해 3.94%p 증가하였음
-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92%인 167사가 프로그램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14〉 공정거래 방침 및 실천 프로그램 수립

	2011년	2012년
공정거래 방침 도입	258(37.94%)	324(45.63%)
공정거래 프로그램 운영	145(21.32%)	182(25.63%)

(2) 협력사에 대한 물적, 지적 재산권 존중 원칙 수립

- ☐ 협력사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2012년 평가에서 협력사의 재산권 존중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90사(12.68%)로 전년 대비 5.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15〉 협력사 재산권 존중 원칙 도입

	2011년	2012년
협력사 재산권 존중 원칙 도입	51(7.63%)	90(12.68%)

7) 부패방지

- ☐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권력 남용, 뇌물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여 협력사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1)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방지 원칙 수립 및 부패방지 전담 조직 유무

- ☐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발생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 기업 중 254사로 2011년 평가(174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금년도 평가에서 180사로 조사되어 전년도(109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협력사 또는 기업 내부비리를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기업 중 106사로 전년도의 69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담조직 외에도 사내 감사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74사로 나타남

〈표 II.2.16〉 부패방지 내부원칙 수립 및 부패방지 전담조직 운영

		2011년	2012년
부패방지 내부원칙 수립		174(26.05%)	254(35.77%)
부패방지 전담조직 운영	사내감사팀	40	74
	별도조직 운영	69	106

(2) 부패방지 윤리교육 실시 여부

- ☐ 내부통제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는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2012년 유가증권시장 전체 평가대상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87사(12.25%)이며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47사(6.62%)로 나타남
 - 2011년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 54사였고, 관련부서 직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39사였음

〈표 II.2.17〉 부패방지 윤리교육 실시

	2011년	2012년
전 직원 대상 실시(%)	54(8.08%)	87(12.25%)
관련부서 직원 대상 실시(%)	39(5.84%)	47(6.62%)

(3)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성과 관리

- ☐ 금년도 평가에서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 기업 중 81사로 조사되어 전년(55사)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패방지 노력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제고 노력은 아직 낮은 수준임

〈표 II.2.18〉 정기적인 부패방지 성과 관리 기업 현황

	2011년	2012년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성과 관리	55(8.08%)	81(11.40%)

8)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촉진

□ 기업은 자사의 사회적 책임 뿐 아니라 조달 및 구매 등의 실행과정에서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도 촉진해야 하며 협력사의 사회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는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고 최근 국제적으로 협력사들에 대한 윤리경영 개선 및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아직 협력사에게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실천 요구가 낮은 실정임

(1) 협력사 선정시 협력사의 윤리경영 수준 고려 여부

□ 협력사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심사 항목에 윤리경영 요소를 포함하고 윤리경영 우수 실천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의 윤리적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협력사 선정 시 윤리경영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39사(5.49%)로 전년(22사)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임

〈표 II.2.19〉 협력사 선정 시 윤리경영 수준 반영

	2011년	2012년
협력사 선정시 협력사 윤리경영 고려	22(3.29%)	39(5.49%)

(2) 협력사 윤리경영 수준 정기 관리

□ 주요 협력사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기업은 33사(4.65%)로 조사되었고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재입찰 심사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21사(2.96%)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9사, 12사가 증가함

〈표 II.2.20〉 협력사 윤리경영 수준 정기 관리 및 관리결과 재입찰심사 반영

	2011년	2012년
협력사의 윤리경영 수준 정기 관리	24(3.59%)	33(4.65%)
관리결과 재입찰 심사에 반영	9(1.35%)	21(2.96%)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침에 대한 협력사 교육 및 안내 여부

-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기업인 710사 중 기업의 사회적책임 방침 등을 협력사들에게 교육 또는 안내하는 기업은 65사(9.15%)로 전년 대비 3.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침에 대하여 협력사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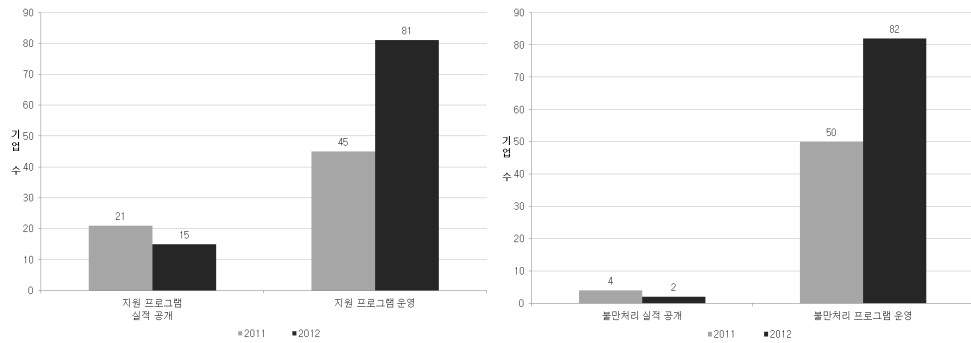
〈표 II.2.21〉 협력사 대상 사회적 책임 방침 교육 및 안내

	2011년	2012년
정기적 실시	28(4.19%)	36(5.07%)
비정기적 실시	10(1.50%)	29(4.08%)

(4)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불만처리 프로세스 운영 여부

-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 66사(9.88%)에서 올해 96사(14.38%)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원프로그램의 실적까지 공개하는 기업은 작년 21사(3.14%)에서 올해 15사(2.25%)로 감소하였음
- 한편, 불만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작년 54사에서 올해 84사로 역시 소폭 증가하였지만, 불만처리 프로그램의 실적까지 공개하는 기업은 작년 4사에서 2사로 감소하였음
-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등은 협력사의 발전을 견인하고 상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임

〈그림 II.2.3〉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및 불만처리 프로세스 운영



9) 소비자에 대한 사회책임활동

- ☐ 기업은 소비자와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집, 사용,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의견을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해야 함

(1)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여부

- ☐ 2012년 평가에서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180사(25.35%)로 전년(103사) 대비 9.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와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준수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관련된 공정거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II.2.22〉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2011년	2012년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방침 수립	103(15.42%)	180(25.35%)

(2)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서비스 원칙 수립 및 인증 취득

-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기준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발생가능한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인 제공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외부 인증 취득을 통해 시장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음
- 2012년 평가에서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227사로 나타났으며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외부 인증 취득 기업은 199사로 증가함

〈표 II.2.23〉 제품·서비스 제공 원칙 수립 및 제품·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인증 취득

	2011년	2012년
제품 및 서비스 제공원칙 수립	182(27.25%)	227(31.97%)
제품 및 서비스 안전에 대한 인증 취득	128(19.16%)	199(28.03%)

(3) 임직원 대상 소비자 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 뿐 아니라 전 직원, 외주업체에도 고객정보 처리프로세스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소비자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은 113사(15.92%)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주업체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역시 3사에서 9사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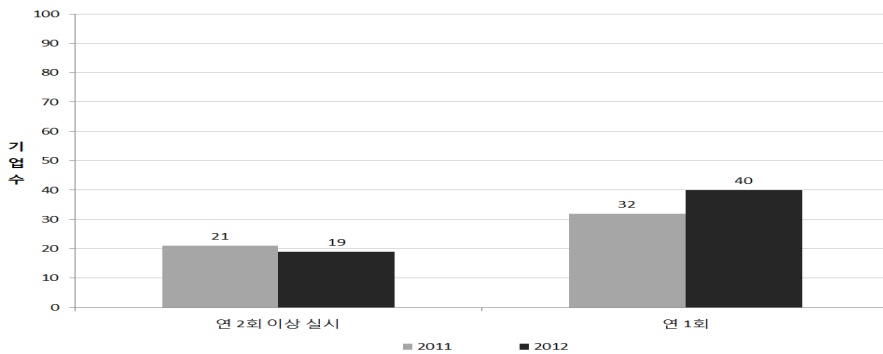
〈표 II.2.24〉 소비자 정보보호 교육 실시

	2011년	2012년
외주업체 대상 교육 실시	3(0.45%)	9(1.27%)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17(2.54%)	25(3.52%)
담당부서 대상 교육 실시	13(1.95%)	79(11.13%)

(4)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만족도 증가 여부

-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만족 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임
- 2012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40사(5.63%)였으며,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9사(2.68%)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 중, 가장 최근 만족도 조사결과 이전 조사결과 대비 만족도가 증가한 기업은 작년 11사(1.65%)에서 올해 18사(2.54%)로 증가함

〈그림 II.2.4〉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표 II.2.25〉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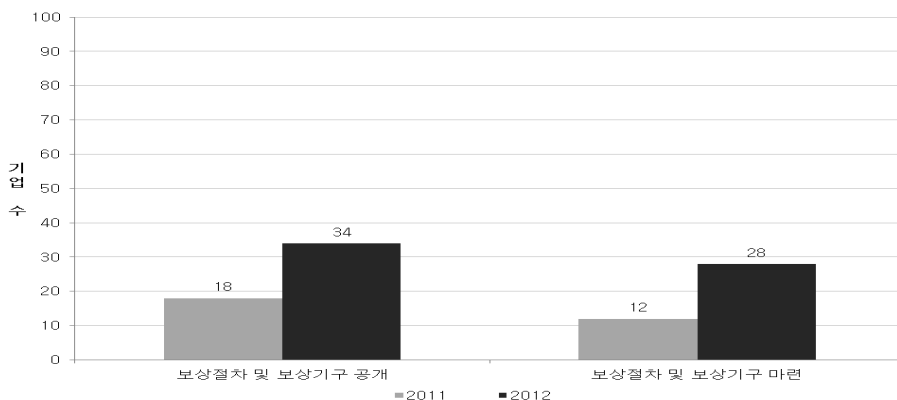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	11(1.65%)	18(2.54%)

(5) 소비자 피해 보상절차 및 보상기구 마련 여부

□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및 기구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2011년 12사(1.80%)에서 28사(3.94%)로 증가했으며 보상절차 및 보상기구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 18사(2.69%)에서 올해 34사(4.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부합하는 보상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신뢰성 및 피해보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II.2.5〉 소비자 피해 보상절차 및 보상기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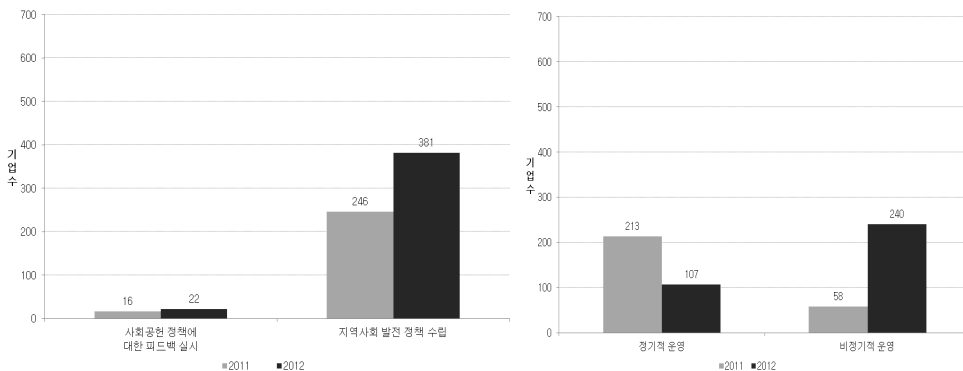
10)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 기업은 기부금 제공, 봉사활동 수행, 교육 기회 증대, 문화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함

(1) 지역사회 공헌활동 정책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여부

-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정책과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사회공헌활동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403사(56.76%)이며 이 중 22사가 정책에 대한 피드백 과정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 213사(31.89%)에서 올해 107사(15.07%)으로 감소한 반면, 비정기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 58사(8.68%)에서 올해 240사(33.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6〉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2) 사회공헌기금 현황

- 전체 평가대상기업 중 사회공헌기금을 지출하고 있는 기업은 552사(82.63%)이며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 평균은 0.17% 수준으로 전년(0.16%)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공헌기금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여전히 삼성전자이며 그 뒤는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순으로 나타남

〈표 II.2.26〉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 수준

	2011년	2012년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 수준	0.16%	0.17%

(3)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여부

-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장사는 173사로 전년 대비 3.11%p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표창 제도 및 우수 사례 공유 등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II.2.27〉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2011년	2012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142(21.26%)	173(2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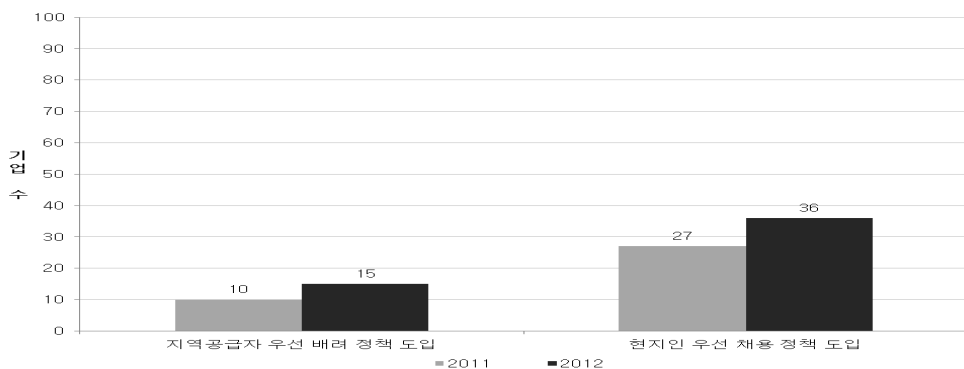
11)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 기업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 기업과의 다양한 쌍방향 의사소통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201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수준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역경제 분야는 여전히 전체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가장 낮은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1) 지역공급자 우선 배려 및 현지인 우선 채용 정책 도입

- 2012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지역 공급자를 우선 배려하고 있는 기업은 15사(2.11%)로 전년(10사)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근로자 채용시 현지인 우선 채용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 또한 36사(5.07%)로 전년(27사)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 공급자를 배려하고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어 바람직함

<그림 II.2.7> 지역 공급자 우선 배려 및 현지인 우선 채용 정책 마련



(2) 지역사회 주민과의 대화채널 운영 여부

- 전체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 20사(2.99%)에서 올해 45사(6.34%)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 중 주기적으로 대화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은 14사, 비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31사로 조사됨

〈표 II.2.28〉 지역 주민과의 대화채널 운영

	2011년	2012년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 운영	20(2.99%)	45(6.34%)

3. 환경경영 현황

1) 환경전략

- ☐ 최고경영자는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 및 방침,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경영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1)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표명

- ☐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의 시작은 최고경영자가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시장기업 중 500사(70.42%)가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남
-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의 발간이나 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 등으로 표명함

〈표 II.3.1〉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표명

	2011년	2012년
환경경영 실천의지 표명	366(54.79%)	500(70.42%)

(2) 환경경영 실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부여

- ☐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기업의 비전으로 제시되면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구조를 설계·구축해야 함
- 2012년은 419사(59.01%)로 2011년 327사(48.95%)에 비해 그 수가 증가함
- 상장기업의 환경자원(용수·폐기물·에너지·온실가스 등)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하고 취합해서 보고·운영토록 하는 직간접 제도가 많아짐에 따라 환경경영 전담팀 등 실무추진조직이 작년에 비해 다소 많아진 경향이 있음

〈표 II.3.2〉 환경경영 실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부여

	2011년	2012년
환경조직 역할 책임 및 권한 부여	327(48.95%)	419(59.01%)

(3) 최고경영자에게 환경성과 및 개선결과 보고

- ☐ 최고경영자에게 환경성과 및 개선결과를 보고하여 환경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업은 2012년 367사(51.69%)로 2011년 412사(61.68%)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이는 최고경영자 대신 환경관련 총괄 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II.3.3〉 최고경영자에게 환경성과 및 개선결과 보고

	2011년	2012년
환경성과 및 개선결과 보고	412(61.68%)	367(51.69%)

(4) 환경경영 투자계획 수립여부

-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없이 환경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계획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유형 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업 위주로 수립되어 있음

〈표 II.3.4〉 환경경영 실천의지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2011년	2012년
투자계획 수립여부	220(32.93%)	382(53.80%)

(5) 환경전략 및 방침 수립현황

- ☐ 전사적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전략과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299사(44.76%)로 나타남

〈표 II.3.5〉 환경전략 및 방침 수립

	유가증권시장	
	2011년	2012년
환경방침수립	299*(44.76%)	392(55.21%)
환경전략수립		116(16.34%)

* : 2011년 평가는 환경방침 및 전략을 통합하여 조사하였음

2) 환경조직

- 기업의 환경문제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를 모색할 수 있음. 또한 실제 환경경영 체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 나아가 환경방침이나 성과 개선계획을 마련해두었다라도 조직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개선결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고경영진 차원의 조직역량 검토와 정기 환경활동 논의는 필수라 할 수 있음

(1) 환경경영 조직체계의 적정성

- 환경경영 실무추진조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은 212사(29.86%)로 작년 147사(22.01%)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환경민감도 ‘상’ 과 ‘중’ 에 속한 업종은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전담조직을 전반적으로 잘 구성하여 두고 있는데 반해, 금융업(13.64%), 기타서비스업(25.0%) 등 환경민감도 ‘하’ 의 경우 환경전담 실무추진조직 구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이사회에서 환경경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기업 수는 40사(5.63%)로 2011년 13사(1.95%)에 비해 증가함
- 대부분 신재생 설비투자안전 등 대규모 투자승인을 요구하는 이사회 의무 안전으로서 화학업, 전기전자업이 다수임

〈표 II.3.6〉 환경경영 조직

	2011년	2012년
녹색경영 실무추진조직 보유	147(22.01%)	212(29.86%)
전사적 의사결정 조직	66(9.88%)	98(13.80%)
이사회 내 환경경영 검토 유무	13(1.95%)	40(5.63%)

〈표 II.3.7〉 업종별 환경경영 조직 유무

민감도	업종	업종 구성 기업 수	녹색경영 실무전담 조직보유 유무		이사회내 환경경영 검토 유무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상	건설업	37	19	51.35	5	13.51
	비금속광물업	21	8	38.10	2	9.52
	섬유의복업	33	2	6.06	1	3.03
	운수장비업	44	9	20.45	0	0.00
	전기전자업	61	17	27.87	4	6.56
	전력가스업	12	4	33.33	5	41.67
	조선업	7	6	85.71	0	0.00
	철강금속업	46	17	36.96	2	4.35
	화학업	86	44	51.16	10	11.63
중	기계업	42	9	21.43	2	4.76
	기타제조업	13	5	38.46	0	0.00
	운수창고업	19	8	42.11	0	0.00
	음식료품업	43	11	25.58	3	6.98
	의약품업	40	12	30.00	0	0.00
	종이목재업	24	9	37.50	0	0.00
	통신업	3	2	66.67	2	66.67
하	금융업	44	6	13.64	1	2.27
	기타서비스업	44	11	25.00	2	4.55
	유통업	49	5	10.20	1	2.04
	지주회사	42	8	19.05	0	0.00

3) 환경경영

- ☐ 기업은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의 선행적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제품 개발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개함. 환경경영 활동으로서 목표 및 계획수립, 청정생산시스템, 환경위험관리, 성과관리 등이 있음

(1) 환경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여부

- ☐ 기업은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이 때 목표는 조직의 성격,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숙지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함
- ☐ 당해년도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411사(57.89%)로 2011년 320사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장기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404사(56.90%),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공개하고 있는 기업도 405사(57.04%)로 증가함
-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확대에 따른 적용 대상업체의 증가로 인해 주무기관에 에너지원 이행계획실적서를 제출하고 관리해야하는 기업들이 증가한데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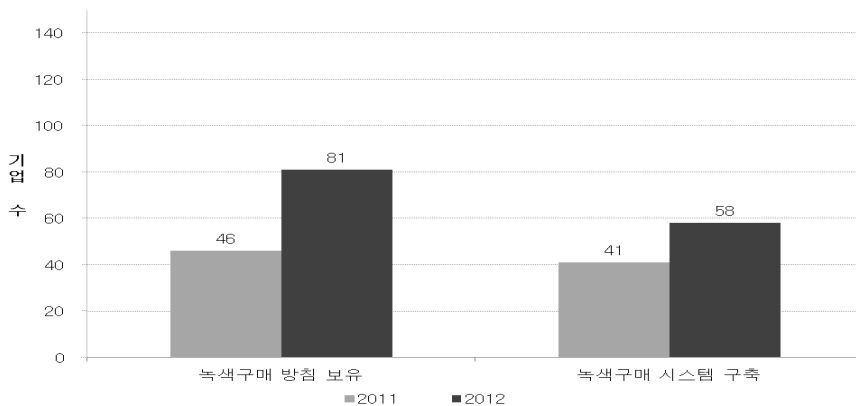
〈표 II.3.8〉 환경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2011년	2012년
당해년도 환경목표 수립	320(47.90%)	411(57.89%)
중·장기 환경목표 수립	320(47.90%)	404(56.90%)
세부추진계획 수립	321(48.05%)	405(57.04%)

(2) 녹색구매 방침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국내외 환경규제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U에서는 제품의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더욱 강조하여 제품생산자는 제품사용 후 재활용과 부품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함
-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환친법)」에 근거하여 친환경공급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위해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를 설립하고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함
- 현재 녹색구매 방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81사(11.41%)에 불과하고,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58사(8.17%)로 매우 미비한 수준임

〈그림 II.3.1〉 녹색구매 방침 및 시스템 구축현황



(3) 공급업체 지원체계

- 기업은 제품 및 상품의 환경성 개선을 위해서 공급사에서 구매하는 부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공급사의 환경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친환경공급망관리 활동으로는 협력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지도, 녹색구매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 환경교육 실시, 환경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됨
 - 또한, 친환경공급망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공급망관리 체계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120사(16.90%)로 작년 53사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공급업체의 원자재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기업 수도 2011년 31사(4.64%)에서 2012년 61사(8.59%)로 증가함
 - 친환경공급망 전반적인 활동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기업 수도 54사(7.61%)로 2011년 29사(4.34%)에 비해 크게 늘어남

〈표 II.3.9〉 친환경공급망 관리 구축 현황

	2011년	2012년
친환경공급망관리	53(7.96%)	120(16.90%)
공급업체 환경정보 관리	31(4.64%)	61(8.59%)
공급업체 환경성과평가 실시	29(4.34%)	54(7.61%)

(4) 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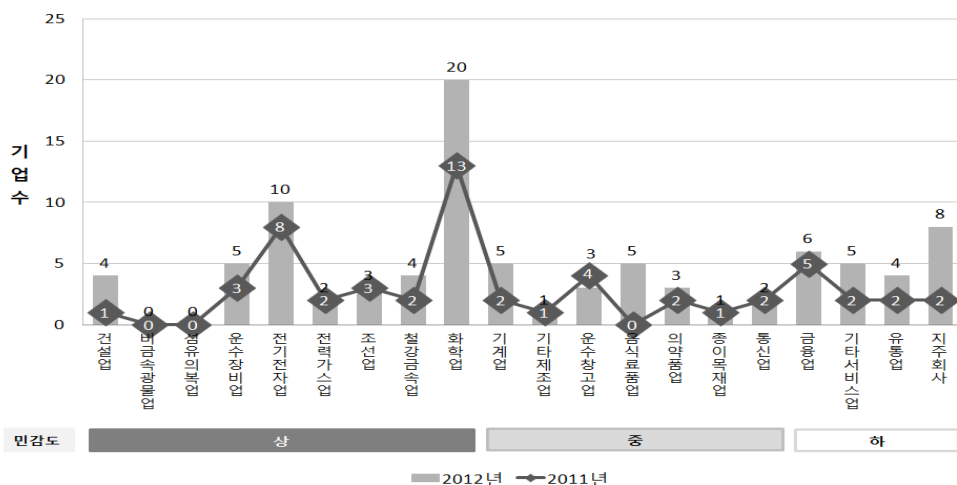
가. 용수 사용량 관리

-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수 사용량을 측정·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91사(12.82%)임
-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업(20사)이 가장 많고, 전기전자업(10사), 지주회사(8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환경민감도 ‘하’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와 ‘금융업’의 경우, 건물사옥의 용수사용량 관리를 통해 절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3.10〉 용수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011년	2012년
용수 사용량 관리 기업 수	55(8.23%)	91(12.82%)

〈그림 II.3.2〉 업종별 용수 사용량 관리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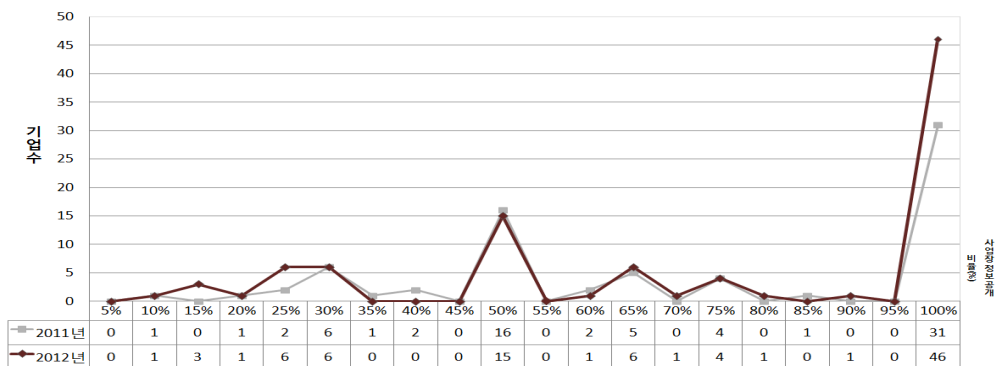
나.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 관리

□ 용수사용량 관리 사업장의 범위는 개별 기업의 전체 사업장 대비 용수 사용량을 공개한 사업장 비율을 의미함

- 2012년 개별 사업장에서 용수사용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은 92사(12.96%)로 전년도 69사(10.38%)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전사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용수사용량을 측정·공개하는 기업 역시 46사(6.48%)로 전년도 31사(4.64%)에 비해 증가함

$$\text{용수관리 사업장 범위}(\%) = \frac{\text{용수 사용량 공개 사업장 수}}{\text{전체 사업장 수}} \times 100$$

〈그림 II.3.3〉 용수 정보공개 사업장 공개현황



(5) 에너지

가. 에너지 사용량 관리

- 지난 해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한 기업이 80사(11.98%)에 그쳤던 것에 반해 올해는 목표관리제 시행확대 등의 이유로 187사(26.34%)로 증가함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업체와 사업장 단위로 나누어 관리업체 지정을 1차('11년 12.31까지), 2차('12년 1.1부터), 3차('14년 1.1부터)로 정해두고 업체를 확대해나갈 예정임(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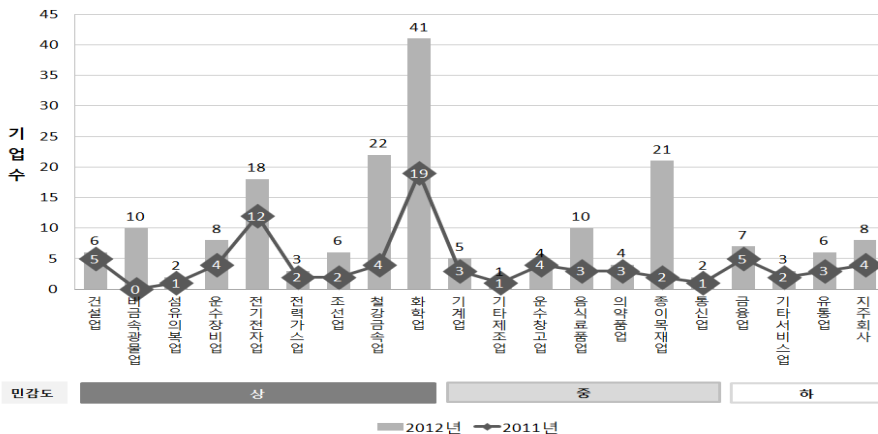
〈표 II.3.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 (kilotonnes CO ₂ -eq)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 이상	500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87.5 이상	350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50 이상	200 이상

〈표 II.3.12〉 에너지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011년	2012년
에너지 사용량 관리 기업 수	80(11.98%)	187(26.34%)

〈그림 II.3.4〉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관리 기업 수



나.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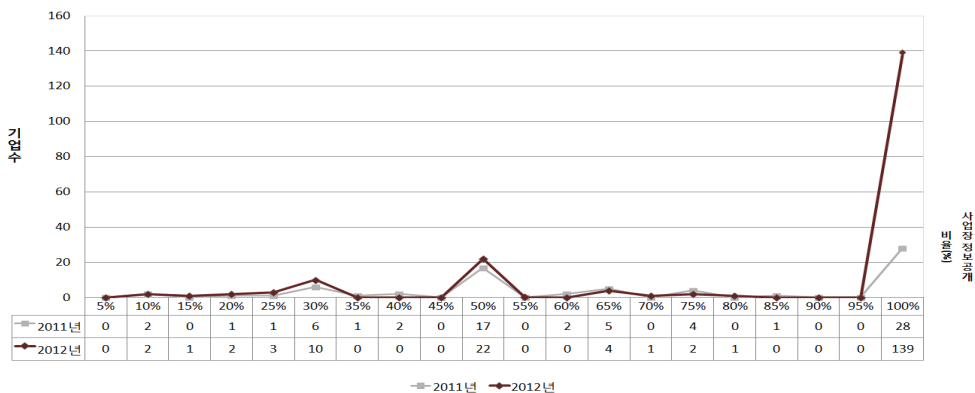
□ 에너지 사용량 관리 사업장 공개범위는 개별 기업의 전체 사업장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한 사업장 비율을 의미함

○ 하나 이상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공개하고 있는 기업 수는 187사(26.34%)로 전년도 79사(11.83%)에 비해 크게 증가함

- 특히 전사 관리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공개하는 기업이 139사(19.58%)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28사(4.19%)에 비해 대폭 증가함
- 이는 목표관리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개별사업장 관리수준에서 단위 업체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공개하는 기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text{에너지관리사업장 범위 (\%)} = \frac{\text{에너지사용량 공개사업장수}}{\text{전체 사업장수}} \times 100$$

〈그림 II.3.5〉 에너지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6) 원·부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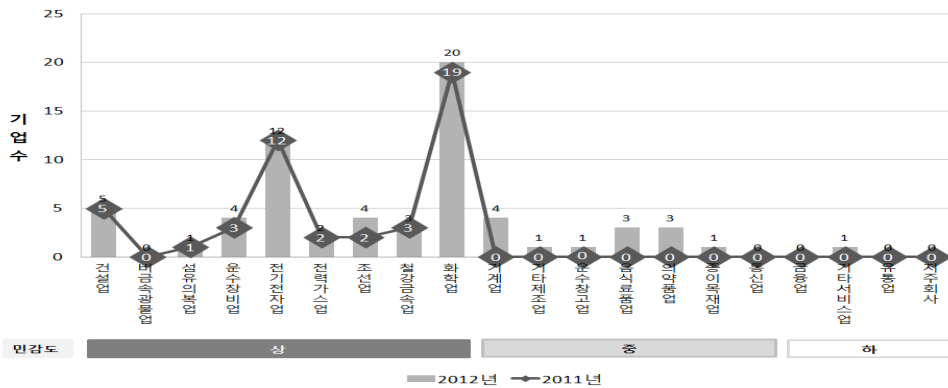
가.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원·부자재 사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65사(9.16%)임

〈표 II.3.13〉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기업 수

	2011년	2012년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기업 수	50(7.49%)	65(9.16%)

〈그림 II.3.6〉 업종별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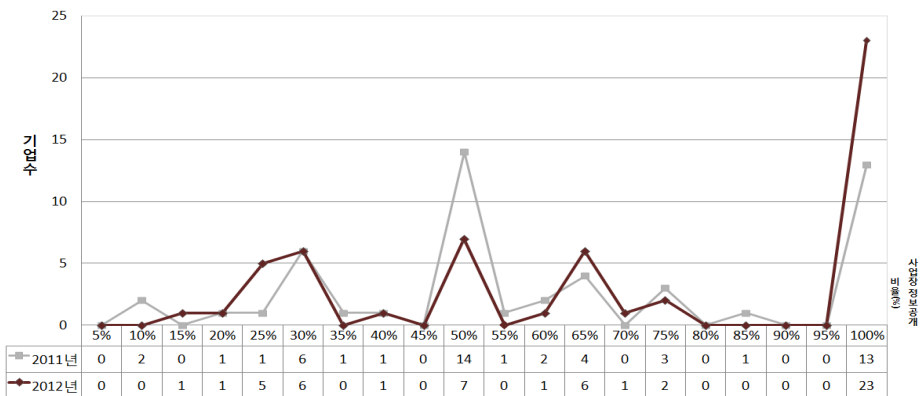
나. 사업장별 원·부자재 관리

□ 원·부자재 사업장 공개범위는 개별 상장법인의 전체사업장대비 원·부자재 사용량을 공개한 사업장 비율을 의미함

- 하나 이상 사업장에서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공개하고 있는 기업 수는 54사(7.61%)로 전년도 49사(7.35%)에 비해 소폭 증가함

$$\text{원·부자재 관리 사업장 범위 (\%)} = \frac{\text{원·부자재 사용량 공개 사업장 수}}{\text{전체 사업장 수}} \times 100$$

〈그림 II.3.7〉 원·부자재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7)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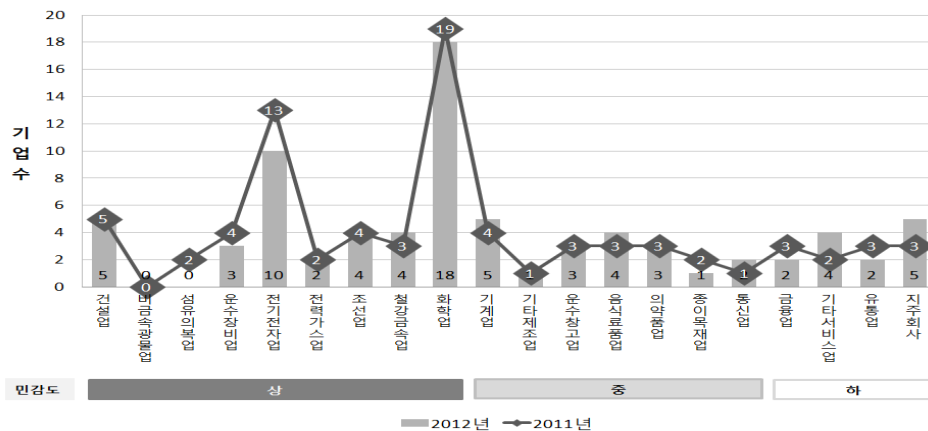
가. 폐기물 배출량 관리

-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취합·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78사 (10.99%)이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업(18사), 전기전자업(10사), 건설업(5사)과 지주회사(5사)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 II.3.14〉 폐기물 배출량 관리 기업 수

	2011년	2012년
폐기물 배출량 관리 기업 수	80(11.98%)	78(10.99%)

〈그림 II.3.8〉 업종별 폐기물 배출량 관리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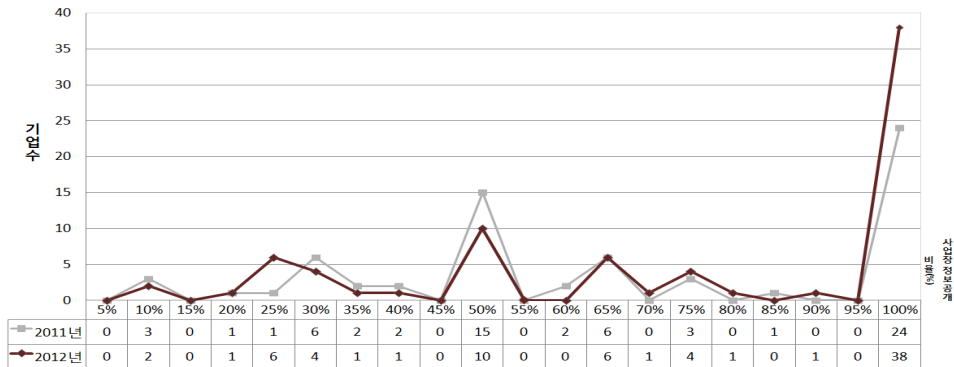


나. 사업장별 폐기물 배출량 관리

- 폐기물 사업장 공개범위는 개별 상장법인의 전체 사업장 대비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한 사업장 비율을 의미함
- 하나 이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76사 (10.70%)로 전년도 66사(9.88%)에 비해 다소 증가함

$$\text{폐기물 배출량 관리 사업장 범위 (\%)} = \frac{\text{폐기물배출량 공개 사업장 수}}{\text{전체 사업장 수}} \times 100$$

〈그림 II.3.9〉 폐기물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8)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설계활동

- 제품 및 서비스 개발단계에서 비용, 품질과 함께 전 과정에 대해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593사 (83.52%)로 나타남
- 기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¹⁾,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²⁾,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³⁾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정의 녹색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2)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91호)]
- 3)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6호)]

- 업종별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금융업은 녹색펀드, 예·적금 활성화를 통한 녹색금융상품설계활동, 건설업은 친환경 건설마감재 개발 및 공간연구, 운수창고업은 친환경 항공기 조립 및 설계활동 등의 특징을 보임

〈표 II.3.15〉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설계활동

	2011년	2012년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설계활동	366(53.20%)	593(83.52%)

(9) 대기·수질 오염물질

가. 대기·수질 오염물질 관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을 측정하고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66사(19.02%)이며, 폐수 중 오염물질(COD, BOD, SS)에 대해 측정·관리하고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68사(19.6%)임

〈표 II.3.16〉 대기·수질 오염물질 관리 기업 수

	2011년	2012년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업 수	66(18.13%)	66(19.02%)
수질오염물질 관리 기업 수	60(16.48%)	68(19.60%)

* 상기 지표는 환경민감도 '상'에 해당함 【2011년(364사)/2012년(347사)】

나. 사업장별 대기·수질오염물질 관리

- 대기(수질)오염 물질 사업장 공개범위는 개별 상장법인의 전체사업장대비 대기 배출량을 공개한 사업장 비율을 의미함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사업장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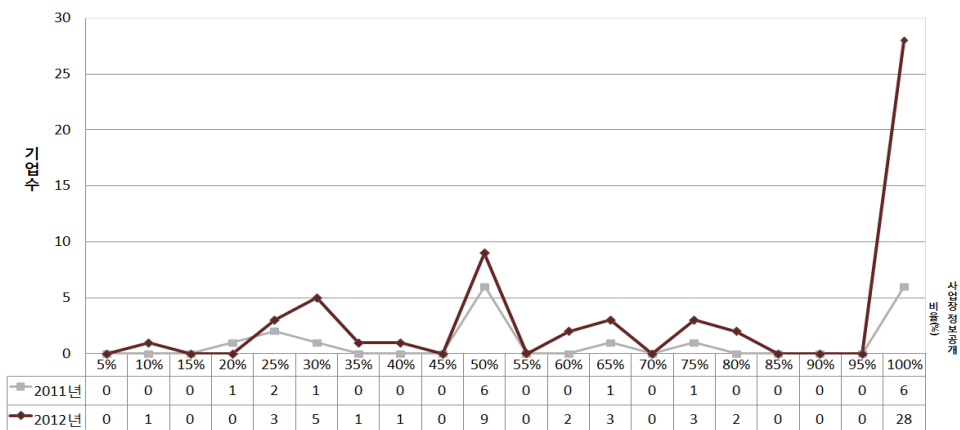
$$= \frac{\text{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사업장 수}}{\text{전체 사업장 수}} \times 100$$

① 대기오염 물질

□ 대기오염물질인 NOx, SOx, 먼지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한 사업장이 하나 이상인 사업장 공개 기업수가 58사(8.17%)로 전년도 18사(2.54%)에 비해 대폭 증가함

- 특히 대기오염 물질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이 아닌, 전사적 관리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관리하고 공개한 기업이 28사로 전년도 6사에 비해 많이 증가함

〈그림 II.3.10〉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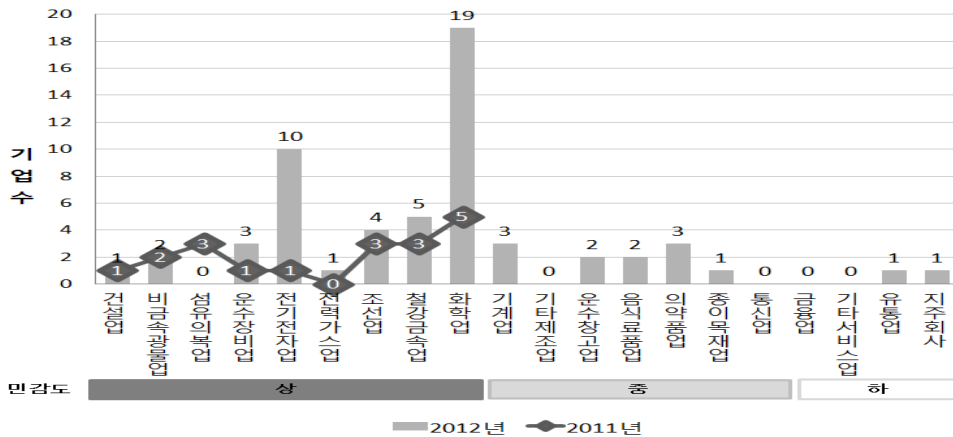


□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민감도 ‘상’ 에서 화학업이 범규 배출허용기준보다 자체관리수준을 강화하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장별 범규허용기준대비 실제배출량과 차이를 공개한 업종은 화학업(19사)이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업(10사), 철강금속업(5사)가 그 뒤를 이음
- 특히, 화학업과 전기전자업은 전년도보다 각각 14사, 9사 증가하였는데,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수단(예.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조사, 지속가능보고서, 환경보고서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민감도 ‘중’에서는 의약품업(3사), 음식료품업(2사), 운수창고업(2사), ‘하’에서는 유통업(1사)과 지주회사(1사)가 각각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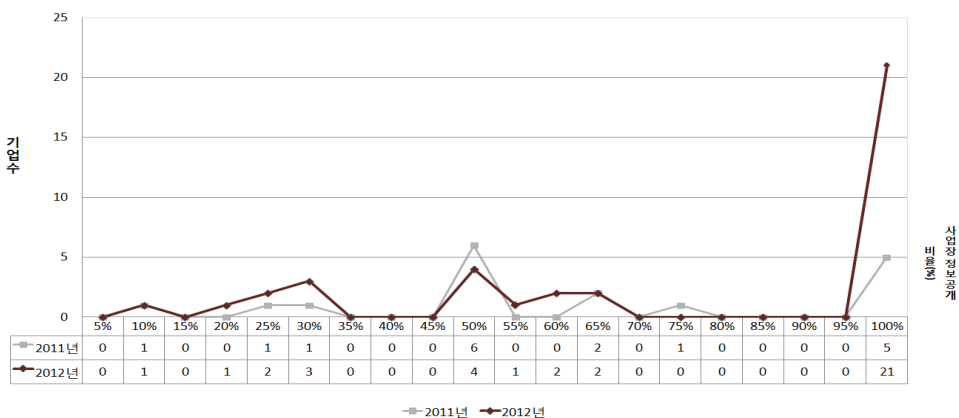
〈그림 II.3.11〉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관리 공개 기업현황



② 수질오염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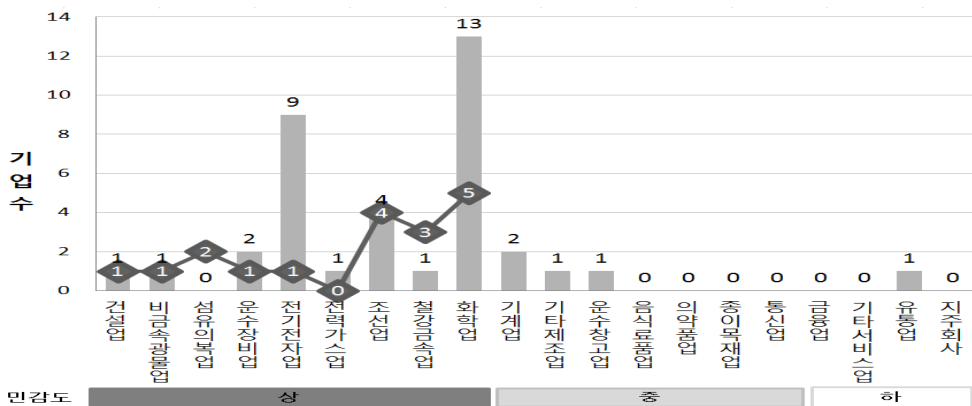
- 수질오염 물질인 BOD, COD, SS 등의 배출량을 사업장별로 관리 및 공개하고 있는 기업 수는 37사(5.21%)로 전년도 17사(2.39%)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기업은 21사(2.96%)에 달해 지난 해 5사(0.75%)에 비해 수치가 크게 증가함

〈그림 II.3.12〉 수질오염물질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민감도 ‘상’에서는 화학업(13사)이 사업장관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학업과 전기전자업은 작년보다 각 8사씩 증가하여 타 업종에 비해 사업장 정보공개 증가가 두드러짐
- 민감도 ‘중’에서는 기계업(2사), 기타제조업(1사), 운수창고업(1사), ‘하’에서는 유통업(1사)이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그림 II.3.13〉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관리 공개 기업현황



(10) 유해화학물질⁴⁾

가. 화학물질 유통량 관리현황

- OECD 환경규정 등 국제협약에서 화학물질의 유통량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위해성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별 제조·수입·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시 누출원인을 신속하게 추적,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제도를 마련함⁵⁾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정의)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대상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 일부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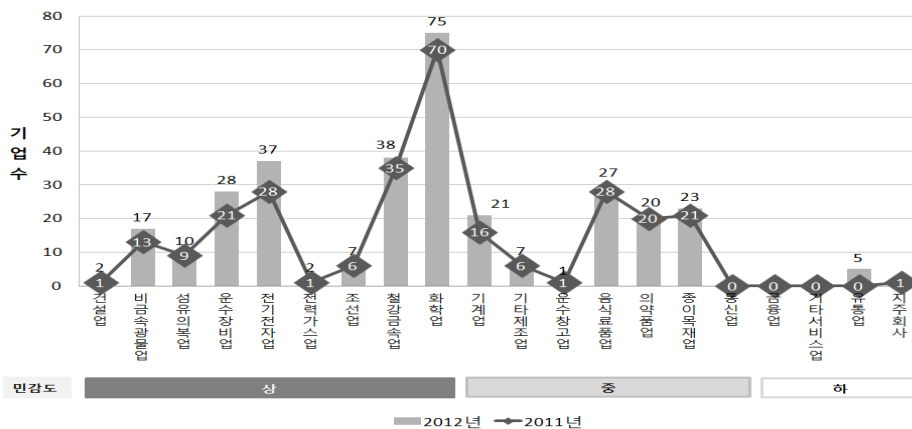
- 사업장에서 취급한 화학물질에 대해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 유통량을 관리·기록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320사(45.07%)로 전년도 277사(41.47%)에 비해 소폭 증가함

〈표 II.3.17〉 화학물질 유통량 공개 기업 수

	2011년	2012년
화학물질 유통량 공개 기업 수	277(41.47%)	320(45.07%)

- 업종별로 살펴보면, 민감도 ‘상’에서는 화학업(75사), 철강금속업(38사), 전기전자업(37사), ‘중’에서는 음식료품업(27사), 종이목재업(23사), 기계업(21사), ‘하’에서는 유통업(5사)이 화학물질 유통량을 공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업이 지난해보다 1사 감소한 27사로 나타난 이유는 올해부터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업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그림 II.3.14〉 업종별 화학물질 유통량 공개기업



나. 화학물질 위험관리 현황

- ☐ 기업은 사업장에서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有害性)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성(危害性)을 파악하여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야 함
- 평가대상기업 중 352사(66.29%)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 용도 및 위해성에 대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작업이용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18〉 화학물질 위험관리 시스템 마련

	2011년	2012년
화학물질 위험관리 시스템 마련	234(46.25%)	352(66.29%)

※ 상기 지표는 환경민감도 '상'·'중'에 해당함 【2011년(506사)/2012년(531사)】

(11) 온실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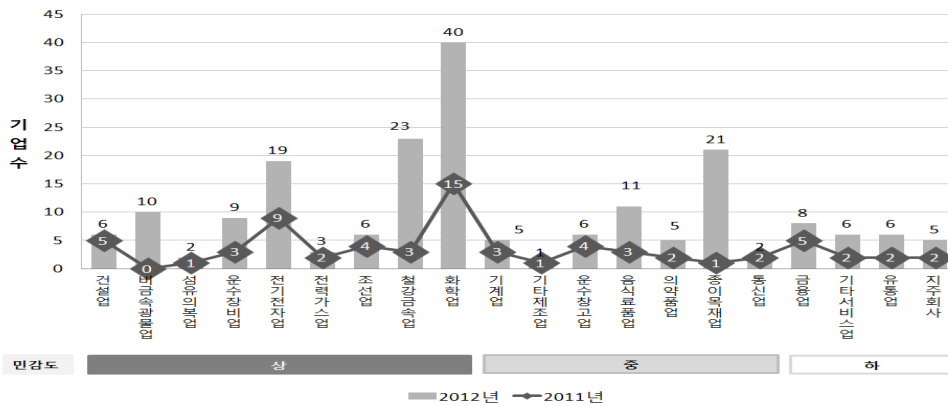
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업은 194사(27.32%)로 2011년 69사(10.33%)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데이터정보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실적을 살펴보면, 화학업(40사)이 가장 많고 철강금속업(23사), 종이목재업(21사) 순으로 나타남

〈표 II.3.19〉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현황

	2011년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69(10.33%)	194(27.32%)

〈그림 II.3.15〉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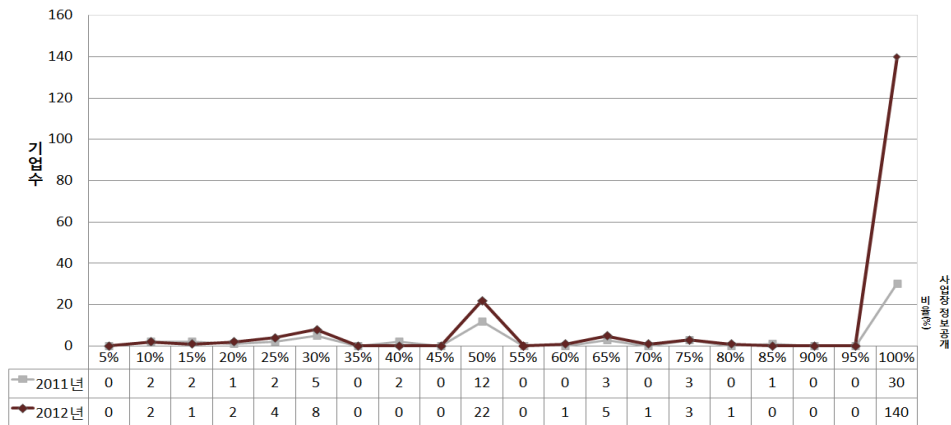
나. 사업장별 온실가스 관리

□ 온실가스 사업장 공개범위는 개별 상장법인의 전체 사업장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한 사업장 비율을 의미함

- 하나 이상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공개하고 있는 기업 수는 190사(26.76%)로 전년도 63사(8.87%)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상장기업들이 일부 사업장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측정한 반면, 금년부터는 전사 차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함
 - 금년도 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사업장 공개율이 100%로 나타난 기업이 140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text{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사업장 공개율(\%)} = \frac{\text{온실가스배출량 공개사업장수}}{\text{전체사업장수}} \times 100$$

〈그림 II.3.16〉 온실가스 사업장관리 공개현황



(12) 환경회계 시스템 구축 및 내부경영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 환경회계 도입 목적은 내부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환경영향과 개선활동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활동과정에서의 환경활동원가 및 편익을 인식하기 위함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100사(14.08%)가 환경회계비용을 집계하고 있으나, 이 중 17사(2.4%)만이 환경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직까지는 환경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나, 향후 탄소배출권, 탄소세 및 탄소부채 등의 정보요구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이러한 환경영향이 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회계 정보를 기업의 다른 경영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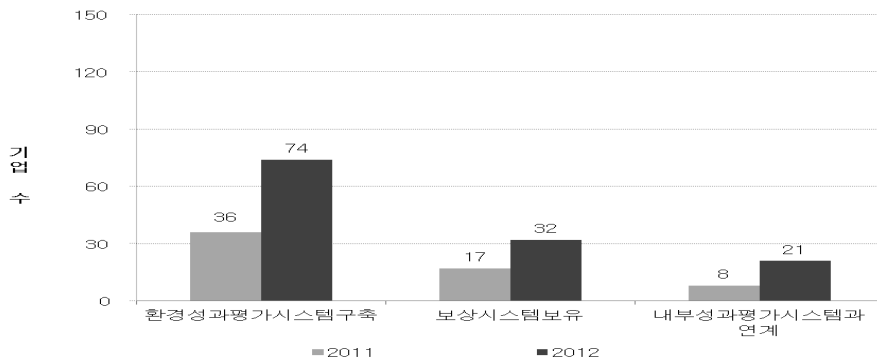
〈표 II.3.20〉 환경회계 정보관리

	2011년	2012년
환경회계비용 집계	67(10.03%)	100(14.08%)
환경회계시스템 구축	13(1.95%)	17(2.39%)

(13) 환경성과 평가체계 구축여부 및 이행의 충실성

-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74사(10.42%)임
- 환경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32사(4.51%)이며, 이 중에서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는 기업은 21사(2.96%)임

〈그림 II.3.17〉 환경성과 평가시스템 운영현황



(14) 환경감사 수행

- ISO14001 인증에서는 환경감사를 내·외부감사로 나누고, 환경경영시스템감사와 환경상태감사, 이행감사로 그 역할을 분류하고 있음
 - 환경경영시스템감사 : 환경방침, 전사적 환경경영체제 등
 - 환경상태감사 : 사업장 상태감사-폐기물, 제품, 에너지 등
 - 이행(의무)감사 : 법규준수여부 및 환경위험 조사
- 한편,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수질)보전의 시설설치허가를 받은 후 오염방지시설과 배출시설 등의 가동신고를 하고 환경관리인⁶⁾을 임명하여 방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6)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사업장 형태(1종·2종)별로 나뉘고 관리사항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뉨

□ 환경감사를 실시한 기업은 358사(50.4%)로 나타남

- 환경감사를 내부심사원이 수행하는 기업은 10사(1.41%), 외부심사원이 수행하는 경우는 348사(49.01%)로 외부심사원이 환경감사를 수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1년에는 외부심사원을 통해 환경감사를 실시한 기업이 234사(35.03%)로 2012년도에 환경감사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내부감사는 환경법규 준수여부 확인과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3자의 검증을 통해 대외적인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기 때문에 외부 환경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남

〈표 II.3.21〉 환경감사 형태

	2011년	2012년
내부심사원에 의해 수행	7(1.05%)	10(1.41%)
외부심사원에 의해 수행	234(35.03%)	348(4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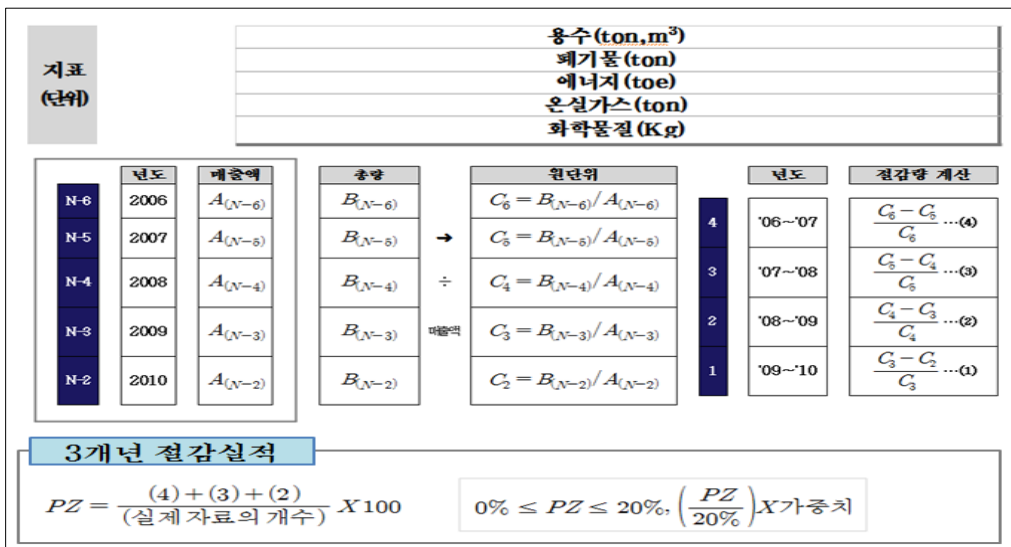
4) 환경성과

□ 환경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마다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따라 비교우위가 다르므로 동일기간의 기업별 ‘환경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의 5개년도 총량(용수·폐기물·에너지)을 취합하여 원단위(매출액)로 변환한 뒤 절감량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함

□ 환경성과 계산식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II.3.18〉 원단위 평균 3개년 절감실적 계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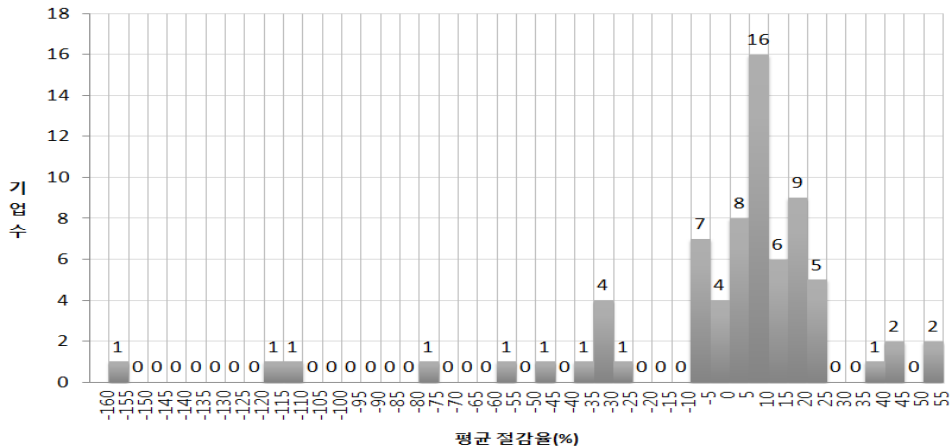
(1) 용수 절감성과

- 유가증권시장에서 용수 3개년 평균 원단위 절감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72사이며, 이 기업들의 용수 3개년 평균 원단위 절감율은 -1.67%이고 전체 구간은 [(min)-159.01% ~ (max)51.46%]으로 나타남
- 업종 민감도별 평균은 ‘상’ -1.74%, ‘중’ -1.80%, ‘하’ -1.42%로 나타남. 용수 절감 노력은 기업의 직접비용으로 계상되는 항목이므로 전 산업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원단위 3개년 용수평균 절감율이 0%를 초과한 기업의 경우 용수 절감을 위한 다양한 환경경영체제의 활동이 성과창출로 가시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가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 중 49사로 매우 적은 실정임
- 3개년 평균 절감율 구간은 [5%이상 10%미만]이 16사로 가장 많았고 [15%이상 20%미만]이 9사, [0%이상 5%미만]이 8사로 나타남
- 반면에 용수사용량이 증가하여 절감율이 0%미만으로 나타난 기업도 23사로 나타남
 - 기업은 경영활동 속에서 자원절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경영활동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지만, 항상 위험요인을 수반한 채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실체로서 환경성과가 단기간 내 창출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남
 - 대외경기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제품 단가의 하락 등 환경저감노력과는 다른 기타요인이 있을 수 있음

〈표 II.3.22〉 업종 민감도별 용수 절감율 평균·최대(최소)

		평균	최대(최소)	기업수
전체		-1.67%	51.46%(-159.01%)	72
민감도	상	-1.74%	51.46%(-159.01%)	40
	중	-1.80%	44.87%(-112.20%)	14
	하	-1.42%	50.98%(-78.93%)	18

〈그림 II.3.19〉 용수 3개년 평균 절감율 기업현황



(2) 폐기물 감량 성과

□ 유가증권시장에서 62사에 대한 폐기물 3개년 평균 원단위 감량률은 -2.83%이고 전체 구간은 [(min)-176.13% ~ (max)45.64%]으로 나타남. 지난해 46사(6.89%)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금년도 평가에서 조사가능 기업 수가 소폭 증가함

○ 2000년 초반부터 환경부에서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로(www.allbaro.or.kr)’ 시스템⁷⁾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⁸⁾ 등 관련규제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자체 사업장마다 준비해 둔 관리요소가 금년도 폐기물 감량성으로 이어짐

□ 업종별 민감도 평균은 ‘상’ -1.23%, ‘중’ 4.98%, ‘하’ -20.93%로 나타남
 ○ 업종민감도 ‘하’ 경우 평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폐기물 감량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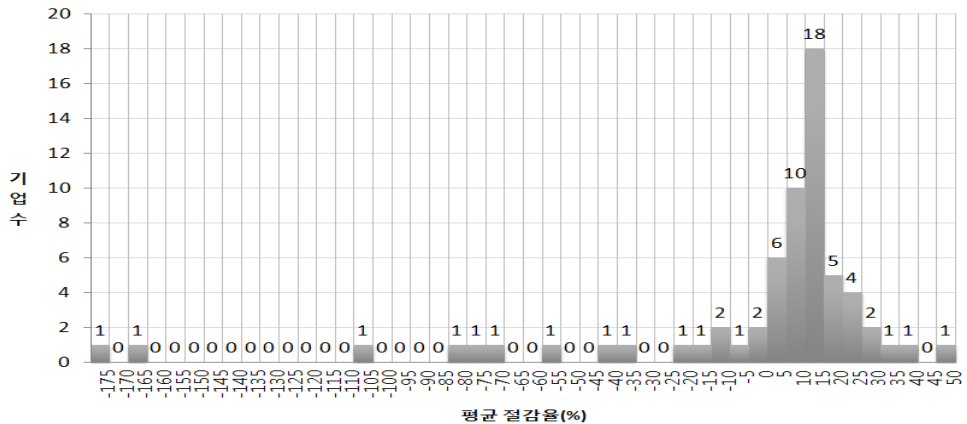
7) 2000년도 초반부터 환경부가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를 통한 폐기물의 전생애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임

8) 사업장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분석 평가하여 우수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지도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제도[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환경부 고시 제2009-13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5호(2009.8.21)참조]

□ 폐기물 3개년 평균 감량을 실적구간을 살펴보면, [10%이상 15%미만]이 18사로 가장 많았고 [5%이상 10%미만]이 10사, [0%이상 5%미만]이 6사로 나타남

○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는 절감율 0% 미만인 14사로 나타남

〈그림 II.3.20〉 폐기물 3개년 평균 감량을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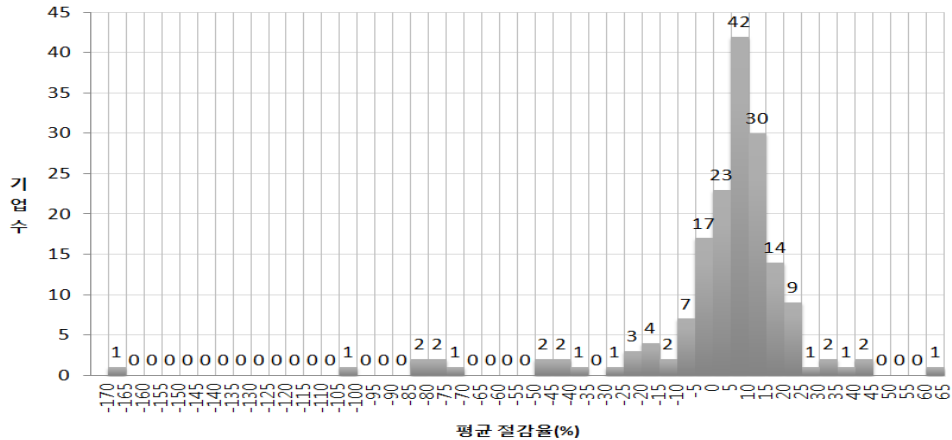
〈표 II.3.23〉 업종 민감도별 폐기물 감량을 평균·최대(최소)

		평균	최대(최소)	기업수
전체		-2.83%	45.64%(-176.13%)	43
민감도	상	-1.23%	45.64%(-176.13%)	5
	중	4.98%	22.79%(-44.46%)	12
	하	-20.93%	36.13%(-167.47%)	9

(3) 에너지 절감 성과

-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기업 중 171사(24.09%)의 에너지 3개년 평균 원단위 절감율은 1.86%이고, 전체 구간은[(min)-165.43% ~ (max)64.00%]으로 나타남. 지난해의 경우 40사(5.99%)에 불과한 데 비해 올해는 관련 데이터 확보 가능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함
 - 업종별 민감도 평균은 ‘상’ 5.19%, ‘중’ -0.08%, ‘하’ -13.40%로 나타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총사용량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원가절감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에너지 절감활동 등이 환경성으로 이어짐
- 에너지 3개년 평균 절감율 실적구간은 [5%이상 10%미만]이 42사로 가장 많았고 [10%이상 15%미만]이 30사, [0%이상 5%미만]이 23사 순서로 나타남
 -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는 절감율 0% 미만인 경우로서 46사임

〈그림 II.3.21〉 에너지 3개년 평균 절감율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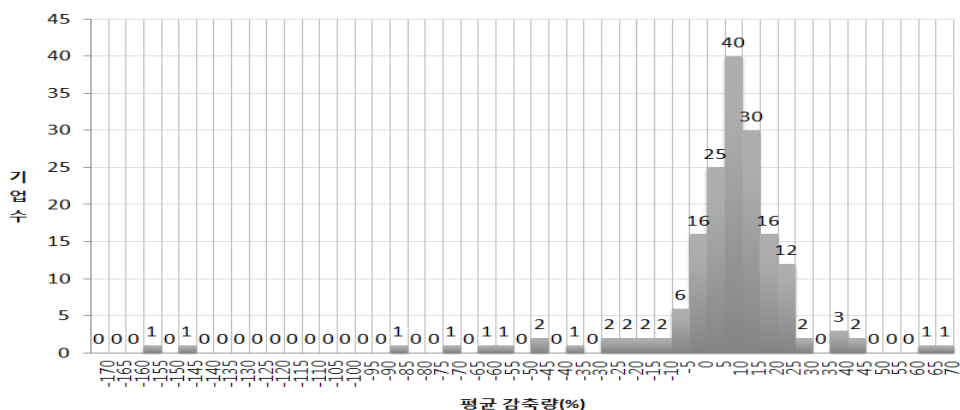
〈표 II.3.24〉 업종 민감도별 에너지 절감율 평균·최대(최소)

구분		평균	최대(최소)	기업수
전체		1.86%	64.00%(-165.43%)	171
민감도	상	5.19%	64.00%(- 84.41%)	111
	중	-0.08%	42.88%(-165.43%)	41
	하	-13.40%	23.63%(-104.37%)	19

(4) 온실가스 감축 성과

- 유가증권 상장기업 171사의 온실가스 3개년 평균 원단위 절감율은 4.03%이고, 전체 구간은 [(min)-157.22% ~ (max)66.24%]으로 나타남
 - 에너지 절감율 지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40사(5.99%)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비교하여 조사 가능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시행으로 상장기업의 5개년도 온실가스배출량 데이터를 다량 확보가능해진데 따름
 - 업종 민감도별 평균은 ‘상’ 6.56%, ‘중’ 6.12%, ‘하’ -14.19%로 나타남
- 온실가스 3개년 평균 감축율 실적구간은 [5%이상 10%미만]이 40사로 가장 많았고 [10%이상 15%미만]이 30사, [0%이상 5%미만]이 25사 순서로 나타남
 -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감축률 구간이 0%미만으로 나타난 기업도 39사에 이룸
- 목표관리제의 확대시행과 올해 11월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는 일찍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사전대응한 움직임이 다른 자원(용수, 폐기물 등)에 비해 절감 등으로의 환경성으로 이어짐

〈그림 II.3.22〉 온실가스 3개년 평균 감축율 기업현황



〈표 II.3.25〉 업종 민감도별 온실가스 감축율 평균·최대(최소)

		평균	최대(최소)	기업수
전체		4.03%	66.24%(-157.22%)	171
민감도	상	6.56%	66.24%(-157.22%)	110
	중	6.12%	44.10%(-59.10%)	41
	하	-14.19%	61.95%(-146.41%)	20

(5) 주요 환경오염물질 관리실적

-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규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사업장기준을 별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II.3.26〉 주요 환경오염물질 관리 기업

	법규 대비	2011년						2012년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소계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소계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대비 관리 기업 (100% 미만)	NOx	343	2	6	1	12	364	322	3	5	2	15	347
	SOx	342	0	1	3	18	364	321	1	2	2	21	347
	먼지	338	0	0	1	25	364	319	0	1	4	23	347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대비 관리 기업 (100% 미만)	COD	341	0	1	11	11	364	322	1	1	8	15	347
	BOD	347	0	1	2	14	364	322	1	4	4	16	347
	SS	339	0	1	5	19	364	322	0	1	3	21	347

*상기 지표는 환경민감도 '상'에 해당함 【2011년(364사)/2012년(347사)】

(6)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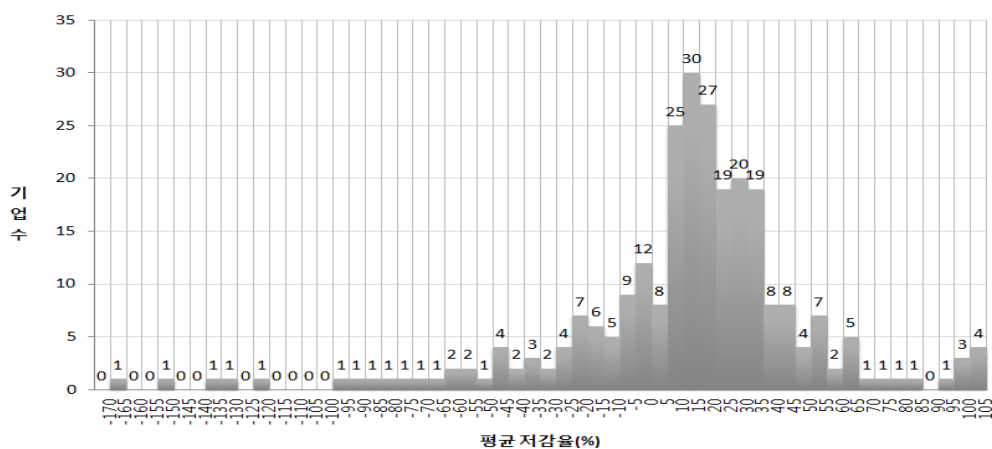
□ 유가증권시장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3개년 평균 원단위 저감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65사(37.32%)의 평균 저감율은 10.46%이고 전체 구간은 [(min)-166.33% ~ (max)100.00%]으로 나타남

○ 민감도별 평균은 ‘상’ 10.76%, ‘중’ 9.24%, ‘하’ 19.72%로 나타남

□ 화학물질 3개년 평균 저감율 실적구간은 [10%이상 15%미만]이 30사로 가장 많았고 [15%이상 20%미만]이 27사, [5%이상 10%미만]이 25사 순서로 나타남

○ 반면, 화학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실적구간 [0%미만])는 71사로 조사됨

〈그림 II.3.23〉 화학물질 3개년 평균 저감율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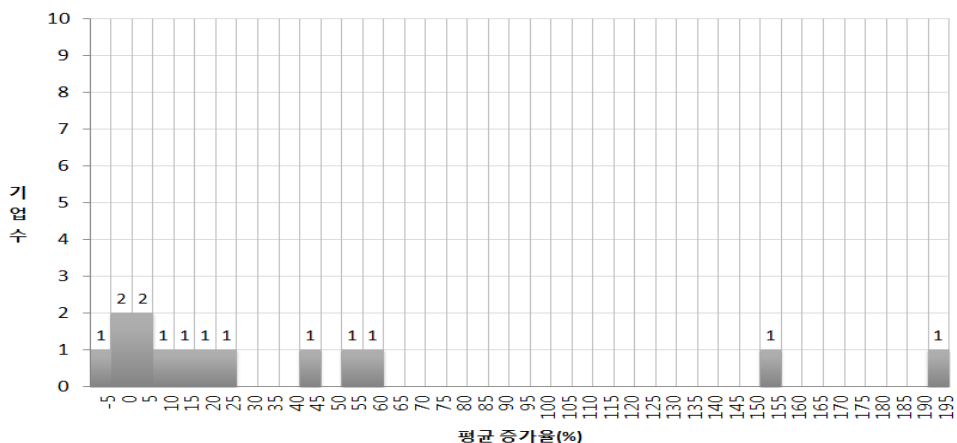
〈표 II.3.27〉 업종 민감도별 화학물질 저감율 평균·최대(최소)

		평균	최대(최소)	기업수
전체		10.46%	100.00%(-166.33%)	265
민감도	상	10.76%	100.00%(-151.91%)	186
	중	9.24%	100.00%(-166.33%)	75
	하	19.72%	34.04%(9.01%)	4

(7)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증가율

- 유가증권시장에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이 원단위 평균 3개년 증가한 기업은 14사(1.97%)이고, 평균은 39.55%, 구간은 [(min)-7.45% ~ (max)194.94%]으로 나타남
 - 업종 민감도별 평균으로는 ‘상’ 33.99%, ‘하’ 46.97%로 나타남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3개년 평균 증가율 실적구간은 [0%이상 5%미만]이 2사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금융업(4사), 전기전자업(4사), 화학업(3사), 유통업(2사), 철강금속업(1사)에서 매출실적이 발생함
 - 반대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즉 실적구간 [-5%이상 0%미만] 도 3사로 나타남
- 민감도 ‘하’에 속한 ‘금융업’의 경우 친환경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활발히 운영하여 동일 민감도에 속하는 타 업종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
 - UNEP FI에서는 녹색금융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 파괴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 II.3.24〉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평균 3개년 증가 기업현황



〈표 II.3.28〉 업종 민감도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증가율 평균·최대(최소) 〈그림 II.3.25〉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평균 3개년 증가 업종현황

		평균	최대(최소)	기업수
전체		39.55%	194.94% (-7.45%)	14
민감도	상	33.99%	153.41% (-7.45%)	8
	중	-	-(-)	0
	하	46.97%	194.94% (1.8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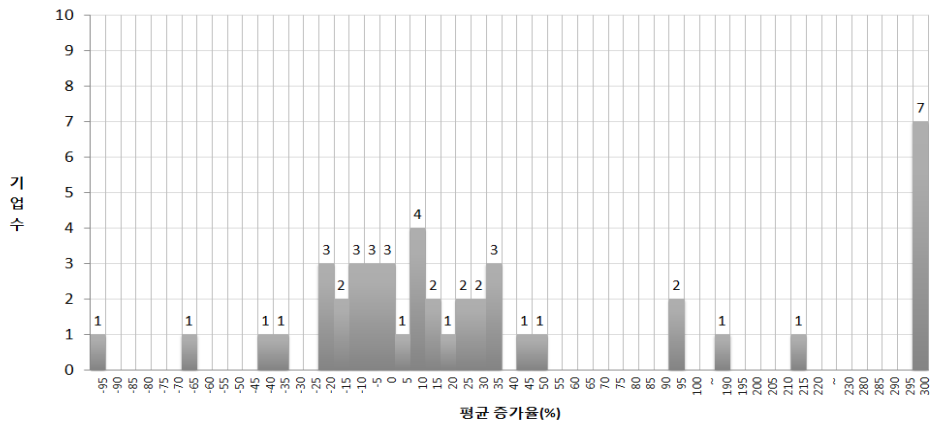
(8)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증가율

□ 유가증권시장에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이 원단위 평균 3개년 증가(감소)한 기업은 46사(6.48%)이고, 전년도 39사(5.84%)에 비해 소폭 증가함

- 46사(6.48%)의 3개년 평균 증가율은 57.15%이고, 구간은 [(min)-96.10% ~ (max)299.61%]으로 나타남. 업종별 평균은 ‘상’ 59.19%, ‘중’ 30.83%, ‘하’ 72.66%임
- 친환경 제품·서비스 매출액 실적보다 성과가 좋은 이유는 정부의 이행촉구수단⁹⁾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선행되었기 때문임

9) 2005년 9월 환경부는 녹색생산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를 시키고 사회전반에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간의 녹색사슬(Eco-Products Chain)구축을 위해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협약’을 마련하여 친환경제품·서비스의 구매를 권장 및 유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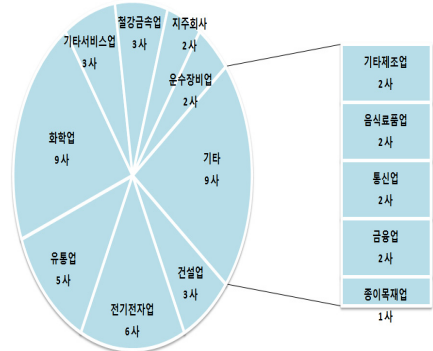
〈그림 II.3.26〉 과거 3개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증가율 현황



〈표 II.3.29〉 업종 민감도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증가율 평균·최대(최소)

		평균	최대(최소)	기업 수
전체		57.15%	299.61% (-96.10%)	46
민감도	상	59.19%	299.61% (-35.43%)	25
	중	30.83%	299.61% (-40.49%)	9
	하	72.66%	299.61% (-96.10%)	12

〈그림 II.3.27〉 업종별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가 증가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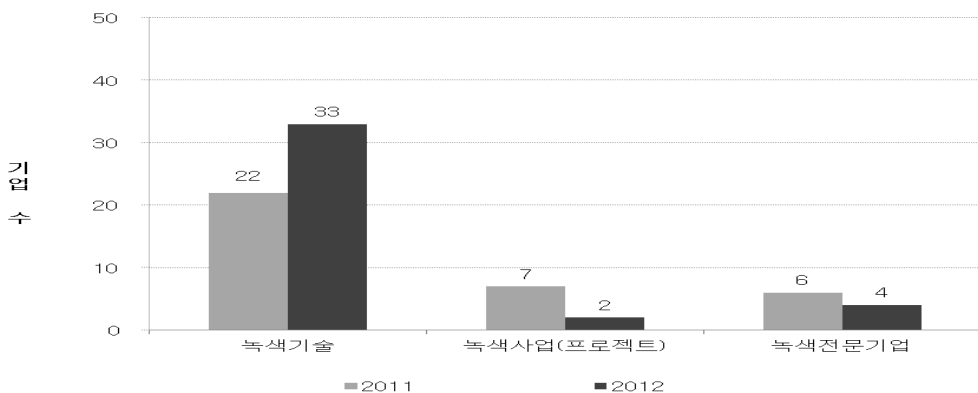
(9) 녹색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녹색인증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녹색기술이 33사(6.22%), 녹색사업(프로젝트) 2사(0.38%), 녹색전문기업 4사(0.7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¹⁰⁾

- ‘녹색기술’은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여,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세부기술 및 핵심(요건) 기술을 말함
- 각 핵심기술별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규격을 제시하며, 인증대상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발전 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술범위를 매년 갱신함
- ‘녹색사업’은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함
-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해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참조

〈그림 II.3.28〉 녹색인증 현황



10) 2012년 녹색인증현황은 업종 민감도 '상'·'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531사 중 비율을 구함

5) 이해관계자 대응활동

- ☐ 환경경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적시에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1) 환경정보 공개여부

- ☐ 기업의 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71사(10.0%)로 2011년 59사에 비해 12사 증가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정보 공개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이 증가하여 향후 환경정보공개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표 II.3.30〉 환경정보 공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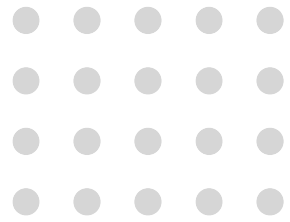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환경정보 공개기업	59(8.83%)	71(10.0%)

(2) 이해관계자 연대 및 자발적 참여활동

- ☐ 대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업은 228사(32.1%)로 작년 51사(7.6%)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역시 152사(22.8%)에서 219사(3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자발적 연대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도 113사(17.0%)에서 218사(30.7%)로 증가함
- ‘1사 1촌 운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발적 협약 및 실천 운동 전개가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수단으로써 환경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례도 조사됨

〈표 II.3.31〉 대외 이해관계자 대응활동 현황

	2011년	2012년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프로그램 보유	51(7.6%)	228(32.1%)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지원 및 협력	152(22.8%)	219(30.8%)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자발적 연대활동	113(17.0%)	218(30.7%)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주주총회 의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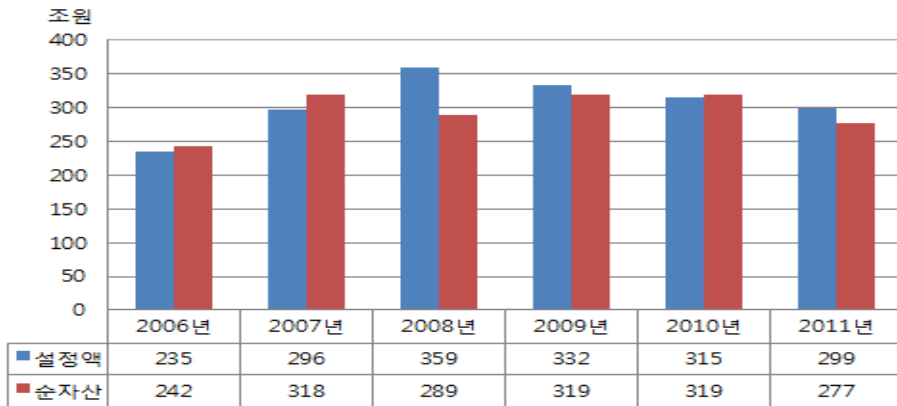
1.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자문기관 필요성
2. KOSPI200사 의안분석 결과
3. 금융회사 의안분석 결과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Ⅲ. 주주총회 의안분석

1.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자문기관 필요성

- 의결권 행사를 위시한 주주제안, 소송 참여 등 주주들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을 뜻하는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내부자인 경영자를 견제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선진자본시장에서는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가 오래전부터 발달하였으며,
-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 및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핵심적인 투자·운용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음
- 간접투자문화의 확산에 따라 펀드설정액 등 규모도 세계 금융위기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이들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의무에 기반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됨.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도 관련 법규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할 의지를 표명함
-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업무브리핑에서 펀드투자자 등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 내역 일괄조회 시스템을 금융투자협회에 구축하고 자산운용사가 관련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체계를 개선할 계획을 밝힘
- 정부는 올해 6월에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87조 제1항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를 명기했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자리 잡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또한 금융위원회는 7월13일 발표한 보도자료(「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제도개선 추진」)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해 펀드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의결권 행사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평가됨

〈그림 III.1.1〉 2006~2011년 국내 펀드 전체 설정액 및 순자산 총액



- 하지만 이런 내외부적인 변화와는 별도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움직임은 매우 저조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현황을 보면 내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갖추지 못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의결권 행사 역시 찬성 일변도의 성향을 보임
-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지침은 의결권 행사시 공시 자료에 포함해야 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 조사에 의하면 올해 10월 기준 57개¹¹⁾ 자산운용사 중 9개사(15.8%)는 자사 홈페이지나 금융투자협회 등의 전자공시사이트에 내부지침을 공시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의결권 행사의 세부지침인 가이드라인을 공시한 회사는 57개 자산운용사 중 25개사에 불과하며 32개사(56.1%)는 자사 홈페이지나 금융투자협회 등의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¹²⁾
 - <표 III.1.1>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결과를 살펴볼 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성실성이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반대의견은 0.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데, 이는 경영진 감시 역할과 같은 자산운용사의 최소한의 경영 관여 활동조차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임

11) 전체 자산운용사 74사 중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펀드만 운용하여 의결권 행사 지침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17사를 제외한 수치임

12) 금융투자협회는 모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배포하였는데, 도입 및 수정 여부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표 III.1.1> 2011년, 2012년 12월 결산법인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행사의견	2011년		2012년		증감	
	안건수*(A)	비율(B)	안건수(C)	비율(D)	안건수 증감 (C-A)	비율증감 (D-B)
찬성	10,866건	97.91%	9,711건	97.50%	△1,155건	△0.41%
반대	26건	0.23%	39건	0.39%	13건	0.16%
중립	117건	1.05%	152건	1.53%	35건	0.47%
불행사	107건	0.96%	74건	0.74%	△33건	△0.22%
총계	11,098건	-	9,960건	-	△1,138건	-

* 자산운용사가 3월 중순까지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총 안건수

** 한국거래소, 2011, 2012년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행사 공시현황 보도자료

○ 위의 반대율과 <표 III.1.2>의 CGS의 개별 안건 반대율을 비교해 보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태도는 보다 분명해짐

<표 III.1.2> CGS의 KOSPI200사 개별안건 반대율

(12월 결산법인)

구분	재무 제표 (이익 배당)	정관 변경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위원	감사	이사 보수	기타	총계
상정 회사수 (A)	200	151	153	138	99	23	198	88	200
반대 회사수 (B)	2	66	10	71	46	12	6	8	129
상정 건수 (C)	203	155	362	318	212	27	198	110	1,585
반대 건수 (D)	2	66	11	96	66	13	6	12	272
회사 기준 반대율(B/A)	1.00%	43.71%	6.54%	51.45%	46.46%	52.17%	3.03%	9.09%	64.50%
건수 기준 반대율(D/C)	0.99%	42.58%	3.04%	30.19%	31.13%	48.15%	3.03%	10.91%	17.16%

* 자세한 내용은 <표 III.1.9> 참조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저조한 이유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촉박한 일정과 정보 부족, 관련 법제의 미비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 의식 부족 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을 심층 분석하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안전 관련 정보의 촉박한 공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¹³⁾
 - 사측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들도 기관투자자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임
 -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제가 대개 책임성이나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아 기관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는 미치지 못함
 -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기관투자자 내 실무조직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의 시장 내 전문인력 부족도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요인의 하나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자문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커짐
 - 의안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음에도 현재는 자문서비스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CGS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에 국한된 실정임
 - 따라서 현재는 의결권 자문서비스 시장과 자문기관 육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금융위원회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4월 브리핑에서 선진국 사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 양성방안의 검토를 발표한 바 있음
- CGS는 이상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잠재적 요청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상반기에 개최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13)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개최가 특정기간에 집중되며, 개최 공지도 현행법상 기한인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맞추는 경우가 상당수임

2. KOSPI200사 의안분석 결과

1)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은 KOSPI200사를 대상으로 2012년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
 - 의안분석은 CGS에서 2012년 3월에 제정하여 공개한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1) 의안분석 대상

- 의안분석 대상인 KOSPI200사의 결산월, 규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표 III.1.3>과 같음

<표 III.1.3> 의안분석 대상 기업

구분	결산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여부		시가총액 기준			전체
	3월	12월	소속	비소속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회사 수	10	190	114	86	96	94	10	200

(2) 주주총회 일정 분포

-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기한은 개최일 2주간 전까지이며, KOSPI200사의 소집 공고일부터 개최일까지 평균기간은 17.4일로서 2011년 1분기의 17.3일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
 - 집합투자업자는 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하므로, 소집공고 후 평균 12일(대개 4일의 주말 휴일 포함) 내에 전체 투자대상회사의 의결권 행사 업무를 완료해야 함

〈표 III.1.4〉 KOSPI200사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부터 개최일까지의 평균기간

	2011년	2012년
평균기간 (소집공고일 ~ 개최일)	17.3일	17.4일

- 200개 회사 중 3월 3주, 4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가 각각 59사(29.5%)와 82사(41.0%)에 달해 개최일 집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KOSPI200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분포

	~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2분기	전체
회사 수(비율)	13(6.5%)	59(29.5%)	82(41.0%)	36(18.0%)	10(5.0%)	200(100%)

- 특히 3월16일(금), 3월23일(금)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가 각각 59사(29.5%), 78사(39%)로 확인됨

2) 세부 내용

(1) 안건 상정 방법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 ☐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다수의 임원 후보를 일괄 상정하는 관행이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CGS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별 안건 전부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괄 상정한 안에 찬성하도록 하고 있음
 - KOSPI200사 정기주주총회 안건 전체에서 실제 상정 방식(일괄 상정 방식)으로 계산한 반대율은 21.22%였고, 일괄 상정 안건에 포함된 개별 안건을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간주하고 계산한 반대율은 17.16%였음

<표 III.1.6> 실제 상정방식에 따른 반대율과 개별 안건에 대한 반대율 비교

	실제 상정방식	개별 안건	차이
전체 안건(건)	1,084	1,585	501
반대 안건(건)	230	272	42
반대율	21.22%	17.16%	4.06%p

- 두 가지 방식의 반대율 차이는 대부분 임원 선임 안건(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차이는 임원 선임 안건만 분리해 놓고 볼 때 더 명확해짐

<표 III.1.7> 두 가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율 비교

	실제 상정방식	개별 안건	차이
전체 안건(건)	416	919	503
반대 안건(건)	144	186	42
반대율	34.62%	20.24%	14.38%p

- ☐ 임원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의 양상을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빈도는 어떤지 추가 조사함

○ 세 가지 유형

- (유형 1) 이사 및 감사(위원)를 각각 묶어서 일괄상정한 경우
- (유형 2) 이사 중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별하여 별도로 각각 묶어서 일괄상정한 경우(감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구분)
- 모든 임원 후보를 개별 상정한 경우

- 분석 결과, KOSPI200사 중 180개 기업이 임원 선임 안전을 상정하였으며 (유형 1)이 전체의 77.2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III.1.8〉 임원 선임 안전 일괄상정 유형 분류

	유형 1	유형 2	유형 3	합계
해당 회사 수(비율)	139(77.22%)	21(11.67%)	20(11.11%)	180(100.00%)

- 이하의 분석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 등 임원 선임 안전의 수는 실제 회사가 상정한 안전 수가 아니라, 일괄 상정 안전에 포함된 개별 안전을 모두 별도 안전으로 간주해 계산한 수치임

- 가령 회사가 세 명의 사외이사를 묶어서 하나의 이사 선임 안전으로 상정했다라도 이 분석에서는 세 건의 안전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임

(2) 안전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 (안전별 반대 수) 반대 투표를 권고한 안전은 ‘사외이사 선임’ 96건, ‘정관변경’과 ‘감사위원 선임’ 66건, ‘감사 선임’ 13건 순으로 주로 임원 선임과 정관변경 안전임
- (안전별 반대율) 건수 기준으로 반대율을 계산하면 ‘감사 선임’ (48.15%), ‘정관변경’ (42.58%), ‘감사위원 선임’ (31.13%), ‘사외이사 선임’ (30.19%) 순으로 역시 임원 선임과 정관변경 안전에 높은 비율로 반대 권고함

〈표 Ⅲ.1.9〉 개별 안건 반대 수 및 반대율

구분	재무 제표 (이익 배당)	정관 변경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위원	감사	이사 보수	기타**	총계
상정 회사수 (A)	200	151	153	138	99	23	198	88	200
반대 회사수 (B)	2	66	10	71	46	12	6	8	129
상정 건수 (C)	203	155	362	318	212	27	198	110	1,585
반대 건수 (D)	2	66	11	96	66	13	6	12	272
회사 기준 반대율(B/A)	1.00%	43.71%	6.54%	51.45%	46.46%	52.17%	3.03%	9.09%	64.50%
건수 기준 반대율(D/C)	0.99%	42.58%	3.04%	30.19%	31.13%	48.15%	3.03%	10.91%	17.16%

*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 기타: 감사보수, 회장선임, 사업분할, 특별공로금, 액면분할, 임원퇴직금 규정, 주식매수
선택권, 특수관계자 거래, 감사해임, 경영계약서, 자본감소 등

(3)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찬성 · 반대 권고 현황

☐ 개정 상법의 시행(4월15일)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가 151개사
(75.5%)로 매우 많았다는 점이 금년 주주총회의 주된 특징임

○ 중요한 변경 조항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책임 감경’ 관련 조항임

☐ 개정 상법 제462조 제2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을 허용하
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59개사임

○ (문제점) 동 조항 포함에 따라 회사는 개정 상법 조항에 근거해 이익배당
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게 되었고, 추후 부적절한 배당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게 됨

○ CGS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 18.3)에 따라 주주 권익을 훼손하
지 않도록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
하지 않은 경우 반대 투표를 권고함

□ 개정 상법 제400조에 근거하여 (사외)이사 책임 감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73개사임

○ 그 중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회사가 61개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회사가 12개사임

○ 후자의 경우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에 책임을 추궁할 주주권리가 제한되고 회사의 손해 보전이 어려워져 책임경영 약화의 우려가 큼

○ CGS는 가이드라인(지침 7.2, 8.4)에 따라 상기 12개사에 반대 투표를 권고 하였으며, 나머지 61개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안분석보고서에서 권고함

〈표 III.1.10〉 정관변경 안전 상정 현황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승인 허용 조항을 상정한 회사	이사의 책임 감경 조항을 상정한 회사		정관변경 안전을 상정한 회사 전체
		주주총회 결의 전제	주주총회 결의 없음	
해당 회사 수 (KOSPI200사 대비 비중)	59(29.50%)	73(36.50%)		151(75.50%)
		61(30.50%)	12(6.00%)	

(4) 임원 선임 안전별 반대 권고 사유

□ (임원 선임 반대 사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감사) 후보의 반대 사유에서는 모두 장기연임, 주요 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낮은 출석률 등이 높은 빈도를 나타냄

○ 낮은 출석률을 제외하고 독립성 측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KOSPI200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감사)들이 경영진과의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I.1.11〉 사외이사 반대사유 현황

반대사유 구분	빈도	비중
행정적·사법적 제재	0	0.00%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14	14.58%
회사의 전직 임직원	5	5.21%
주요 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 등	33	34.38%
과도한 겸임	2	2.08%
장기 연임	34	35.42%
낮은 출석률	23	23.96%
합계(중복 허용)	111(15)	115.63%(15.63%)

〈표 III.1.12〉 감사위원(감사) 반대사유 현황

반대사유 구분	빈도	비중
행정적·사법적 제재	0	0.00%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16	20.25%
회사의 전직 임직원	6	7.59%
주요 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 등	19	17.72%
과도한 겸임	0	0.00%
장기 연임	32	40.51%
낮은 출석률	13	16.46%
감사 관련 문제 연루	6	7.59%
합계(중복 허용)	92(13)	116.46%(16.46%)

□ (참고) CGS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이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사회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감사위원(감사)에게도 요구함

- 계열회사 임직원 등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등의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주요 거래법인, 협력 법인 등의 3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대상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이 아닐 것
-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대상 회사에서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 연수가 7년(금융회사는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연간 참석률이 75% 이상일 것

(5) 회사 유형별 임원 선임 안건 찬성·반대 현황 비교

-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반대율을 확인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에서 임원 후보에 대한 반대율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임원 선임 안건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건수 기준 반대율은 23.27%로 비소속 회사의 15.72%보다 높아 부적절한 임원 후보 추천 사례가 더 많음
- 그 이유는 장기연임, 주요 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 독립성의 문제가 있는 감사위원(감사) 후보가 많이 상정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주권익을 훼손한 이력이 있는 최대주주 등이 사내이사 후보로 더 많이 상정되기 때문임

〈표 III.1.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임원 후보 반대 현황

	임원 선임 안건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 감사)		
	소속	비소속	전체
상정 회사수(A)	105	75	180
반대 회사수(B)	55	36	91
상정 건수(C)	550	369	919
반대 건수(D)	128	58	186
회사 기준 반대율(B/A)	52.38%	48.00%	50.56%
건수 기준 반대율(D/C)	23.27%	15.72%	20.24%

3. 금융회사 의안분석 결과

1) 개요

- 이하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에 대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12년 3월 제정)에 따라 의안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함

(1) 의안분석 대상

- 상기 의안분석 대상은 금융(은행)지주회사를 주된 자회사의 업종으로 분류할 때 은행, 증권, 보험, 기타(카드, 리스, 종합금융) 6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주주총회 개최시기, 분석대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III.1.14〉 2012년 의안분석 대상 금융회사 현황

	KOSPI200 편입 여부		업종				전체 회사
	편입	비편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기타	
회사 수	17	36	10	23	14	6	53

- 이하에서 의안분석 결과를 상기 금융회사와 비교할 대상인 비금융회사는 KOSPI200 지수 편입사 중 비금융회사인 183사임

(2) 주주총회 일정 분포

- 정기 주주총회가 3월 3주와 4주에 집중된 비금융회사와 달리 금융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3월, 5월, 6월에 걸쳐 분산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 결산월에 따라 53개 금융회사 중 14개사는 2~3월에, 39개사는 5~6월에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과 같이 특정 주간과 일자에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되는 현상은 다소간 완화됨

- 단, 3월 결산 금융회사(39사) 중 32사가 올해 주주총회를 거쳐 결산월을 12월로 바꿔 2014년부터는 비금융회사와 함께 3월에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짐

〈표 III.1.15〉 2012년 금융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분포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합계
개최 회사 수(개)	1	7	6	12	13	8	2	4	53
비율(%)	1.9	13.2	11.3	22.6	24.5	15.1	3.8	7.6	100

- 금융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평균적으로 개최일의 17.6일 전에 이루어졌으며, 작년의 17.0일, 올해 KOSPI200사 중 비금융회사 183개사의 17.2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은행 18.1일, 증권 16.0일, 보험 20.1일, 기타 17.7일로서 증권 업종에 속한 회사들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6〉 2012년 금융회사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일부터 개최일까지 평균기간

	2011년	2012년
평균공고기간 (공고일 ~ 개최일)	17.0일	17.6일
비고	-	비금융회사 17.2일

2) 세부 내용

(1) 안건 상정 방법별 찬성 · 반대 권고 현황

- KOSPI200사처럼 금융회사도 다수의 임원 후보를 묶어서 한 번만 투표하도록 일괄 상정하는 관행이 존재함

- 금융회사 주주총회 안건 전체에서 ‘실제 상정 방식’으로 계산한 반대 권고율은 25.08%, ‘분리 계산 방식’의 반대 권고율은 20.47%였음

〈표 III.1.17〉 계산 방법별 반대 권고율 비교

	실제 상정 방식	분리 계산 방식	차이
전체 안건(건)	327	464	137
반대 안건(건)	82	95	13
반대 권고율	25.08%	20.47%	4.61%p

- 두 가지 방식의 반대 권고율 차이는 대부분 임원 선임 안건(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임원 선임 안건만 분리해 놓고 볼 때 ‘실제 상정 방식’ 이 41.78%, ‘분리 계산 방식’ 이 25.96%로서 그 차이는 더 명확해짐

〈표 III.1.18〉 계산 방법별 임원 반대권고율 비교

	실제 상정 방식	분리 계산 방식	차이
전체 안건(건)	146	285	139
반대 안건(건)	61	74	13
반대 권고율	41.78%	25.96%	15.82%p

(2) 안건별 찬성·반대 권고 현황

- 53개 금융회사 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한 회사는 42개 (79.25%)였으며, 안건 기준으로는 전체 464개의 안건 중 95건(20.47%)에 반대투표를 권고함
- 항목별로는 ‘감사위원 선임’ (33.33%), ‘사외이사 선임’ (30.95%), ‘정관 변경’ (29.63%), ‘기타’ (8.33%), ‘이사보수’ (7.41%), ‘사내이사’ (4.62%) 등의 순으로 반대 권고율이 높았음
- 비금융회사의 안건별 반대 권고율과 비교하였을 때는 정관변경, 이사보수 등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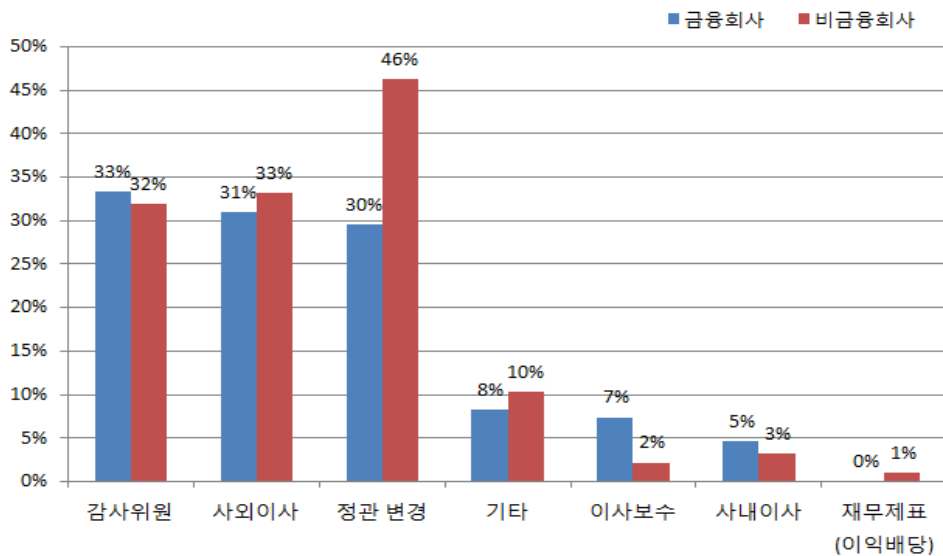
〈표 III.1.19〉 개별 안전별 반대권고율

	재무제표 (이익배당)	정관변경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위원	이사 보수	기타**	총계
상정 회사수(A)	53	51	37	45	41	52	12	53
반대 회사수(B)	0	16	3	29	22	4	1	42
상정 건수(C)	59	54	65	126	93	54	12	464
반대 건수(D)	0	16	3	39	31	4	1	95
회사 기준 반대율 (B/A)	0.00%	31.37%	8.11%	64.44%	53.66%	7.69%	8.33%	79.25%
건수 기준 반대율(D/C)	0.00%	29.63%	4.62%	30.95%	33.33%	7.41%	8.33%	20.47%

*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 기타: 감사보수, 회장선임, 사업분할, 특별공로금, 액면분할, 임원퇴직금 규정, 주식매수
선택권, 특수관계자 거래, 감사해임, 경영계약서, 자본감소 등

〈그림 III.1.2〉 2012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안전별 반대권고율(건수 기준)



(3)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권고 현황

- 개정상법 시행(4월15일)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상장 금융회사가 51사(96.2%)로 매우 많았다는 점이 금년 금융회사 주주총회의 주된 특징임
- 중요한 변경 조항은 (사외)이사 책임 감경 관련 조항 및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 관련 조항임
 -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킨 회사는 22사(41.5%)로서 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승인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권고함
 -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회사가 20개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회사가 2개사임
 - 이익배당의 이사회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회사는 15사(28.3%)로서 적절한 배당정책 마련·공시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반대를 권고함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월 결산 금융회사 39사 중 32사가 결산월을 12월로 바꾸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함

<표 III.1.20> 2012년 금융회사 정관변경 안건 상정 현황

	이익배당의 이사회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상정	이사의 책임 감경 조항을 상정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 수	15	20	2	51
상정률(전체 금융사 53사 대비)	28.30%	37.74%	3.77%	96.23%

- 정관변경 안건에서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반대 권고율을 살펴보면, 후자가 29.63%로 전자의 46.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분기에 적지 않은 비금융회사들이 상기 두 조항 중 최소한 하나를 담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다가 주주권의 침해 논란, 국민연금의 반대 등에 부닥쳐 스스로 안을 접거나 주총에서 승인 받지 못했는데, 이런 전례 때문에 금융회사가 정관에 해당 조항을 담기를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III.1.21〉 정관변경 안전에 대한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반대 권고율 비교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정관변경 안전 수	136	54
반대 안전 수	63	16
반대 권고율	46.32%	29.63%

(4) 사외이사 선임 안전: 업종별 반대 권고율, 반대 사유

□ ‘사외이사 선임 안전’을 상정한 45개 금융회사 중 29사(64.44%)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후보에 반대 투표를 권고함

- 업종별 사외이사 선임 반대 권고율은 보험(38.24%), 기타금융업(36.36%), 은행(32.26%), 증권(24.00%) 순으로 나타남

〈표 III.1.22〉 2012년 금융업종별 사외이사 선임 안전 반대 권고율

	사외이사 선임 안전				
	은행	증권	보험	기타금융업	전체
상정 회사수(A)	7	21	12	5	45
반대 회사수(B)	6	12	7	4	29
상정 건수(C)	31	50	34	11	126
반대 건수(D)	10	12	13	4	39
회사 기준 반대 권고율(B/A)	85.71%	57.14%	58.33%	80.00%	64.44%
건수 기준 반대 권고율(D/C)	32.26%	24.00%	38.24%	36.36%	30.95%

- 사외이사 후보의 주요 반대사유는 회사 혹은 최대주주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낮은 출석률,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임

〈표 III.1.23〉 금융회사 사외이사 선임 반대사유 현황

	사외이사 선임 반대사유	
	빈도	비율(%)
주주권익 침해	3	7.69%
행정·사법적 제재	2	5.13%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5	12.82%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14	35.90%
회사의 전직 임직원	1	2.56%
과도한 겸임	2	5.13%
장기 연임	6	15.38%
낮은 출석률	12	30.77%
합계	45(39)	1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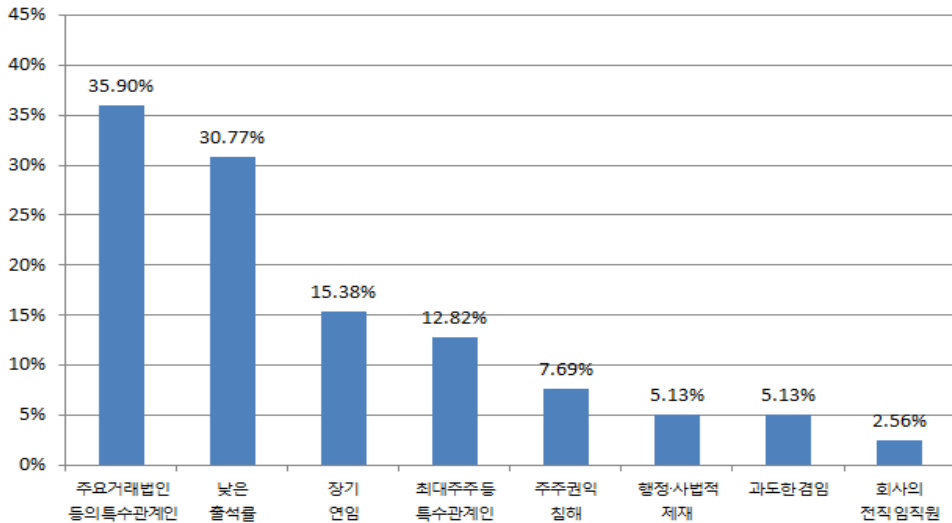
* 괄호 안은 반대후보의 수로서 빈도 합계가 반대후보 수를 초과하는 이유는 1명의 후보에 다수의 반대사유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사유를 비금융회사와 비교해본 결과, 금융회사는 특징적으로 장기연임의 비중이 15.38%로 비금융회사의 39.0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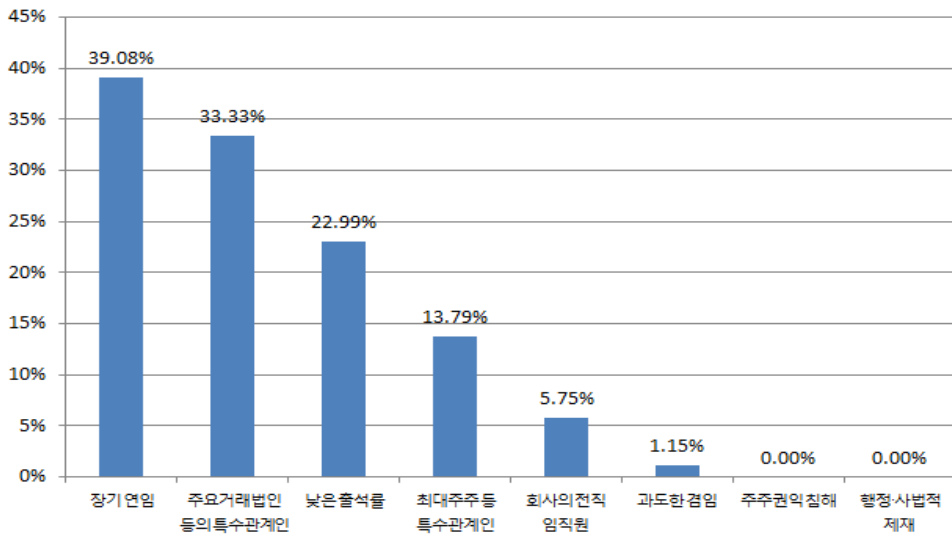
- CG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장기연임 판단기준은 ‘5년 초과’로서 비금융회사(‘7년 초과’)보다 더 엄격함에도 장기연임 때문에 반대권고한 금융회사 사례가 적은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가 이미 금융회사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장기연임 금지 기준은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금융회사 모범규준에서 모두 ‘5년 초과’로 동일하게 규정함

〈그림 III.1.3〉 2012년 금융회사 사외이사 반대사유 순위



〈그림 III.1.4〉 2012년 비금융회사 사외이사 반대사유 순위



(5) 감사위원(감사) 선임 안건: 업종별 반대 권고율, 반대 사유

- 금융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권업의 반대 권고율이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감사위원(감사) 선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24> 2012년 금융회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 상정 및 반대 권고율 현황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은행	증권	보험	기타금융업	전체
상정 회사수(A)	7	18	11	5	42
반대 회사수(B)	5	10	5	2	23
상정 건수(C)	24	40	19	10	94
반대 건수(D)	7	16	6	2	32
회사 기준 반대 권고율(B/A)	71.43%	55.56%	45.45%	40.00%	54.76%
건수 기준 반대 권고율(D/C)	29.17%	40.00%	31.58%	20.00%	34.04%

- 감사위원 후보의 주요 반대사유는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장기연임, 낮은 출석률, 감사업무 관련 문제 연루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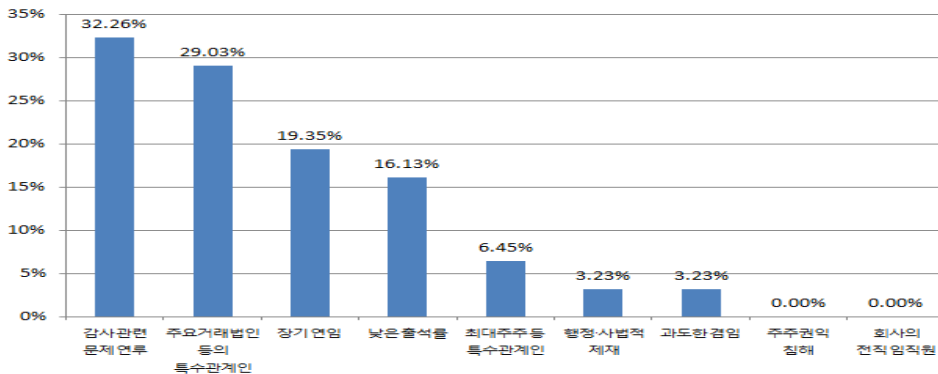
<표 III.1.25> 2012년 금융회사 감사위원 선임 반대사유 현황

구분	감사위원 선임 반대사유	
	빈도	비율
주주권의 침해	0	0.00%
행정·사법적제재	1	3.23%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2	6.45%
회사의 전직 임직원	0	0.00%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9	29.03%
과도한 겸임	1	3.23%
장기 연임	6	19.35%
낮은 출석률	5	16.13%
감사업무 관련 문제 연루	10	32.26%
합계	34(31)	10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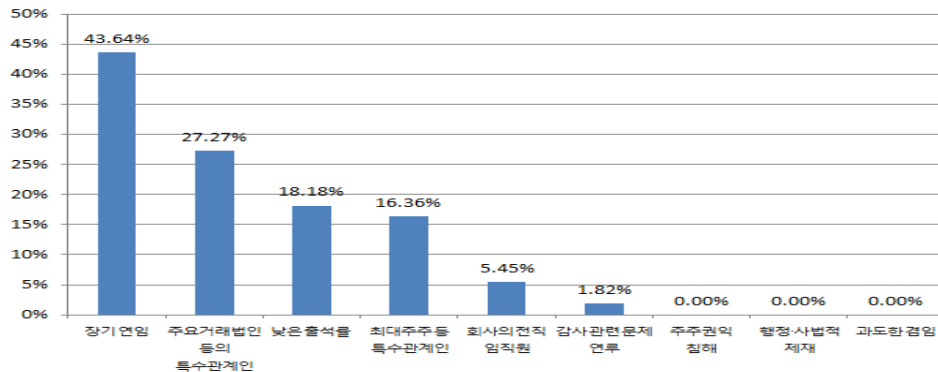
* 괄호 안은 반대후보의 수로서 빈도 합계가 반대후보 수를 초과하는 이유는 1명의 후보에 다수의 반대사유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감사위원 반대사유를 비금융회사와 비교해본 결과, 금융회사는 특징적으로 “감사업무 관련 문제 연루”의 비중이 32.26%로 비금융회사의 1.8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에서 이 문제로 반대 권고한 사례는 모두 재선임 후보로서 과거 감사위원 재임 시절 각종 불법행위로 회사 혹은 그 임직원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여기에서 불법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등 주요 법규 위반이었고, 대부분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중징계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됨
 - CGS의 반대 권고는 바로 당시 감사위원에게 제재의 경중과 반복성, 사유의 심각성 등을 따져 그 책임을 묻자는 취지임. 이는 감사위원이 내부통제체계를 점검·개선하고 준법경영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그림 III.1.5〉 2012년 금융회사 감사위원 반대사유 순위



〈그림 III.1.6〉 2012년 비금융회사 감사위원 반대사유 순위



(6) 임원 선임 안건 반대 권고율

- 임원 선임 안건에서는 KOSPI200에 편입된 비금융회사(183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더 많음

<표 III.1.26> 금융회사와 KOSPI200 비금융회사의 임원선임 안건별 반대율 (%)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전체(소계)		감사위원		임원 전체		
	I	II	I	II	I	II	I	II	I	II	I-II(%p)
회사 수 기준	8.1	7.0	64.4	52.0	67.4	43.8	53.7	46.4	76.6	49.7	26.9
건수 기준	4.6	3.2	31.0	33.2	22.0	16.2	33.3	32.0	26.0	20.6	5.4

* I 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 53사이고, II 는 KOSPI200에 편입된 비금융회사 183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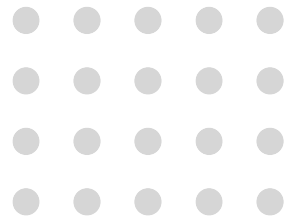
- 이는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여전히 상당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주주총회 관련 일정을 앞당겨서 기관투자자 등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최소한 3주 전으로 앞당겨 주주총회 안건 관련 정보가 더 빨리 주주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집공고 기한 축소는 회사의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혹은 기한 축소를 회사의 회계시스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회사나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앞서 해야 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의 기한을 최소한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으로 앞당긴다면, 주주로서는 적어도 일부의 안건 정보는 현재보다 더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 이사,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후보자 및 약력이 소집공고에 앞선 소집결의 시에 공고되기 때문임
 - 임원 선임 안건의 경우 국내 주주총회에서 관련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 안건 분석에 사실상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안건 정보를 지금보다 신속하게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회사측의 주주총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등이 정보수집 등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 공개 수준이 미흡하므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임원 후보의 약력을 기재해야 하는데, 때때로 반대사유가 될 만한 주요 경력이 공고에서 누락되기도 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경력의 공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동한 기록, 즉 참석률과 찬반 현황이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이사회 활동의 성실성을 파악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정보도 확인 가능하도록 공시규정 등에서 의무화가 필요함

- 이사 보수 안전과 관련하여 현재는 ‘총액 한도’ 만이 주주총회 승인 대상인데, ‘개별’ 이사의 보수와 ‘실제’ 지급 예정액을 승인 대상으로 하도록 전환하고 관련 정보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거의 모든 회사가 이사 보수 총액만을 안전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CEO 등의 보수가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어려움
 -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에서 문제시되었던 핵심적인 사항은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성과에 연동되어 과도한 모험경영을 부추겼다는 점인데, 국내에서는 보수체계, 성과 연동 보수의 비율과 규모 등에 관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물론 사업보고서 등 어느 공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특히 경영진 개인별 보수 공개도 확대하고, 보수체계를 공개해 그 적정성을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함
 - 안전의 최종 승인 여부 등 일부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한다면 주주총회 결과 공시가 미흡하므로 공시 수준을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필요 있음
 - 특히 영국, 미국 등 사례와 동일하게 안전의 찬성/반대 비율을 공개해야 반대가 상당한 안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거나 차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주주를 결집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여지가 있음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함
- CGS의 금융회사 의안분석 결과는, 금융회사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반대율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정부가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에 분산된 지배구조 관련 조항을 묶은 일반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조속한 확정이 필요함
 - ① 상근임직원 및 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② 금융투자업자나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이사회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③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보수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해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함

- ①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②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도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적용하며, ③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높임
-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요건 및 감독당국에 의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CGS 의안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적격 임원 후보가 상당히 많이 추천된다는 점이 문제인 만큼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령 현재 상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상근감사가 될 수 있지만, 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상근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가 규정된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임
 -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관련 임직원이나 회사가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경우 내부통제를 점진·개선할 의무가 있는 감사위원에게도 책임을 추궁하고, 그 이력을 정도에 따라 결격사유로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와 준법경영을 포함해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를 대신하는 기구인 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감안함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IV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 조사 결과
3. 결론 및 제언

IV.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투자전문가와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조사 방법

- ☐ 조사 기간 : 2011.12.1 ~ 2011.12.23
- ☐ 조사 방법 : E-mail을 통한 Online 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 ☐ 조사수행기관 : (주)한국갤럽
- ☐ 표본 추출 방법 : 할당표집법(Quata-Sampling)
- ☐ 표본수(응답자수) : 759명 (전문가 : 239명 / 일반투자자 : 520명)

	전체	전문가			일반투자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기타*	
응답자(명)	759	40	110	89	520
구성비(%)	100	5.3	14.5	11.7	68.5

* : 학계 및 연구기관, 정부규제기관 종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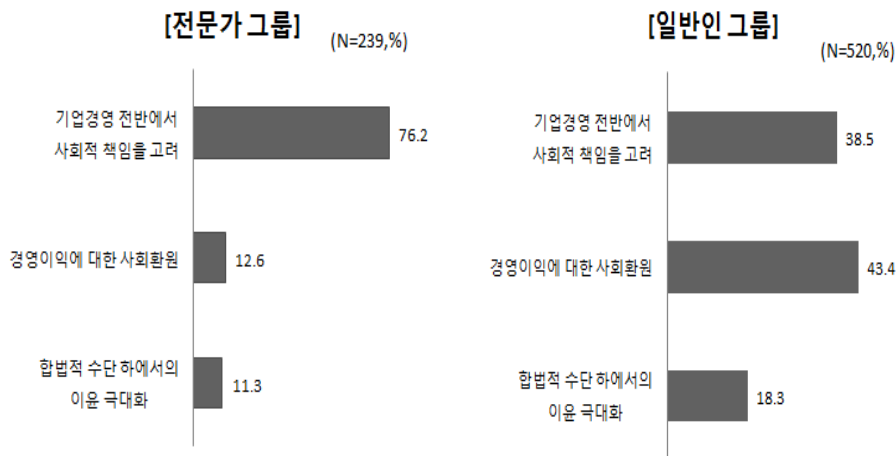
- ☐ 분석 방법 : 전문가 그룹과 일반투자자 그룹을 동일 비율로 환산하여 분석함

2. 설문 조사 결과

1)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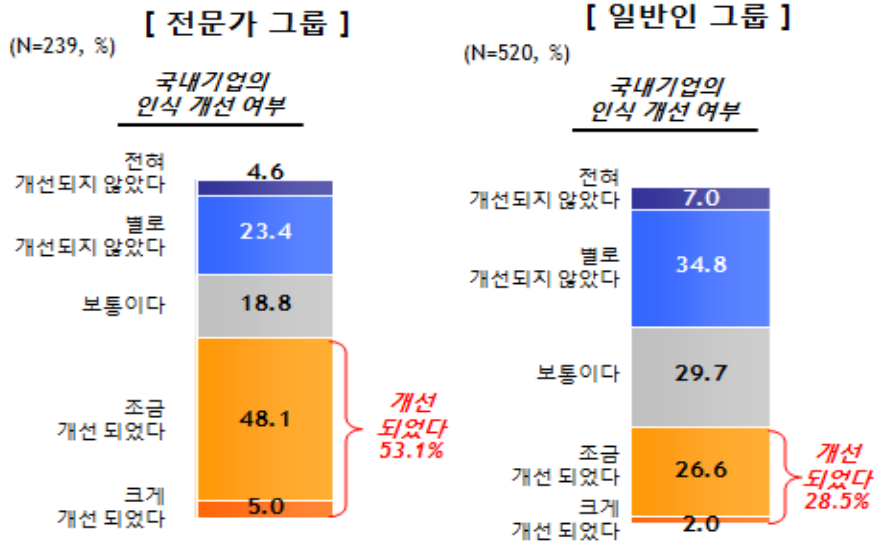
□ 전문가의 76.2%가 경영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범위로 투자전문가 그룹에서는 ‘기업경영 전반(76.2%)’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인 그룹에서는 ‘경영이익에 대한 사회환원(43.3%)’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두 그룹간 견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개선됨

-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의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난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35.1%로 나타나 근사한 차이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응답함
-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개선된 이유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60.2%)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CSR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꼽았고, 다음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모색에 따른 결과(27.1%)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국내 CSR 수준은 선진국 대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
 - 국내 기업들의 CSR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83.7%)이나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6.1%로 나타남
-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개선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부각됨
 -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 언론(전문가 36.4%, 일반인 33.7%)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차순위로 전문가는 기업(21.3%)과 정부감독기관(17.6%)을 일반인은 정부감독기관(27.6%)과 기업(13.3%)을 꼽음
 - 한편, 기업의 CSR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는 ‘세금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36.4%)’, ‘경제단체의 주도적 활동(19.2%)’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들은 ‘정부의 법적 규제 완화(31.2%)’, ‘세금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24.8%)’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그룹간 견해 차이를 보임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개선방향

(1) 지배구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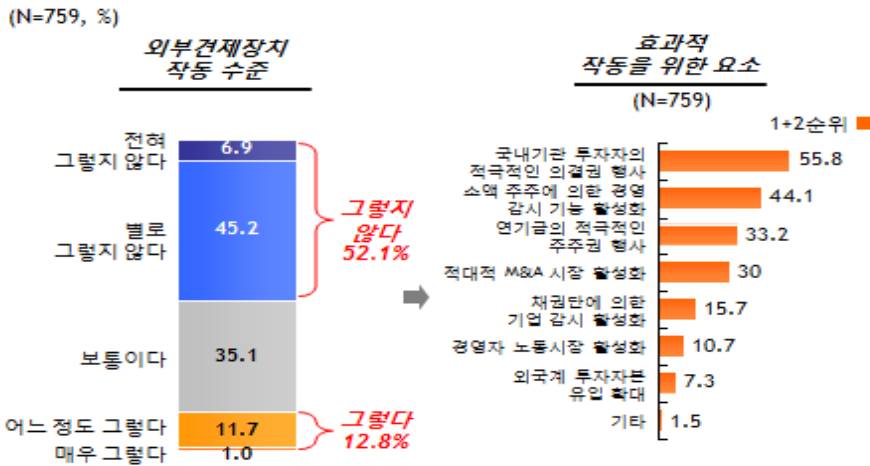
가. 주주권리보호

☐ 국내 주주권리보호는 미흡한 수준임

- 전체 응답자의 49.0%(전문가 50.2%, 일반인 47.5%)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권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응답함
- 주주권리보호가 미흡한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은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40.0%)’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여 기업 내적인 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일반인 그룹에서는 ‘소수주주권 보호 미비(37.3%)’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여 기업 외적 요소인 제도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전문가 그룹에서 차순위로 ‘경영진의 인식 부족(19.2%)’,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취약(16.7%)’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 일반인 그룹은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21.0%)’, ‘투자자들의 주주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14.5%)’을 원인으로 꼽음

☐ 경영진에 대한 외부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

- 주주권을 저해하는 경영행위에 대하여 외부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2.1%(전문가 57.3%, 일반인 46.6%)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55.8%)’가 가장 중요하며 ‘소액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기능(44.1%)’,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33.2%)’, ‘적대적 M&A시장 활성화(18.8%)’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복수 응답)



□ 주주권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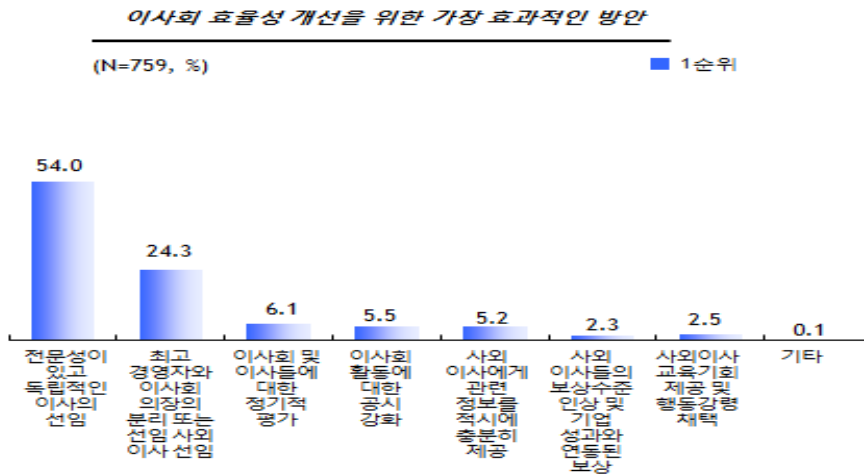
-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3.2%로 나타났는데 실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서 87.0%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의결권 행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지(40.5%)’와 ‘기관투자자들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인력 확보(3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전체 응답자의 63.4%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의안분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의안분석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3%로 나타남
- 또한, 의안분석기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54.3%가 향후 의안분석기관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일반인들도 58.0%가 의안분석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국내 증권시장에서 의안분석기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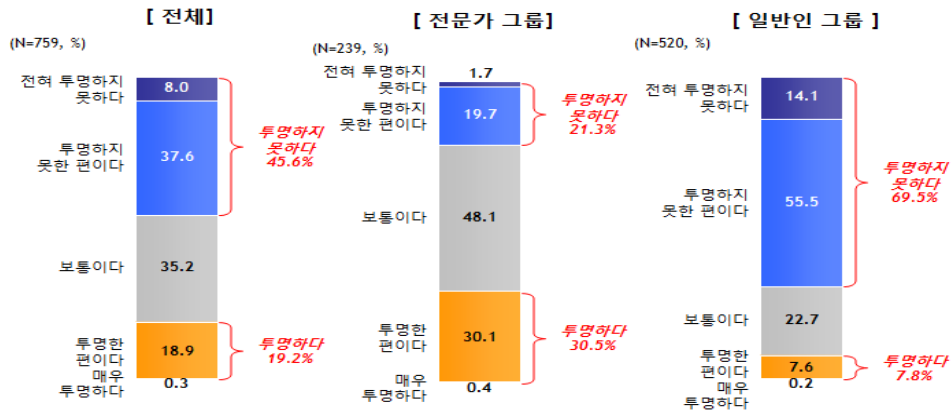
- ☐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음
 - 응답자의 65.4%가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전문가 그룹의 경우 81.6%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데 반해 일반인은 49.1%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두 그룹간의 견해 차이를 보임
 - 전체 응답자의 64.6%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61.2%)’ 과 ‘전문성 부족(22.6%)’ 에 기인한다고 응답함
- ☐ 전문가의 80%가 국내 기업의 경영자 승계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국내 기업의 경영자 승계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3.7%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는 80.8%, 일반인은 66.2%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에서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54.0%)’ 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의 선임(24.3%)’ 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됨



다. 경영투명성

□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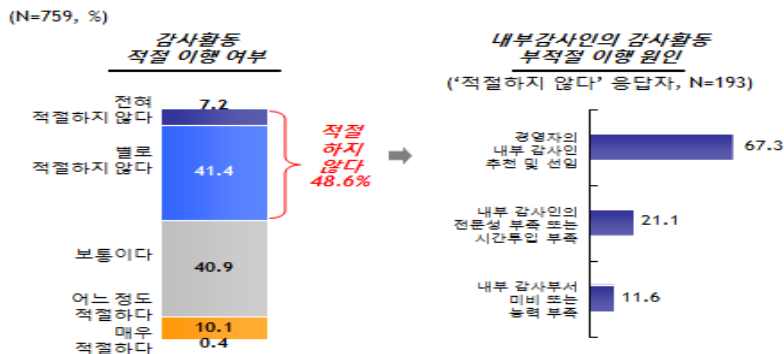
- 국내 기업의 회계 및 경영투명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6%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전문가 그룹은 21.3%, 일반인 그룹은 69.5%의 응답을 보여 그룹간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그룹은 경영 불투명성 보다는 오히려 투명하다는 의견이 30.5%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전문가 그룹과는 달리 일반인 그룹에서는 주로 언론을 통해 기업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의 부정적 사건을 주로 접하게 되는 영향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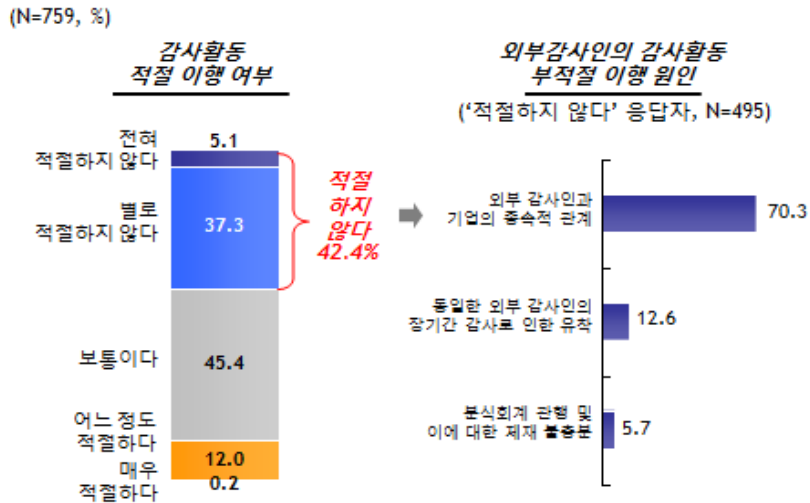
라. 감사기구

□ 내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음

- 내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하였고 48.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 (67.3%)’,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 또는 시간투입 부족(21.1%)’ 을 주로 지적함
- 한편, 내부감사조직의 효율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내부감사조직의 효율성이 모두 유사하다는 의견(33.5%)을 제시한 반면, 일반인 그룹에서는 2명 중 1명(49.9%)이 감사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응답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2.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하였는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부적절한 이유로 ‘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종속관계(70.3%)’와 ‘동일 외부감사인의 장기간 감사로 인한 유착(12.6%)’을 가장 많이 지적함



(2) 환경경영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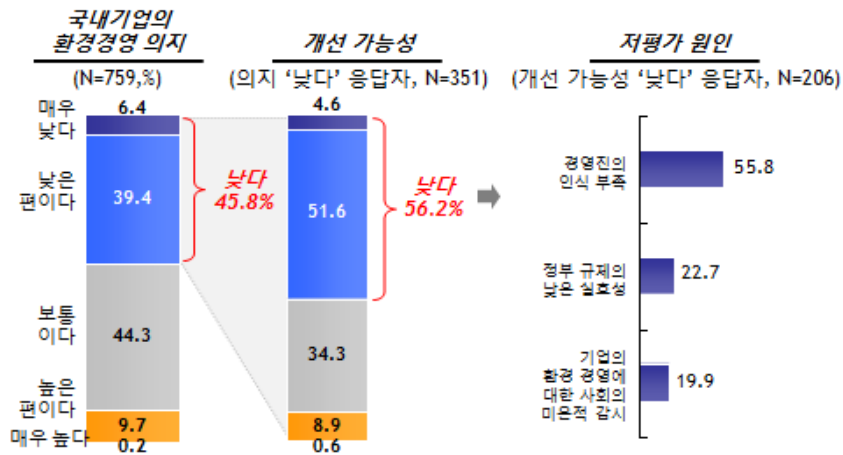
□ 국내 기업에 환경경영이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함(80.7%)

- 국내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경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0.7%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환경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와 개선 가능성도 낮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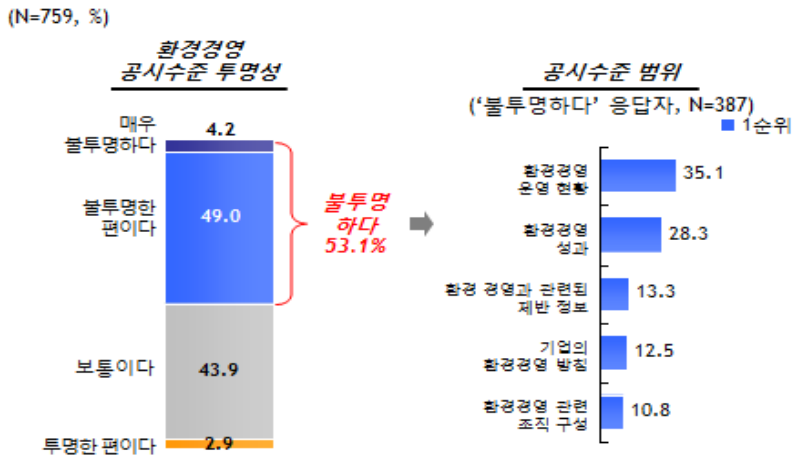
-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의지에 대하여 45.7%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9.9%에 불과함

-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56.2%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경영진의 인식 부족(55.8%)’, ‘정부 규제의 낮은 실효성(22.7%)’,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사회의 미온적 감시(19.9%)’를 지적함
-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부감독기관(46.3%)’, ‘언론(20.6%)’, ‘시민단체(17.5%)’, ‘자율규제기관(7.7%)’ 순으로 평가하여 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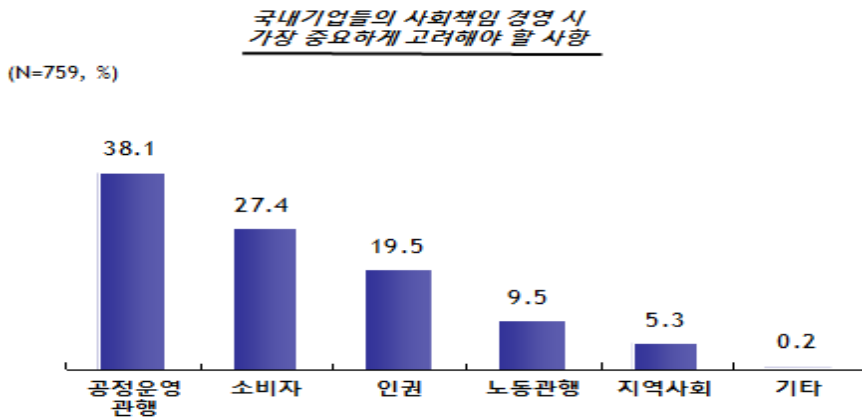
□ 환경경영 관련 공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함

-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공시수준에 대해 51.6%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한 반면, ‘투명하다’라는 응답은 전문가 그룹 2.9%, 일반인 그룹 7.5%에 그침
-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공시 수준이 불투명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기업의 환경경영에 있어 적절한 공시 범위로는 ‘환경경영 운영현황(35.1%)’, ‘환경경영 방침(28.3%)’, ‘환경경영 성과(13.3%)’, ‘환경경영과 관련된 제반정보(12.5%)’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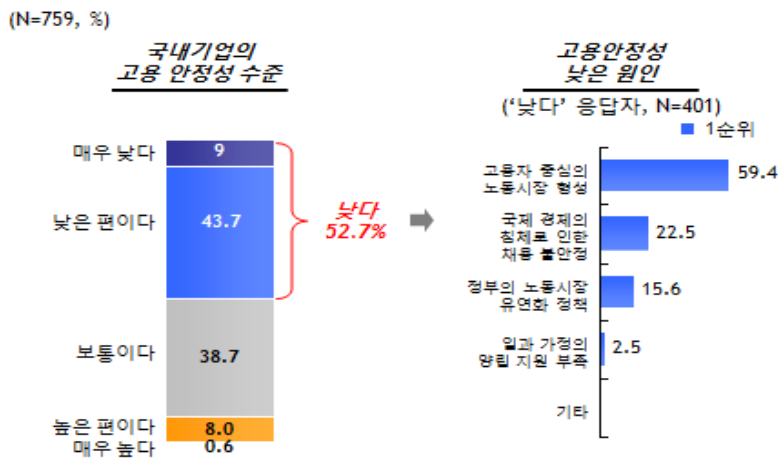
(3) 사회책임경영 부문

- 국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는 ‘공정거래 관행의 준수’를 꼽음
- 국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공정거래 관행(38.1%)’을 꼽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을 우선사항으로 생각함
 - ‘공정거래 관행’ 다음으로 ‘소비자권익 보호(27.4%)’, ‘인권 보호(19.5%)’,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9.5%)’, ‘지역사회 공헌(5.3%)’ 순으로 나타남



가. 노사관계

-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낮은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고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형성을 가장 많이 지적함
- 전체 응답자의 52.7%가 국내 기업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8.6%만이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함
 -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고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형성(59.4%)’ 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22.5%)’ 등을 지적하여 기업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 부족하다고 인식함
-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이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45.5%로 나타난 반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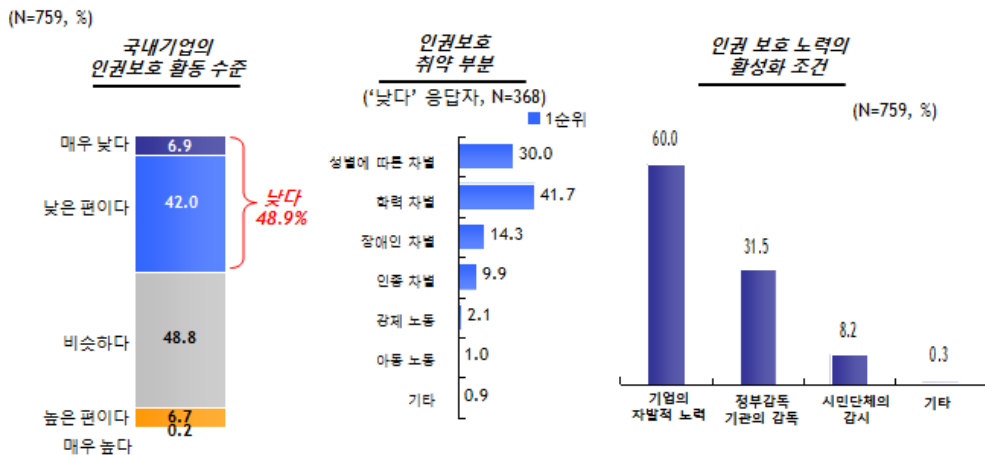
나. 인권보호

- 국내 기업의 인권 보호 노력은 부족한 수준이며 학력 차별이 가장 만연해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48.8%가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기업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6.9%에 불과함
- 인권보호가 취약한 부분으로는 ‘학력 차별(41.7%)’, ‘성별에 따른 차별(30.0%)’, ‘장애인 차별(14.3%)’, ‘강제노동(9.9%)’, ‘인종차별(2.3%)’, ‘아동노동(1.0%)’ 순으로 나타남

□ 효과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함

- 국내 기업의 인권보호 노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60.0%), 그 뒤로 ‘정부감독기관의 감독(31.5%)’과 ‘시민단체의 감시(8.2%)’를 지적함



다.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 만연해 있다고 인식함

- 협력사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관행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나 국내 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보여줌

-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불투명한 거래관행 (78.0%)’ 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정부감독기관의 감시기능 미약(15.4%)’ , ‘협력사 묵인(5.5%)’ 순으로 나타남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사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서면미발급 혐의가 전체 위반행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발표와 같은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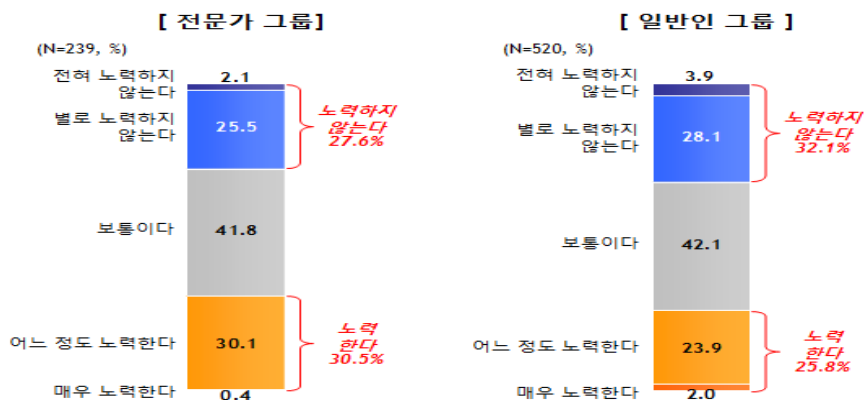
□ 협력사의 인권 보호 등 협력사의 사회책임경영 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 협력사의 인권 보호 및 윤리경영 확산 등 협력사의 사회책임경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한 반면,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4.1%로 높게 나타남

라. 소비자 권익보호

□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이 전문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 여부에 일반인 그룹은 ‘노력하지 않는다’ 가 32.1%, ‘노력한다’ 가 25.8%로 다소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전문가 그룹에서 ‘노력한다’ 는 응답이 32.1%, ‘노력하지 않는다’ 는 27.6%로 일반인 그룹과는 반대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두 그룹간 견해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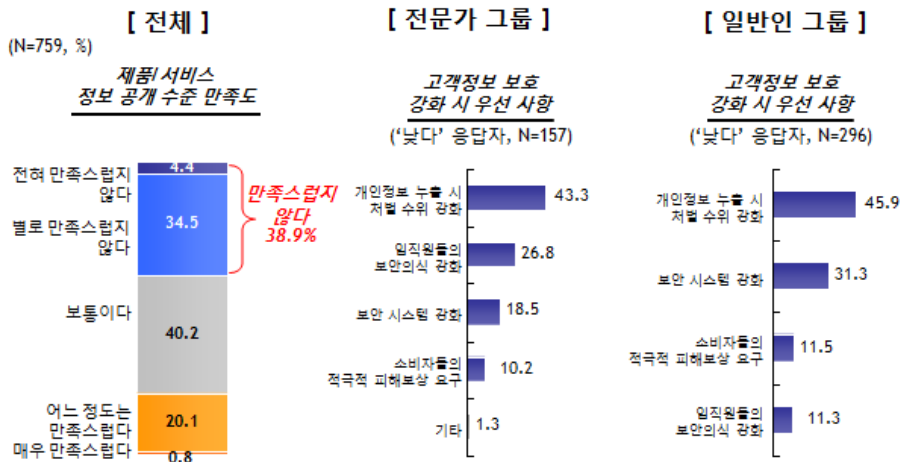


□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공개 수준은 불만족스러움

-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38.9%로 정보 공개 수준에 부정적인 평가가 높으며,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공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제 강화(54.6%)’, ‘기업의 자발적 노력(36.1%)’, ‘시민단체의 감시 강화(9.3%)’ 순으로 응답해 기업 내외부적인 규제를 통해 정보 공개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국내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국내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며(61.4%),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44.5%)’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객정보 보호 방안의 2순위로 전문가 그룹은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화(26.8%)’ 를, 일반인 그룹은 ‘보안시스템 강화(31.3%)’ 를 꼽아 각각 기업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식 개선과 외부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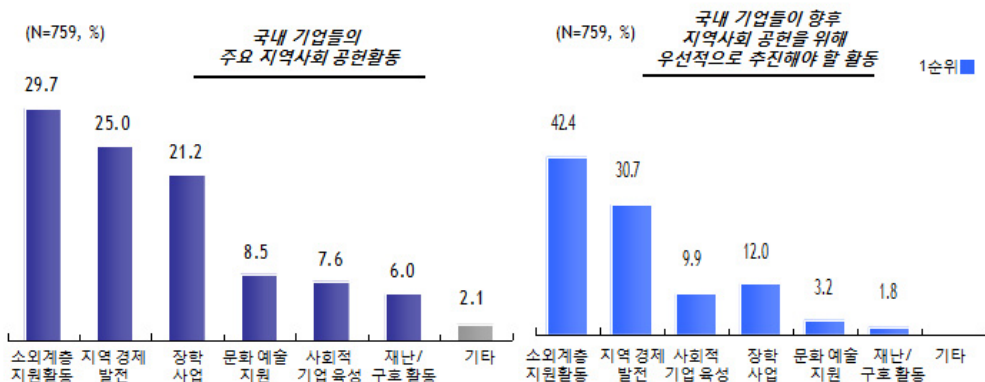
마. 지역사회 공헌

□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발전, 장학사업을 가장 많이 꼽음

- 국내 기업들의 주요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소외계층 지원(29.7%)’, ‘지역경제 발전(25.0%)’, ‘장학사업(21.2%)’ 등을 가장 많이 응답함
- 국내 기업들이 향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추진하거나 강화해야 할 활동으로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발전’을 꼽아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기업이 추진해야 하는 공헌활동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

□ 기업 경영진의 사재출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함

- 기업 경영진의 사재 출연에 대하여 65.1%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기업 경영진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경영진의 사재출연이 기업이미지나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17.9%)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투자 견해

□ 전문가들은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함

○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투자전문가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58.0%가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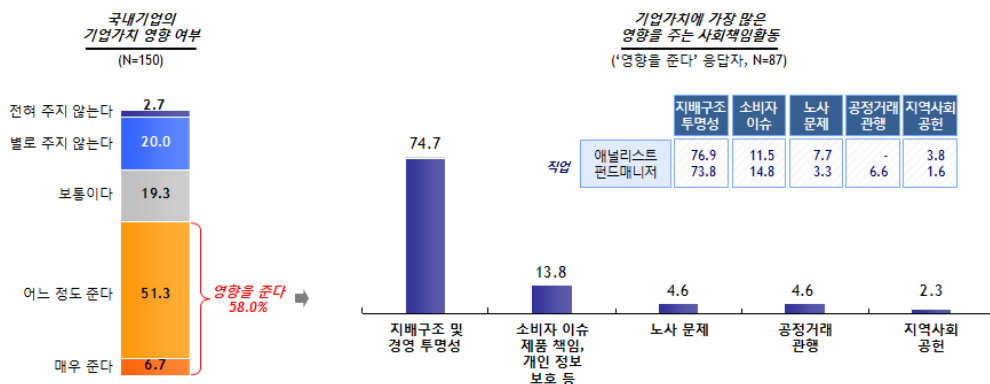
○ 기업가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74.7%)’ 과 ‘제품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소비자 이슈(13.8%)’ 을 가장 높게 평가함

□ 기업 투자 의사 결정시 기업의 CSR 수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SRI 투자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중 투자 의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48.0%로, 고려하지 않는다(26.7%)는 응답자보다 많음

○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는 응답자 중 62.5%가 향후 사회책임투자(SRI)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투자기간과 평균 투자 수준으로는 5.9년과 44.2%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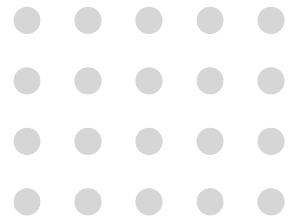
【전문가 그룹】



3. 결론 및 제언

- 국내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시 아직은 낮은 수준임
 -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개선되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장의 인식이 높음
 -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언론을 비롯한 정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계도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스스로도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함
-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주주권을 훼손하는 경영진의 경영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요구되며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의안분석기관이 필요함
 - 이사회가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이사선임, 최고경영자와 이사회회장 분리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감사기능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므로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영자의 내부 감사인 추천 및 선임방지, 외부감사인과 기업간의 비종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함
- 환경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환경경영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감독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련 법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해 경영진의 인식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서 중점을 뒀야 할 분야로 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되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의무화하는 등의 투명한 거래관행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뿐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 소비자의 주권 보호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강화 및 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국내 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소외계층지원, 지역경제 발전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경영진의 사재출연은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평가됨
-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기업가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이슈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투자전문가들은 판단함
- 투자전문가들은 투자의사결정시 기업의 CSR 수준을 고려하며 향후 약 6년간 40% 수준으로 SRI(사회책임투자)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시장에서의 CSR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부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소개

부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소개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평가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사업

-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경영 활성화를 유도, 지원하기 위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통합평가 수행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주주총회 의안분석 서비스 제공, 주주권 행사 지원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의결권 서비스 관련 연구 수행
- 투자자와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서비스(작성·자문·검증·교육 등) 제공
-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및 관련 DB 구축을 통한 연구지원 사업 진행

ESG 평가

- ESG 모범기준 제정
- ESG 통합평가
- ESG 우수기업 선정
- ESG DB 구축·활용
- KOGI, SRI 지수 활성화

의결권 서비스

- 의안분석 서비스 제공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 의결권 관련 정책 제안
- 의결권 관련 연구

지속가능성

보고서 서비스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자문
-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 CSR 전략수립 및 경영자문

지배구조·CSR

교육 및 연구

- CSR 관련 연구 및 정책건의
- CSR 홍보 및 세미나 개최
- CSR 관련 국제교류 확대
- CSR 자료 발간
- CSR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조직구성



□ 사원기관



□ 연혁

2012	10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 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02	주주총회 의안분석 서비스 시행
2011	12	사옥 이전(한국거래소 신관 9층)
	12	‘수탁자 자본주의와 주주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07	ESG 통합 평가, ESG 통합 등급 공표
2010	1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08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개칭
	06	강병호 제3대 원장 취임
2009	12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09	한국거래소와 SRI(사회책임투자)지수 개발
	0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가입
2007	10	‘신홍시장과 기업지배구조 펀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6	09	‘기업지배구조와 모범적인 이사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5	09	‘경영권 관련 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국제 심포지엄 개최
	04	남상구 제2대 원장 취임
2004	11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0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2003	12	‘기업지배구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09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의 역할’ 세미나 개최
2002	06	법인 설립, 정관성 초대원장 취임

□ 역대 임원

○ 원장



정광선 1대 원장
2002. 6~2005. 6



남상구 2대 원장
2005. 6~2008. 6



강병호 3대 원장(現)
2010. 6~현재

○ 부원장



송명훈 1대 부원장
2002. 6~2005. 6



이맹기 2대 부원장
2005. 6~2008. 6



전영길 3대 부원장
2008. 6~2010. 8



박용진 4대 부원장(現)
2010. 8~현재

□ 위원회 현황

○ 기업지배구조위원회

-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 증권,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기업 선정기준의 제정과 운영, 우수기업의 선정 등을 담당함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 명단 (총 16명)

강 병 호 (위원장)	선우 석 호	전 홍 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감·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 대 식	이 병 욱	정 순 섭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보험연구원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노 희 진	이 의 영	정 영 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이사
류 성 곤	장 지 인	박 용 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
박 경 서	전 상 훈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융투자협회 경영전략본부장	
서 윤 석	전 우 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로서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사회책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사회책임 개선사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총 12명)

박 경 서 (위원장)	김 태 진	이 장 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 순 원	박 영 석	임 영 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누 리	서 정 호	조 호 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연수원 연구위원	KRX 정보사업부 부장
김 성 천	안 수 현	황 이 석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연도별 주요 사업 실적

사업 연도	내용	月
2002	CGS 설립	6
	지배구조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시상 * ‘연도별 수상기업 리스트’ 참조	6
	CGPI 50(Corporate Governance Price Index 50) 지수 공표 - 지배구조 평가 결과 상위 50사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수를 산정·발표	7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가입 -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위해 ICGN 가입	7
	기업투명성과 기업가치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 발표 : 장지인 중앙대 교수, 조명현·박경서 고려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 사회 : 김병주 서강대 교수 - 토론 : 정혜영 경희대 교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제갈정웅 (주)대림INS 부회장	10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발표 : James E. Shapiro(뉴욕증권거래소 아태지역 상장담당 부사장), Brian Cahill(무디스 아시아지역 기업평가담당 이사) - 사회 : 최운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토론 :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 김선대 한국신용평가 상무, 황건호 메리츠증권 사장, 최도성 서울대 교수	10
200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선정기준」 개정 - 내부 연구 및 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모범규준 및 선정기준 확정·발표	2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발표 : William Dale Christ, CalPERS 前 회장, Richard Samuelson, UBS Warburg 이사, Paul Matthews, 매튜스 아시아 펀드 회장, 김정태 국민은행장, Franck Wiebe, 아시아재단 경제수석 - 토론 : 최도성 서울대 교수, 팍태선 세이에셋 대표, 김우찬 KDI 교수, 강찬수 서울증권 대표	4

사업 연도	내용	月
2004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발표 : 김웅한 미시간대 교수, 김우찬 KDI 교수 - 토론 : 박경서 고려대 교수, 김택권 연세대 교수,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소장	4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의 역할 세미나 개최 - 발표 : 김건식 서울대 교수 - 사회 : 최도성 서울대 교수 - 토론 : 우영호 증권연구원 부원장,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맹기 증권거래소 부이사장보, 배상호 코스닥 상무	9
	기업지배구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 심포지엄 개최 - 발표 : 최도성 서울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교수, 박찬희 중앙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서정우 국민대교수 - 토론 : 권행민 KT 비전경영실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용덕 외환코메르츠투자신탁운용 부사장, 김준기 연세대 교수,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황이석 서울대 교수	1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발표 : 박영석 서강대 교수, 박상수 경희대 교수 - 사회 : 최도성 서울대 교수 - 토론 : 구성훈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장, 김용덕 외환코메르츠투자신탁운용 부사장, 노인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2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 DB 구축 - 지배구조 평가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현황 및 통계 전반에 관한 DB 시스템 구축	5
	지배구조 평가 결과 기본보고서 배포 실시 - 상장기업에 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및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기본 보고서 전달	7

사업 연도	내용	月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발표 : Randall Morck (Professor of Univ. of Alberta and Harvard Univ), 박영석 서강대 교수, Melissa Brown (Executive Director, ASrIA),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 사회 : 최도성 서울대 교수 - 토론 : 권성철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김우찬 KDI 대학원 교수, 김용덕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 대표이사, 유상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선임운용역	10
	기업지배구조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 발표 : 박영석 서강대 교수, 박광우 중앙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교수 - 사회 : 최운열 서강대 경영대학원장 - 토론 : 김세진 한국채권평가 대표이사,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조성빈 KDI 부연구위원, 조성욱 고려대 교수	10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발표 - 내부 연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	11
	지배구조지수(KOGI) 및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 발표 : 신용순 외환은행 상무, 서정우 국민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장진호 연세대 교수 - 사회 : 최도성 서울대 교수 - 토론 : 이재식 금감원 국장, 정영태 상장협 전무, 최성환 조선일보 기자,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택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이사, 김종호 KPMG 대표, 윤우영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11
	지배구조 등급 공표 실시 - 지배구조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상장기업을 8개 등급(매우취약 ~ 최우량)으로 구분하여 특정 등급 이상 공개	9
2005	연구지원 사업 및 대학(원)생 대상 논문 공모전 실시 - 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모집하여 선정 및 지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여 수상자에 장학금 전달	9

사업 연도	내용	月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주제 : 경영권 관련 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 발표 : 강준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수, Bernard S. Black, Professor, University of Texas-Austin,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 사회 :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 토론 : 정영택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 상무,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광경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9
	CGS 연구지원 세미나 개최 - 주제 : 소유구조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박경서 고려대 교수, 황이석 서울대 교수, 김병모 KAIST 연구원 - 사회 : 선우석호 연구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연강흠 연세대 교수, 장진호 연세대 교수, 조성욱 서울대 교수	12
	지배구조 평가 결과 심층보고서 제공 실시 - 업종별 비교분석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심층보고서를 희망 기업에 유료 제공	7
2006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주제 : 기업지배구조와 모범적인 이사회 - 발표 : 황규호 SK(주) 전무, 스테픈 베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히데키 간다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회 :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 토론 : 김준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기홍 POSCO 상무,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9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 내부 연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발표	10
2007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주제 : 신흥시장과 기업지배구조펀드 - 발표 : Jamie Allen Secretary General, ACGA, Jon Lukomnik Managing Partner, Sinclair Capital L.L.C., John Lee Director, Fund Manager, Lazard Asset Management - 토론 :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최훈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와 과장, Anne Simpson (Executive Director, ICGN), 김화진 서울대 교수, 이인중 화성산업 회장,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10

사업 연도	내용	月
2008	ICGN 연례 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주관 - ‘ICGN 연례 컨퍼런스 및 연차총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이를 KRX와 공동으로 주관	6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공동개최 (한국증권학회) - 발표 : Laura Starks 교수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rtin Lawrence, Head of Asia-Australia Governance Research, RiskMetrics Group - 사회 : 장범식 한국증권학회 회장 - 토론 : 김우찬 KDI 교수, 온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장, 황인하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12
2009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Global Compact 가입 - 국제적 조류인 기업의 사회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이행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UN PRI와 UN Global Compact에 가입	7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 지수 개발 - KRX, 에코프론티어와 공동으로 SRI 평가 결과 상위 70사를 바탕으로 사회책임 관련 지수를 산정·발표	9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방안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발표 : Takejiro Sueyoshi, UNEP FI Special Advisor,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임대웅 에코프론티어 상무, 양태영 한국거래소 팀장 - 토론 : 김영준 NH-CA 자산운용 본부장, 김종대 인하대 교수,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진병용 대구은행 부행장	12
2010	사회·환경 모범기준 제정 및 평가모형 개발 - 내부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환경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한국형 ESG 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평가모형을 개발	10

사업 연도	내용	月
201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발표 : 김건식 서울대 교수 - 사회 :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 토론 : 이상빈 한양대 교수, 손현덕 매일경제 증권부장, 양채열 전남대 교수,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원상 한국투자증권 기획조정실장, 정하워드 SC금융지주 이사	11
	ESG 통합 평가 실시 - 전체 상장기업 1514사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 실시 - 유가증권시장 668사, 코스닥시장 133사에 대해 환경 및 사회 평가 최초 실시	7
	ESG 통합 등급 공표 - 개정된 평가 방식에 따라 5등급(“A+” - “C+”)으로 분류하여 “B+” 이상 기업을 공개	7
	ESG 평가 결과 기본보고서 배포 - 상장기업에 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및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기본 보고서 전달	8
	ESG 평가 결과 심층보고서 제공 실시 - 업종별 비교분석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심층보고서를 희망 기업에 유료 제공	8
	의안 분석 시범 서비스 실시 - 은행지주회사(4개사), 주요 금융회사(8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의안 분석 보고서는 국내 연기금에 제공	8
	지속가능보고서 관련 사업 실시 - ‘지속가능성 보고서 모범 보고양식 1.0’ 작성 - 지속가능성보고서 서비스 DB 구축	10

사업 연도	내용	月
	수탁자 자본주의와 주주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발표 : James P. Hawley (College of California), Robert McCormick (Glass Lewis), 박경서 고려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 사회 : 남상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김우찬 KDI 교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실 실장	12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 내부 연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	2
	의안 분석 서비스 시행 - KOSPI 200사와 12월·3월 결산법인 53개 금융회사(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의안분석 서비스를 수행	2
2012	ESG 통합 평가 실시 - 전체 상장기업에 대한 ESG 통합 평가 실시	7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주제 :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 방안 - 발표 : 김웅한 미시건대 교수, Jun Frank (Head of Asia Research, ISS), 김건식 서울대 교수 - 사회 : 남상구 고려대 명예교수 - 토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 서정희 매일경제 증권부장, 최경규 동국대 교수,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병수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10

□ 연도별 지배구조 및 ESG 우수기업 수상 기업 리스트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 가 증 권 시 장	[우수기업] S-Oil LG건설 현대자동차 경동도시가스 담배인삼공사 조흥은행	[최우수기업] 국민은행 케이티 삼성전기 [우수기업] 포스코 케이티앤지 SK텔레콤 경동도시가스 대우조선해양 데이콤 한미은행	[최우수기업] 케이티 케이티앤지 포스코 [우수기업] 전북은행 에스오일 삼성전기 KTF LG건설 대신증권 대우조선해양 [개선기업] SIMPAC 부산은행	[최우수기업] 케이티 케이티앤지 전북은행 [우수기업] 포스코 부산은행 KTF 삼성전기 SK텔레콤 SK 대우조선해양 [개선기업] 우리금융지주 신세계 폴무원	[최우수기업] 케이티 케이티앤지 포스코 [우수기업] 국민은행 우리금융 KTF 폴무원 SK텔레콤 SK 대우조선해양 [개선기업] SKC 대우인터내셔널	[명예기업('07-'09)] 케이티 케이티앤지 [최우수기업]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우수기업] 전북은행 SK KTF 대우조선해양 폴무원 [개선기업] 한국전력 STX 「이사회」 부문 우수기업 KT
코 스 닥 시 장		[최우수기업] KTF LG텔레콤 [우수기업] 동양시스템즈 로지트코퍼레 이션 옥션 한국토지신탁 LG마이크론	[최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LG텔레콤 LG마이크론 [우수기업] 한국신용정보 동우alt 동양시스템즈 이글-벳 네오위즈 한국기업평가 하나투어 [개선기업] 동양에스텍 삼호개발	[최우수기업] LG텔레콤 LG마이크론 다음커뮤니케이션 [우수기업] 하나로텔레콤 네오위즈 엘리코파워 씨앤에스디펜스 한국기업평가 동양시스템즈 한국토지신탁 [개선기업] 에스인포텍 로만손	[최우수기업]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웹젠 [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 션 네오위즈 한국기업평가 한국토지신탁 엠텍비전 NHN 국순당 [개선기업] -	[명예기업('07-'09)] LG텔레콤 [최우수기업] - [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국순당 LG마이크론 씨디네트웍스 모두투어 [개선기업] - 「이사회」 부문 우수기업 LG텔레콤
기 타	[모범 최고경영인] 하영구 한미은행장 [모범 사외이사] 삼성전기 손정식 (한양대 대학원장) S-Oil 장석환 KT 이기호 (이화여대 공대교수)					[명예기업] · [부문별 우수기업] 신설

	2008	2009	2010	2011	2012
유 가 증 권 시 장	[명예기업(07-09)] 케이티 케이티앤지 [최우수기업] 포스코 SK텔레콤 [우수기업] 우리금융지주 국민은행 한국전력 KTF 두산인프라코어 [개선기업] 화성산업 「경영투명성」 부문 우수기업 KTF	[명예기업(07-09)] 케이티 케이티앤지 [최우수기업] 전북은행 SK에너지 [우수기업] 우리금융지주 두산 한국전력공사 두산인프라코어 SK텔레콤 [개선기업] OCI 한양증권 「감사기구」부 문 우수기업 SK에너지	[대상] 케이티 [최우수기업] 케이티앤지 [우수기업] 포스코 전북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하이닉스반도체 SK에너지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개선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가스공사	[대상] 포스코 [최우수기업] 케이티앤지 [우수기업] KB금융지주 하이닉스반도체	[대상] KB금융지주 [최우수기업] 두산인프라코어 [우수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에스오일
코 스 닥 시 장	[명예기업(07-09)] LG텔레콤 [최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우수기업] 안철수연구소 한국기업평가 NHN 하나투어 [개선기업] 인선이엔티 CJ인터넷	[명예기업(07-09)] LG텔레콤 [최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우수기업] GS홈쇼핑 안철수연구소 하나투어 [개선기업] KT서브마린 에스에프에이	[최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우수기업] SK커뮤니케이션즈 안철수연구소 푸른상호저축은행 하나투어 에스에프에이 GS홈쇼핑 [개선기업] 이건창호시스템	[최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우수기업] 안철수연구소 에스에프에이	[최우수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우수기업] 에스에프에이 포스코켄텍 코오롱생명과학
기 타			[대상] 신설	기존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ESG우수기업」 으로 확대	

□ 외부 연구 용역 실적

발주처(제공처)	수행시기	수행내용	비고
(재정경제부)	2003. 11	기업지배구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제안 CGS 자체연구
증권선물거래소	2005. 9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2005. 9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측정	-
(증권선물거래소)	2006. 4	KRX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KRX 제안 CGS 자체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6. 8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평가	-
기획예산처	2006. 10	공공기관 임원직무평가제도 운영방안 연구	-
국가청렴위원회	2007. 12	기업투명성 평가방안 개발	-
자산운용협회	2007. 10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개선방안	-
상장회사협의회	2007. 12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
대한주택공사	2008. 1	중·장기 감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
기획재정부	2009. 12	기업의 자본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방안	-
한국거래소	2010. 7	기업의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방안 및 SRI 지수 산출시 적용방안	-
국민연금공단	2010. 8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방안	-
(금융위원회)	2010.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금융위원회 제안 CGS 자체 연구
한국거래소	2011. 7	KRX의 기업가치 제고와 공익적 기능 실현의 조화를 위한 연구	-
국민연금공단	2011. 12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의 사회책임적 요소 측정	-
KT/BC카드	2012. 3	KT그룹 금융·통신 융합사업 및 비씨카드 발전방안	-

□ CGS 주요 발간물

발간물	발간시기
기업지배구조 리뷰	정기 간행물(격월간)
CGS Report	정기 간행물(격주간)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1999. 9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2003.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04. 5
기업지배구조 백서 2006	2006. 12
CEO 평가 가이드라인	2007. 2
이사회평가 가이드라인	2007. 2
보상위원회 가이드라인	2008. 2
이사회운영 가이드라인	2008. 2
사회(S), 환경(E) 모범규준 제정	2010. 12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12. 3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2012. 10

기업지배구조 백서 2012

발 행 일 2012. 10

발 행 인 강 병 호

기획 · 편집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신관9층

T 02-3775-3339

F 02-3775-2630

www.cgs.or.kr

※ 본 기업지배구조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